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목 차

● C O N T E N T S ●

PART I	매뉴얼 안내	6
	I-1. 매뉴얼 발간 목적 및 활용	8
	I-2. 매뉴얼 구성 및 대상별·절차별 활용	10
	I-3. 매뉴얼 용어 정의	15
PART II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16
	II-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대한 정의	18
	II-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3주체	21
	II-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운영 기준	24
	II-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31
PART III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34
	III-1. 현장실습 내용 및 수업편성	36
	III-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과 요건	40
	III-3. 현장실습생 참여 및 보호 조치	50
	III-4. 현장실습기관 선정 및 관리	55
	III-5. 현장실습생 평가 및 학점 인정	60
	III-6. 양성기관 FAQ	67
	III-7. (부록) 양성기관용 서식 모음	74

PART IV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90
	IV-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92
	IV-2. 학생 참여 신청과 준비사항	95
	IV-3.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리와 의무	99
	IV-4.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	111
	IV-5. 현장실습생의 자기 평가	118
	IV-6. 현장실습생 FAQ	128
	IV-7. (부록) 현장실습생용 서식 모음	134

PART V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150
	V-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152
	V-2. 실습기관의 범위와 실습지도자의 자격	155
	V-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사전 준비	161
	V-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165
	V-5. 실습기관의 평가	185
	V-6. 실습기관 FAQ	190
	V-7. (부록) 실습기관용 서식 모음	196

부록	213
참고문헌	21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등	215

목 차

CONTENTS

표목차

표 I-1. 양성기관의 매뉴얼 활용	12	표 IV-3. 실습단계별 보호조치	115
표 I-2. 현장실습생의 매뉴얼 활용	13	표 IV-4. 자기 평가의 과정	119
표 I-3. 실습기관의 매뉴얼 활용	14	표 IV-5. 자기 평가 계획 운영방법	119
표 I-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용어 정의	15	표 IV-6. 중간 자기 평가 운영방법	121
표 II-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3주체의 주요 역할	23	표 IV-7. 최종 자기 평가 운영방법	123
표 II-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내용	24	표 V-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지도자의 자세(윤리강령안)	160
표 II-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수업 편성	25	표 V-2. 현장실습 운영 방식	161
표 II-4.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요건	26	표 V-3. 운영계획 예시	166
표 II-5. 현장실습 선수과목	26	표 V-4. 모니터링 보고 실습 예시	168
표 II-6.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27	표 V-5. 현장실습 중간평가서 예시	170
표 II-7.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28	표 V-6. '프로그램기획과 운영의 실제' 설계 예시	171
표 II-8. 실습기관 자격요건	29	표 V-7. 슈퍼바이저에게 요구되는 과업지식과 기술의 예	177
표 II-9. 실습기관의 운영 기준	29	표 V-8. 과업모델 슈퍼비전의 업무	178
표 II-10. 현장실습지도자 자격기준	30	표 V-9. 과업별 슈퍼비전 계획서 예시	179
표 II-11. 양성기관의 운영 절차(안)	31		
표 II-12. 학생의 참여 절차(안)	32		
표 II-13. 실습기관의 운영 절차(안)	33		
표 III-1.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행정관리자로서의 역할	40		
표 III-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운영협력자로서의 역할	43		
표 III-3.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교수자로서의 역할	44		
표 III-4.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평가자로서의 역할	46		
표 III-5.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선수과목	50		
표 III-6. 현장실습 평가 주체와 역할	63		
표 III-7. 현장실습 평가 항목 및 배점 - 예시 1	64		
표 III-8. 현장실습 평가 항목 및 배점 - 예시 2	64		
표 III-9. 학점 인정 기준 내용	65		
표 IV-1. 현장실습기관의 자격요건	97		
표 IV-2.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조치 활동	113		

그림목차

그림 I-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절차	11
그림 III-1.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4가지 역할	40
그림 III-2.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갖추어야 할 요건	48
그림 V-1. 현장실습 추진절차	165
그림 V-2. 지역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실습방향	173
그림 V-3. 지역현황 분석을 위한 설계과정	173
그림 V-4. 현장실습 슈퍼비전 모델	175
그림 V-5. 논리모델의 구성요소와 진행	176
그림 V-6. 논리모델을 적용한 현장실습과정	176
그림 V-7. 일일 현장실습 진행절차(실습생/실습담당자)	183

서식목차

양성기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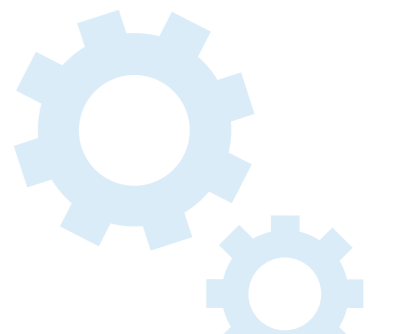
서식 1-1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75
서식 1-2 현장실습 협약서	76
서식 1-3 현장실습 계약서	78
서식 1-4 현장실습 수요조사 요청 공문	80
서식 1-5 현장실습 의뢰 공문	82
서식 1-6 현장실습 기관방문 협조 공문	86
서식 1-7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서	87
서식 1-8 현장실습 확인서	89

실습기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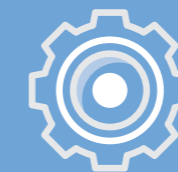
서식 3-1 현장실습생 모집 공문	197
서식 3-2 실습의뢰 답변서 공문	201
서식 3-3 현장실습 협약서	202
서식 3-4 현장실습 계약서	204
서식 3-5 실습일지	206
서식 3-6 실습생 출근부	207
서식 3-7 현장실습 자기평가 계획서	208
서식 3-8 현장실습 자기평가 중간보고서	209
서식 3-9 현장실습 자기평가 최종보고서	210
서식 3-10 현장실습 평가서	211
서식 3-11 현장실습 확인서	212

실습생용

서식 2-1 현장실습 신청서	135
서식 2-2 현장실습 계약서	140
서식 2-3 실습생 기본자세	142
서식 2-4 실습일지	144
서식 2-5 실습기관 분석보고서	145
서식 2-6 기관방문 분석보고서	146
서식 2-7 현장실습 자기평가 계획서	147
서식 2-8 현장실습 자기평가 중간보고서	148
서식 2-9 현장실습 자기평가 최종보고서	149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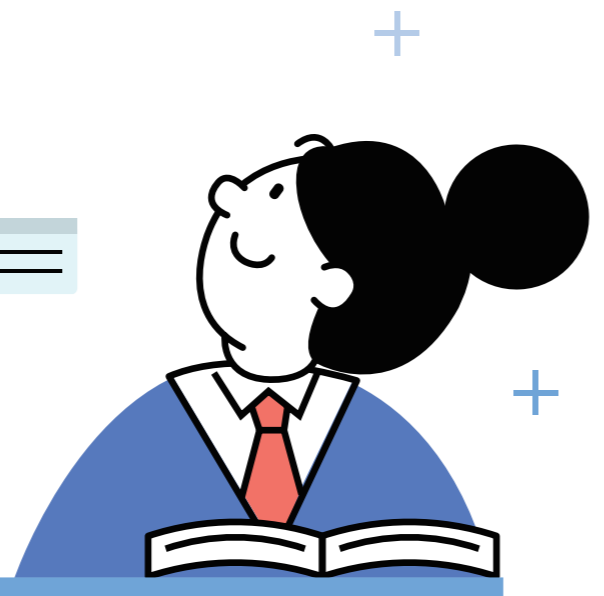
매뉴얼 안내

- I-1. 매뉴얼 발간 목적 및 활용
- I-2. 매뉴얼 구성 및 대상별·절차별 활용
- I-3. 매뉴얼 용어 정의

1-1 매뉴얼 발간 목적 및 활용

1. 매뉴얼 발간 목적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은 대학 등 현장실습 양성기관과 현장실습생,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등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기준과 절차, 필요 양식 등을 제공
- 현장실습 양성기관을 위한 매뉴얼의 발간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교육적 목적 실현을 위한 안내
 - 현장실습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 도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 제공
- 현장실습생을 위한 매뉴얼의 발간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교육적 목적에 대한 이해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서 학생의 권리와 의무, 보호조치에 대한 이해
 - 수업 및 실습기관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준비를 위한 안내
 -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 현장실습 실습기관을 위한 매뉴얼의 발간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교육적 목적에 대한 안내
 - 현장실습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적용 도모
 - 현장실습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와 진행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2. 매뉴얼에 대한 대상별·절차별 활용

- 이 매뉴얼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과 현장실습생, 그리고 실습기관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 이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중 다음 사항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함. 각 기관은 이를 숙지하고 실습 운영 과정에 반영하여야 함.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준수사항

- 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진행 (연장은 최대 5시간 한도), 1일 1시간 이상 휴게 시간 보장,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 최소 15일, 130시간 이상의 실습기관 현장실습 진행

양성기관 준수사항

-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의 협약체결 진행
- 실습지도교수의 자격요건 (조교수 이상 혹은 5년 이상의 교육경험, 5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지도사 자격소지자) 준수
- 현장실습 수업 전에 선수과목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과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이수
- 1회 이상의 실습오리엔테이션과 총 5회 이상의 실습세미나 진행(원격 수업 시 대면 1회 이상), 1회 이상의 최종실습평가회 진행

실습기관 준수사항

- 실습기관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법에 따른 기관, 시설, 단체와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시설,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등 가능
- 실습기관은 1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필요, 동일한 시간 실습생 10명 이내 지도, 실습지도사는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혹은 2급으로 2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경우로 동시 10명 이내 지도 가능

- 이밖에 이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과 적용 사례는 예시로 각 대학이나 실습기관에서 재가공이나 수정 가능

1-2 매뉴얼 구성 및 대상별·절차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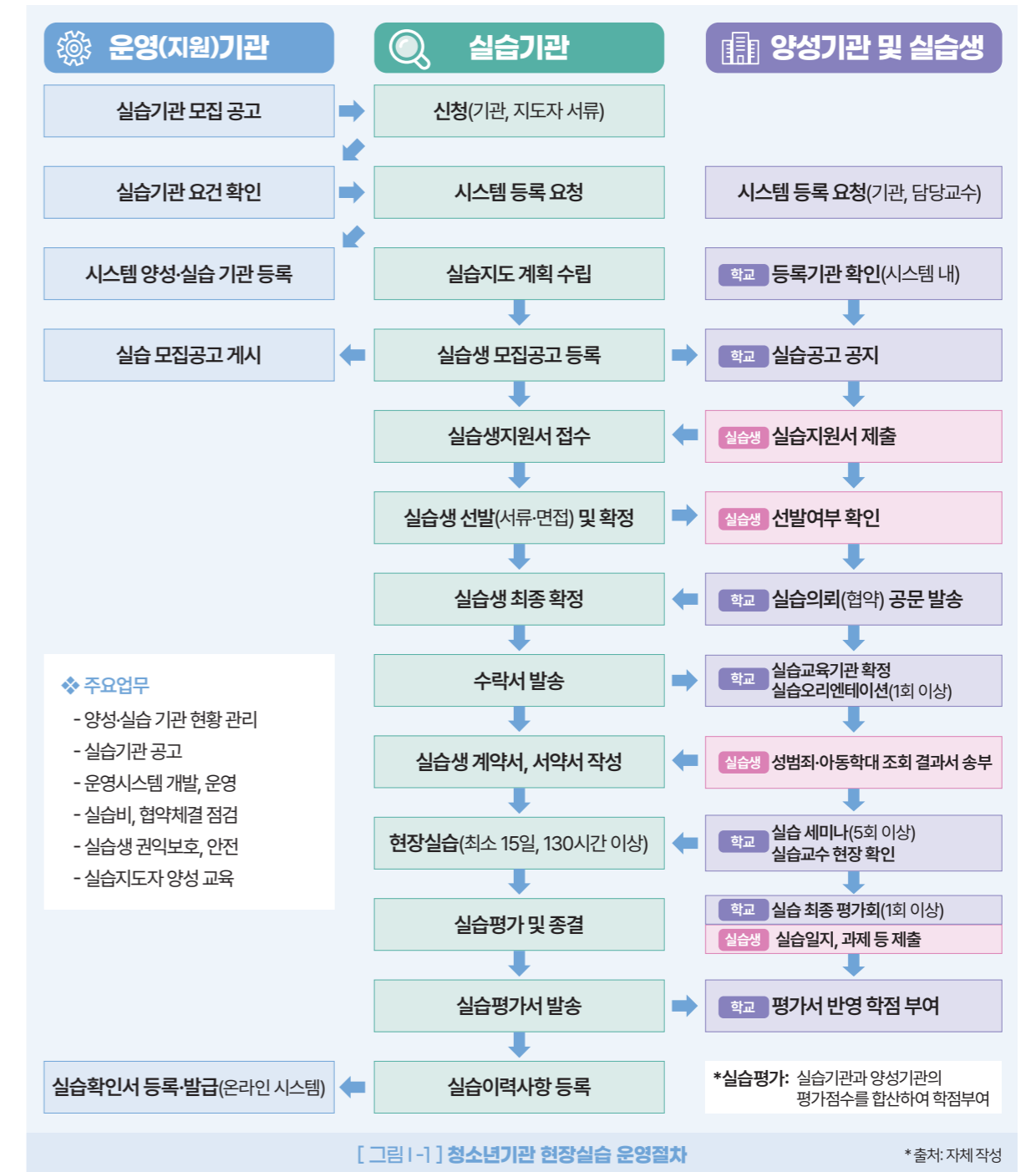
1. 매뉴얼 구성

- 이 매뉴얼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로 운영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Q&A를 담았고 현장실습에 사용할 다양한 양식을 부록에 담아서 제공하고 있음.



2. 매뉴얼에 대한 대상별·절차별 활용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의 협약 체결은 교육과정 운영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생이 개별 실습기관과 접촉해 현장실습을 요청할 경우 실습기관 확정 단계에서 협약을 맺을 수 있음.
 - 실습기관이 자체 계획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현장실습 모집 공고와 실습생 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학 등 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실습기관은 실습오리엔테이션과 실습최종평가회에 참여하거나 양성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양성기관이 실습기관 모집 시와 협약 체결 시에 현장실습 시스템을 통해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습기관의 실습비 징수, 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음.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사협회,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대학 등 양성기관에서는 운영 절차에 따라 이 매뉴얼의 수록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음.



	운영 내용	수록 정보
1 현장실습 수행 전 단계	· 현장실습에 대한 이해	II-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 현장실습 교육과정 계획 수립	III-1. 현장실습 내용 및 수업편성
	· 현장실습 운영 기준 확정	II-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운영 기준 II-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 현장실습 교수진 구성	III-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과 요건
	· 현장실습생 의무와 권리, 보호	III-3. 현장실습생 참여 및 보호조치
	· 실습기관 섭외 및 협약체결	III-4. 현장실습기관 선정 및 관리
	· 교육과정, 교수진, 실습기관 정보제공	III-3. 현장실습생 참여 및 보호조치
	· 학생 참여 신청 및 사전안내	III-3. 현장실습생 참여 및 보호조치
	· 현장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III-3. 현장실습생 참여 및 보호조치
2 현장실습 수행 단계	·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III-1. 현장실습 내용 및 수업편성
	· 현장실습 세미나	III-1. 현장실습 내용 및 수업편성
	· 현장실습 실습기관 운영 모니터링	III-4. 현장실습기관 선정 및 관리
	· 실습기관 점검 및 보고서 작성	III-4. 현장실습기관 선정 및 관리
	· 현장실습생 방문상담 및 지도	III-3. 현장실습생 참여 및 보호조치
3 현장실습 수행 후 단계	· 현장실습 최종보고회의 개최	III-5. 현장실습생 평가 및 학점 인정
	· 실습기관 현장실습 관련 의견수렴	III-4. 현장실습기관 선정 및 관리
	· 현장실습생 평가	III-5. 현장실습생 평가 및 학점 인정

[표 1-1] 양성기관의 매뉴얼 활용

● 현장실습생은 운영 절차에 따라 이 매뉴얼의 수록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음.



	운영 내용	수록 정보
1 현장실습 수행 전 단계	· 현장실습에 대한 이해	IV-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 현장실습 교육과정 계획 확인	IV-2. 학생 참여 신청과 준비사항
	· 현장실습 운영 기준 확인	IV-2. 학생 참여 신청과 준비사항
	· 현장실습생의 권리, 의무 확인	IV-3.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리와 의무
	·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조치 확인	IV-5.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
	· 교육과정, 교수진, 실습기관 정보 확인	IV-2. 학생 참여 신청과 준비사항
	· 현장실습 참여신청	IV-2. 학생 참여 신청과 준비사항
	·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참여	IV-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2 현장실습 수행 단계	· 현장실습 세미나 참여	IV-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 실습기관 현장실습 참여	IV-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대응	IV-5.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
	· 실습일지 및 보고서 작성	IV-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3 현장실습 수행 후 단계	· 현장실습 최종보고회의 참여	IV-6. 현장실습생의 자기 평가
	· 현장실습 평가	IV-6. 현장실습생의 자기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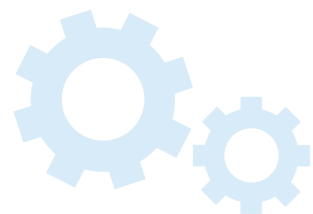
[표 1-2] 현장실습생의 매뉴얼 활용

● 실습기관에서는 운영 절차에 따라 이 매뉴얼의 수록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음.



	운영 내용	수록 정보
1 현장실습 수행 전 단계	· 현장실습에 대한 이해	V-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 실습기관의 범위에 대한 확인	V-2. 실습기관의 범위와 실습지도자의 자격
	· 실습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확인	V-2. 실습기관의 범위와 실습지도자의 자격
	· 실습기관의 역할과 책임 확인	V-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사전 준비
	· 실습기관의 실습지도 준비	V-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사전 준비
	· 현장실습생의 선발	V-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사전 준비
2 현장실습 수행 단계	· 실습생에게 제공되는 실습내용	V-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 현장실습 슈퍼비전	V-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 현장실습생 관리	V-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대응	V-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 실습일지 및 보고서 작성	V-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3 현장실습 수행 후 단계	· 현장실습생 평가	V-5.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평가
	· 실습기관 실습운영 평가	V-5.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평가

[표 1-3] 실습기관의 매뉴얼 활용



1-3 매뉴얼 용어 정의

● 매뉴얼의 용어를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음.

용어	정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 양성기관(대학 등)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관련 전공을 이수하거나 이수중인 학생이 청소년시설 등 실습기관 현장에서 청소년지도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자 실무적인 교육을 받는 교육과정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
양성기관	·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학력을 검정하는 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학점은행기관) 중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운영 중인 기관
현장실습생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실습기관	· 청소년기관, 시설, 단체를 비롯하여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곳으로 학생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기관
실습오리엔테이션	· 현장실습에 앞서 양성기관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실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절차와 유의사항, 실습생의 의무와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방향제시나 안내교육
실습세미나	· 현장실습을 통해 배운 내용에 대해서 교육·토론·연구가 진행되는 수업시간으로 양성기관은 1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1주당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면방식이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실습기관 협약	· 대학 등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이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상호협력을 위해 체결 또는 협의하는 행정행위
실습담당교수	·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해당 과목의 교육 경험이 5년 이상(석사 학위는 2년, 박사 학위는 3년 경력 인정) ·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로 현장실습 양성기관에서 실습담당교수로 위촉한 자
선수과목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기 전 미리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3개의 필수과목(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와 1개 이상의 선택과목(교과목 이름에 청소년이 포함된 과목) 등 총 4과목 이상을 취득해야 함.
실습지도자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실습 운영과 지도, 관리,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
실습비	·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해 대학 등 양성기관과 실습기관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교육비용
운영기관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양성기관, 실습생, 실습기관을 지원하는 기관

[표 1-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용어 정의

* 출처: 성평등가족부(2025), 청소년 관련 5대 학회(2023), 교육부·UNICO 산학협력정책연구소(2017) 등을 참고하여 작성.

PART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 II-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대한 정의
- II-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3주체
- II-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운영 기준
- II-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II-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대한 정의

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개념

- 현장실습은 학생(실습생)이 대학(양성기관) 등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실습기관)에서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격차를 줄이고 청소년지도의 실제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이끄는 실무적인 교육과정
- 따라서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학력을 검정하는 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학점은행기관) 등 양성기관에서 국가검정자격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관련 전공을 배운 학생(실습생)이 대학에서 배운 청소년관련 지식과 기술 등을 청소년시설과 단체 등 실습기관에서 적용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의 실제 전문성을 높이는 실무적 교육과정의 하나로, 예비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지도와 관련한 실무능력과 자질 등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말함(청소년관련5대학회, 2023: 22).

2. 양성기관 입장에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목표와 의의

- **실현현장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교류의 기회 확장** : 대학 등 양성기관은 실습생의 실습 지원을 위해 평소 교육과정 심의 및 평가 과정에 청소년기관 및 시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게 됨. 특히 양성기관은 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습이 가능한 기관과 시설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기관과 시설에서 요청하는 실습생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면서 현장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교류를 확장해 나감. 준비 과정 외에도 실습기간 동안 실습담당교수의 현장방문과 현장실습 이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보고회 등 평가과정을 통해 양성기관과 현장과의 연계와 협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연계와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 분야의 활성화를 양성기관과 실습기관 공동으로 도모할 수 있음.
- **양성기관 내 교육과정의 진단과 평가의 기회** : 실습생의 보고와 평가 등을 통해 양성기관(대학)은 자격검정 과정 등 양성기관 내 교육과정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이 무엇이며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등 교육과정의 효과를 탐색하는 기회가 바로 현장실습임. 양성기관은 교육과정 심의위원 중 일부를 현장 청소년지도자로 두어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을 운용함으로써 산학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학생 역량을 진단·평가하고 양성체계를 조정화하는 기회** : 양성기관은 실습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아울러 이 기회를 통해 교육과정과 교수법 등을 진단·평가하여 양성체계를 조정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 실습 과정에서 유능한 역량을 발휘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구분하여 전자의 유형에서 발휘되는 역량과 후자의 유형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역량들을 교육과정 및 교수법 등에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학생 진로의 구체화와 취업 기회의 향상** : 양성기관은 실습을 통해 실습을 나간 학생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취업의 기회를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실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해당 분야가 자신의 진로 설계에 적합한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됨. 양성기관은 학생의 진로 결정을 촉진하는 기회를 실습장면에서 찾을 수 있음. 실습담당교수는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실습이 종료된 후 학생과의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학생의 진로 결정을 촉진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3. 실습생의 입장에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목표와 의의

- **양성기관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술의 통합적인 적용과 응용** : 실습생은 양성기관에서 배운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청소년기관 및 시설 등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실제 현장의 체험과정에서 실습생 본인이 양성기관에서 학습하였던 제반 지식과 기술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응용할 수 있음.
-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의 습득 기회** : 청소년의 사회영향력 확대는 새로운 청소년지도방법의 필요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어 양성기관은 실습기관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됨. 실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청소년활동 지도기술·기법,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발굴방법, 프로그램개발과 사업연계 등 특화된 방법을 실습생이 체득함으로써 산업체의 수요에 따른 청소년지도인력의 양성이 가능해짐. 실습생은 실습평가와 반성의 과정을 통해 자기계발을 이루게 되고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반응을 환류함으로써 양 기관의 성장기회로 확장할 수 있음.
- **실습기관 및 현장에 대한 이해 증진** : 실습을 통해 실습기관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체득하고, 구체적인 업무와 서비스들을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등 청소년지도현장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음. 현장지도자의 적극적 코칭과 지원을 통해 소속감을 갖고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들을 마주함으로써 이론에 치우친 청소년과의 만남, 접촉을 극대화하여 청소년지도의 실천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음.
- **청소년정책과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 및 비판적 의식 고양** : 실습생들은 실습을 통해 청소년정책과 관계법령, 제도 등의 필요성과 의의를 이해하고 체험하며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비판적 의식도 고양시킬 수 있음. 그리고 현장의 청소년기관과 시설이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기능과 전문적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청소년시설과 기관에 대한 법적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음. 즉, 실습생들은 실습기관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청소년 관계법령을 파악하게 됨. 또한 법조문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현장의 청소년 사업과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깊이 있게 체득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정책과 관계법령, 제도의 한계 등을 고민하면서 비판적 의식도 높일 수 있음.
-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정체감 형성 및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실습생들은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자 및 다른 실습생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동료애를 형성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기회를 갖게 됨. 나아가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학교 외부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향후 청소년지도자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음.
- **자기인식과 성찰을 통한 진로결정의 기회** : 현장실습은 실습현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습생들에게 긴장과 함께 현장에 대한 호기심도 불러일으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도 부르고 인내도 요구함. 이러한 과정에서 실습생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됨. 즉, 실습생들은 청소년지도자로서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실습과정을 통해 인식하고 성찰하며, 청소년지도자라는 전문직에 대한 선택 동기와 이상을 고민하고 진단할 수 있음. 나아가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결정하는 기회를 가짐. 이때 실천 현장에서 만난 동료 실습생과 지도자는 진로 결정의 과정에 중요한 멘토의 역할을 하기도 함.

4. 실습기관의 입장에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목표와 의의

- **청소년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통합적 이해 및 현장 전문성 강화** :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양성기관에서 습득한 청소년 및 청소년 생활세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사업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를 통해 실습생이 청소년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대학에서 접하지 못한 실제적 지식과 기술, 기법 등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궁극적으로 이러한 실습 지원은 청소년기관 및 시설 등 청소년현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제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실습생의 법적 문제인식과 비판의식 수용 및 활용** : 실습기관은 실습생들이 실습을 통해 실천 현장과 관련된 청소년관계법령 및 정책, 제도 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 즉, 실습기관의 성격과 특성,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청소년관계법령과 이에 근거한 프로그램·사업을 통해 청소년정책 및 제도 등을 설명함으로써 실습생의 관련 법제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지원함. 그 과정에서 실습생의 문제인식과 비판적 의식을 다루면서 시사성이 있는 인식과 의식을 현장에서 수용하고 활용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성 신장의 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 지도인력 양성에 기여**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통해 대학과 같은 양성기관이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은 실습을 통해 상호 공동의 관심사와 전문적인 역량을 상호 확인하는 기회를 가짐. 그 과정에서 실습기관은 양성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연계를 통해 이론과 실무에 대한 정보 교류 기회를 가지면서 미래 청소년 전문 지도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과정과 평가를 통해 양성기관의 자격검정 과정 및 교육과정, 교수법 등에 대한 환류와 평가를 제공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에 기여함으로써 청소년 지도인력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II-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3주체

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핵심 주체

-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음. 그래서 현장실습은 다른 말로 실습교육이라 이름. 실습교육은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실습생의 전공지식과 실천기술, 그리고 해당 전문직에 부합하는 윤리와 가치관, 의식을 고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임(청소년관련5대학회, 2023: 30~39).
- 실습교육은 실습생과 실습담당교수, 실습지도자 모두에게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기회를 제공함. 즉, 실습생에게는 청소년관련 전공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습을 통해 대학 등 양성기관 외 실천 장면에서의 교육 경험을 갖게 하며, 동시에 청소년 관련 이론과 현장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 실습생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적용하면서 실천 현장의 노하우와 경험을 체득할 수 있고 이런 통합적 경험을 통해 유능한 청소년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음. 실습담당교수와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의 이러한 성장을 조력함으로써, 각각의 위치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전문성을 현장에 기초해 검토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가짐.
- 이처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핵심 3주체는 양성기관(실습담당교수), 실습기관(실습지도자), 현장실습생(학생)으로, 이들은 성공적인 현장실습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함.

2. 양성기관과 실습담당교수

- 대학을 포함한 양성기관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청소년현장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및 보완, 실습기관 선정 등 실습 준비 과정부터 지원하는 일차적 책임과 의무를 가짐.
 - 즉, 양성기관과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짐. 실습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단계부터 실습 과정과 종료 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책무가 양성기관에 있음.
- 양성기관의 실습담당교수는 이런 책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적 자원임. 현장실습은 강의, 기관 방문 및 연계, 실습 수퍼비전, 실습 세미나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연결되며, 이 과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이가 실습담당교수임.
 -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과목 운영 시 실습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특별히 지도·관리하는 교수로, 양성기관과 실습기관 간의 교량 역할을 맡음. 실습생이 실습기관에서 규정에 따른 실습교육을 제대로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함.
- 실습담당교수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를 운영하고 최종 학점을 부여하는 교과 전담 교수로, 청소년 관계법령 및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3. 현장실습생

-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준비 과정부터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함. 실습생은 양성기관의 실습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때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실습 대상 기관·단체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확보하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적합한 실습기관을 선정해야 함. 실습 중에는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실습담당교수·실습지도자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함.

- 실습생은 실습 과정에서 학생, 실습기관 구성원, 예비청소년지도자, 동료 실습생 등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수행하며, 각 지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 때로는 학생의 위치에서, 실습기관의 구성원이자 다른 실습생의 동료로서,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과정에는 예비청소년지도자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이를 역할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1) 학생으로서의 역할

- 실습 전 교육과 오리엔테이션, 실습 세미나 및 평가회 등에 성실히 참여
- 양성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각종 보고서들을 성실하게 제출
- 실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실습담당교수와 상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2) 실습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 실습기관의 오리엔테이션, 실습 일정, 평가회 등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각종 보고서들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
- 출퇴근 시간 포함 실습기관의 제반 직무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
- 실습지도자 및 실습기관 직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실습지도자의 업무 관련 지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실습기간 동안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언행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유지

(3) 예비 청소년지도자로서 청소년과의 관계

-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유지
- 청소년과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고, 실습담당교수 및 실습지도자에게 상담 내용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을 때에도 상담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
- 실습과정에서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 발생시 실습지도자와 상의하여 적극 해결해야 함.

(4) 동료 실습생과의 관계

- 동료들과 지지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도록 노력
-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
-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에는 실습담당교수 및 실습지도자와 상의하여 해결하도록 함.

4.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

- 실습기관은 청소년관계법령 및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이와 같은 필수 요건 외에 실습기관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실습기관의 장과 직원들은 실습교육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습기간 내 관련 책무성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실습기관이 제공하는 실습내용은 실습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실습교육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필요한 자료와 시설, 업무공간, 실습이 가능한 교육환경과 기자재,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함. 실습을 지도하는 실습지도자는 실습지도와 관리에 필요한 시간을 배려하고 지원을 해야 함.
 - 실습기관은 실습생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관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기관운영이 가능한 재정과 직원의 규모를 갖추어야 함.

- 이상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3주체의 주요 역할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주요 역할	주요 내용
양성기관 (실습담당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기관과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생이 유능한 청소년지도자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각각의 위치에서 각자의 지식과 기술, 전문성을 현장에 기초해 검토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함 · 양성기관과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교육계획 수립 후 오리엔테이션을 실습담당교수 주도하에 실시함 · 실습과정에는 실습생들에게 실습담당교수가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을 통해 수퍼비전을 실시 · 실습이 종결된 후에는 실습담당교수와 실습생이 평가회를 거치는 등 실습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환류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기관과의 상호 협력 · 실습 오리엔테이션 · 실습기관 소개 · 실습기관 선정 지원 · 현장실습 모니터링 · 현장실습 피드백 · 실습세미나 · 실습평가회 · 실습생 최종평가 · 학점부여
실습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기관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임하는 자세 · 양성기관 및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문서와 보고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 · 실습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실습담당교수 및 실습지도자와 상의하여 해결 · 학생, 실습기관 구성원, 예비청소년지도자, 다른 실습생의 동료 등 다양한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준수 · 실습지도자 및 실습기관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실습지도자의 업무관련 지시에 대한 성실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수강 · 오리엔테이션 참여 · 실습기관 탐색, 선정 · 현장실습 실시 · 실습일지 작성, 제출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법적 자격요건 및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 ·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윤리기준을 갖춘 기관·시설·단체, 실습지도자 · 실습교육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갖춘 기관의 장과 직원 · 실습교육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실시되는 실습내용이 실습교육의 목표와 적극 부합하는 실습기관 · 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지원하는 실습기관, 실습생에게 수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을 갖춘 실습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기관과의 상호 협력 · 실습희망자 사전 면담, 허가, 오리엔테이션 · 현장실습 실시 및 관리 · 현장실습 평가서 작성, 제출 · 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제출

[표 11-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3주체의 주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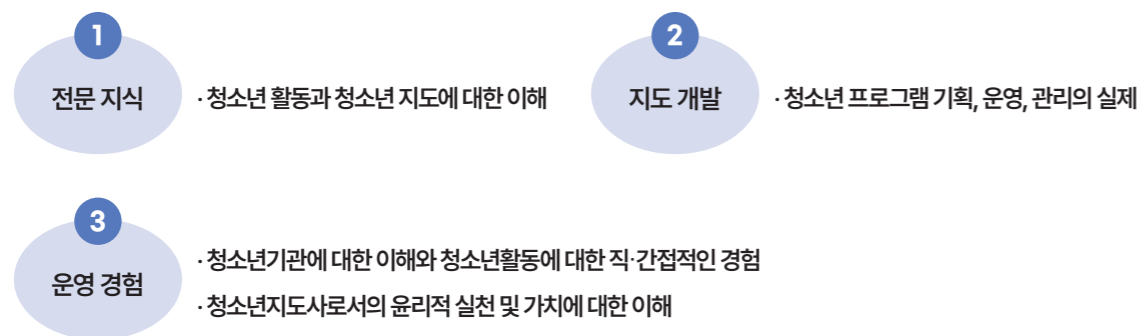
* 출처: 자체작성.

II-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운영 기준

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육내용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은 전문 지식, 지도 개발, 그리고 운영 경험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전문 지식은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지도에 대한 이해임. 이는 현장실습에 임하기 전에 미리 학습한 해당 전문 지식을 실제 청소년 현장에서 체험하며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두 번째로 현장실습 과정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이해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이 역시 현장실습 이전에 이수한 선수과목의 이론 내용을 현장에서 실제 상황을 체험하며 적용하는 과정임.
 - 마지막으로 운영 경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 번째는 청소년기관과 실제 실습기관에 대한 이해임. 현장실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이용 시설공간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동시에 실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어떤 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리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체험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두 번째 교육 내용은 청소년지도사의 윤리적인 실천이나 가치에 대해 이해하는 것임. 이론 수업으로 배운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만나고 생생한 직업생활을 지켜보면서 느낀 부분을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하게 됨.
 - 대학 등 양성기관이 청소년수련관 등 실습기관과 협약을 맺을 때에는, 현장실습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으로 위의 II-2에서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표 II-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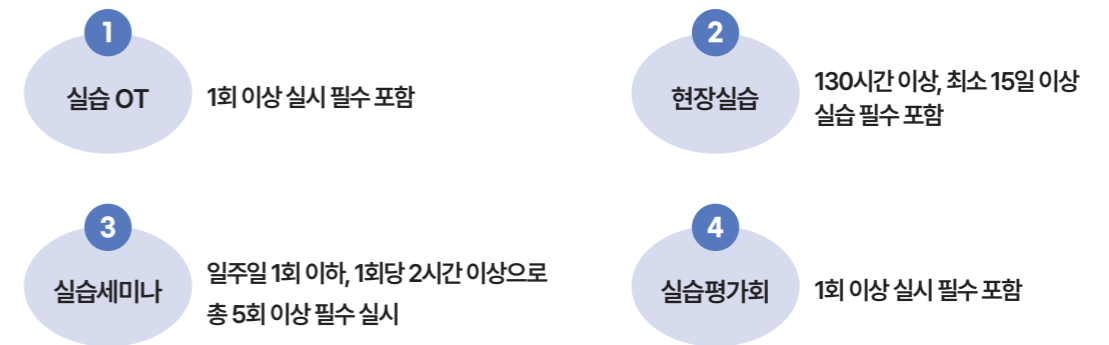


* 출처: 김기현, 남화성, 이경아(2024: 74).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수업 편성

- 현장실습 수업에 대한 편성은 4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고시로 최소한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음. 이 요건은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써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실습세미나는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이 부분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 ④항에 명시됨.
 - 실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130시간 이상으로 규정됨. 현장실습 시간이 130시간 미만일 경우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130시간을 반드시 충족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조의 ④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소 15일이라는 실습 일수에 관한 부분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7조의 1에 명시되어 있음.

[표 II-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수업 편성





* 출처: 김기현, 남화성, 이경아(2024: 74).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 이론 수업으로 교실이나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실습세미나는 1주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1회당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총 5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 원격수업의 경우 반드시 1회 이상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조의 ④항에 명시됨.
- 마지막으로 실습평가회는 실습오리엔테이션과 마찬가지로 필수이며 1회 이상 진행되어야 함. 이에 대한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조의 ④항에 명시됨.

3. 실습담당교수의 요건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을 담당하는 실습담당교수는 반드시 아래의 자격 중 한가지 이상 갖춘 경우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사 검정 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어야 함. 청소년지도사 검정 과목은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등임.
 - 청소년지도사 검정 과목을 강의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실습담당교수가 될 수 있음. 이 경우에 석사학위가 있는 경우 2년의 교육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박사학위가 있는 경우 3년을 인정받을 수 있음. 이때, 박사학위는 석사학위가 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가 각각 있더라도 박사학위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경험은 5년이 아닌 3년임에 유의해야 함.

[표 II-4]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요건

 학계 전문가	①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②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자.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의 교육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
 현장 전문가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 출처: 김기현, 남화성, 이경아(2024: 76).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 현장 전문가도 실습담당교수가 될 수 있는데, 전문학사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5년 이상의 청소년육성 업무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실습담당교수의 요건은 포괄적인 규정으로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와 더불어 현장실습 지도만을 목적으로 선발된 교원에게도 해당되는 자격 요건임.

4. 현장실습 선수과목

- 현장실습 선수과목은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다음의 4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현장실습에 나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선수과목은 기본 과목 3가지와 추가 과목 1가지로 나누어짐. 기본 과목은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임. 추가 과목은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 보호 등 청소년지도사 검정 과목과 더불어 교과목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임.

구분	내용
1. 기본 과목(3과목)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 추가 과목(1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 보호 등 교과목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표 II-5] 현장실습 선수과목

* 출처: 김기현, 남화성, 이경아(2024: 76).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5.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 현장실습생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와 현장실습생이 준수해야 할 의무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11조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음.
 - 실습생의 권리는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등 세 가지로 제시됨.
 - 실습생의 의무 사항은 이 고시 및 각 양성기관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세 가지가 제시되었음.
 - 대학 등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은 실습생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동안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구분	내용
실습생의 권리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3.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실습생의 의무	1. 이 고시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준수 의무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준수 의무 3.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의 의무

[표 II-6]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 출처: 김기현, 남화성, 이경아(2024: 76).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6.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는 교육과 평가, 그리고 실습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우선 교육과 관련하여 양성기관이나 실습기관이 현장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교육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함.
 -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조의 ④항에 따라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담당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실습담당교수가 최종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실습기관에서 자체 기준이나 규정을 근거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제12조의 ②항에 명시됨.
 - 성평등가족부 고시에는 실습 운영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양성기관에 알리고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명시됨. 이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임.

구분	내용
교육의 실시	양성기관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직장괴롭힘 예방교육' 을 실시
평가 불이익	실습기관에서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 금지
실습 운영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표 II-7]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 출처: 김기현, 남화성, 이경아(2024: 76).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7.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 현장실습이 진행될 수 있는 실습기관은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정해진 기관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먼저 청소년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이 진행될 수 있음. 이에 해당하는 법률과 기관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의 경우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이 해당됨.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교류센터 등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기관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주배경청소년센터 등이 이에 해당함. 청소년보호법의 기관으로는 청소년보호·재활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임. 이 중에서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곳은 청소년수련시설이며 현장실습을 운영할 실습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관계 법령 외 법률에 따른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관 중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가 가능함. 아동복지법에 따른 기관 중에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등도 가능함.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도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함.

- 기타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이 가능함.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한데, 이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임.

구분	법률	기관
1. 청소년 관련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교류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재활센터
2. 청소년 외 법률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아동복지법	자립지원전담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3. 기타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표 II-8] 실습기관 자격요건

* 출처: 김기현, 남화성, 이경아(2024: 76).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8. 실습기관의 운영 기준

-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7조와 제9조, 그리고 제10조에 제시됨.

-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7조는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현장실습은 최소 15일 이상 운영해야 하며 130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동시에 실습지도자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현장실습을 진행하면 안되며, 식사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이하로 운영되어야 함.

구분	내용
시간 운영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 실시,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내에 실시, 식사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이하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 보장,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 운영 못하나 교육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 운영
인원 배치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 동일 시간 실습지도자 당 실습생 10명 이하로 운영
실습비	양성기관이나 실습생으로부터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비 징수 가능

[표 II-9] 실습기관의 운영 기준

* 출처: 김기현, 남화성, 이경아(2024: 76).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현장실습 시간은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함. 야간 실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교육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 실습을 운영할 수 있음. 교육 목적의 불가피한 사항의 예시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축제 등의 준비와 운영, 청소년수련원에서 캠프 등의 운영, 청소년쉼터에서 청소년 다중 밀집지역에 나가 야간에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명백한 불가피성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함.

-실습기관 자격요건을 갖춘 곳일지라도 1명 이상의 상근 청소년지도사가 없을 경우 실습을 진행할 수 없음. 또한, 무리한 실습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동일 시간대에 실습지도자 1인이 10명을 초과하는 실습생을 지도하지 못하도록 함.

9. 현장실습지도자 자격기준

● 현장실습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8조에 제시됨.

-현장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2급 자격증 소지자로 현장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음.

-실습기관 선정 시에는 성평등가족부 고시의 해당 기준을 갖춘 기관인지를 확인하고, 양성기관에서는 학생이 최종적으로 요건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표 II-10] 현장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출처: 김기현, 남화성, 이경아(2024: 74).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II-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1. 양성기관의 운영 절차(안)

● 양성기관은 아래의 운영절차(안)를 참고하여 현장실습을 준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성기관용 매뉴얼에서 제시하였음.

	내용	진행과정
준비단계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과목 운영현황 진단 현장실습 과목 교육과정 편성(선수과목 고려) 학생 현장실습 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 현장실습 전담교수 배정
	실습기관 모집 및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기관 수요조사 실시 등 정보수집 실습기관 모집계획서 작성 실습기관 실습협조 요청 공문 발송 실습 가능기관 협약 체결(실습생 연계 후 체결 가능)
	실습기관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 가능기관 리스트 정리 실습 가능기관 접촉 실습담당자 확인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 실습기관 정보 제공
	실습생 수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과목 수강 신청 안내
	실습기관 및 실습생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학교 제공 실습기관 접촉 학생 본인 검색 실습기관 접촉 실습가능기관 방문 실습 진행 협의
	실습기관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실습계획서 등 제출 서류 작성 실습가능기관 방문 서류 제출 및 실습 운영 협의 실습계약서 작성
실습단계	실습오리엔테이션(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과목 수업 안내 실습기관 및 실습 운영 소개 현장실습 준비 및 유의 사항 점검
	실습세미나(5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이론수업 실습계획서, 기관분석보고서 등 발표 및 토론
	실습담당교수 현장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생 지도 실습기관 확인 및 실습지도자 면담 등
평가단계	현장실습 평가회(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소감 발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발표 및 제출
	평가 및 학점(3학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지도자 평가서 요청 및 회수 실습담당 교수 평가 및 학점 부여

[표 II-11] 양성기관의 운영 절차(안)

*출처: 자체 작성



2. 학생의 참여 절차(안)

- 학생은 아래의 참여 절차(안)를 참고하여 현장실습을 준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용 매뉴얼에서 제시함.

	내용	진행과정
준비단계	현장실습 정보 확인	• 학교에서 제공하는 현장실습 정보 확인 •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확인
	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 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
	실습기관 실습요청	• 학교 제공 실습 가능기관 중 실습 요청 • 기타 거주지나 학교 주변의 실습기관 직접 탐색
	선발 여부 확인	• 실습기관 선발 절차 진행 시 참여 • 실습기관 방문 실습계획서 등 서류 제출 • 실습 요청 기관 선발 여부 확인, 학교 통보 • 실습기관과 실습계약서 작성
실습단계	실습오리엔테이션 참여	• 현장실습 과목 수업 내용 파악 • 실습기관 및 실습 운영 방식 파악 • 실습과정에서의 권리와 의무, 보호조치 등 확인 • 현장실습 준비 및 유의사항 점검
	실습세미나 참여	• 현장실습 이론수업 준비 및 수업 청취 • 실습계획서 발표 준비 및 발표, 토론 • 기관분석보고서 발표 준비 및 발표, 토론
	현장실습 참여	• 130시간 및 15일 이상 등 운영 기준 숙지 • 실습기관 실습 운영 숙지 및 실습기관 방문 •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및 실습일지 작성
평가단계	현장실습 평가회 참여	• 현장실습 참여 소감 정리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작성 • 현장실습 소감 및 결과보고서 발표 및 토론 • 현장실습 자기평가 진행
	실습일지, 과제 제출	• 성적 처리 관련 서류 제출 • 실습일지, 실습 과제 등 평가자료 제출 • 평가 결과 확인

[표 II-12] 학생의 참여 절차(안)

*출처: 자체 작성

3. 실습기관의 운영 절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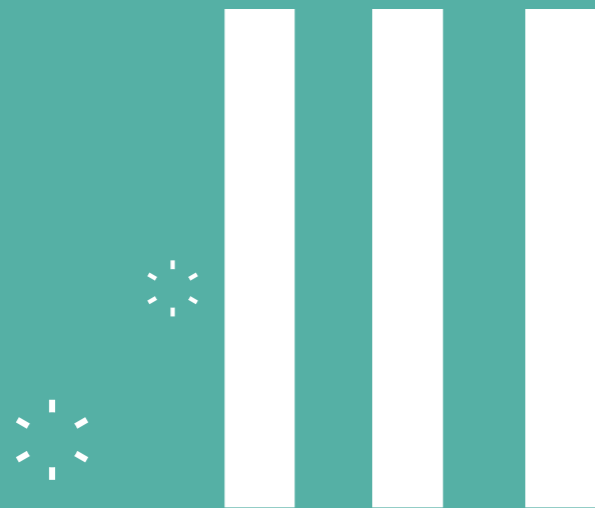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는 아래의 운영 절차(안)를 참고하여 현장실습을 준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습기관용 매뉴얼에서 제시함.

	내용	진행과정
준비단계	양성기관과 협약체결	• 양성기관 수요조사 참여(요청 시) • 양성기관 담당자 면담 진행(요청 시) • 실습기관 실습협조 요청 공문 접수 • 실습기관 참여 가능 기관 여부 확인 • 실습 참여 여부 검토 • 실습기관 공문 결과 회신 • 실습참여 여부 통보(필요 시) • 참여 의사가 있을 경우 양성기관과 협약체결
	실습지도 계획 수립	• 실습기관 현장실습 운영현황 진단 • 실습기관 현장실습 프로그램 수정 및 개발 • 실습지도자 배정
	실습생 선발 검토	• 학생 실습기관 참여 요청 접수 • 학생 작성 필요 서류 등 제공 • 학생 실습기관 방문 시 면담 • 실습생 선발 절차 안내 및 면접 등 진행
	실습생 선발 확정	• 실습생 선발 여부 논의 • 신청 학생 실습생 선발 여부 통보
실습단계	실습지도 준비	• 실습기관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 현장실습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실습지도자 직무교육 및 실습 지도 준비 • 실습기관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정
	실습지도(15일, 130시간 이상)	• 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 • 실습기관 실습 운영 소개 •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소개 • 학생 제출 실습계획서 검토 • 현장실습 프로그램 진행(15일, 13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평가회 참여	• 학생 제출 실습일지 검토 • 학생 제출 결과보고서 검토 • 실습생 자체 실습 평가 간담회 의견 교류
평가단계	실습기관 실습생 평가 및 제출	• 실습생 평가서 작성 및 제출 • 실습기관 현장실습 자체 평가

[표 II-13] 실습기관의 운영 절차(안)

*출처: 자체 작성

PART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 Ⅲ-1. 현장실습 내용 및 수업편성
- Ⅲ-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과 요건
- Ⅲ-3. 현장실습생 참여 및 보호 조치
- Ⅲ-4. 현장실습기관 선정 및 관리
- Ⅲ-5. 현장실습생 평가 및 학점 인정
- Ⅲ-6. 양성기관 FAQ
- Ⅲ-7. |부록| 양성기관용 서식 모음

III-1 현장실습 내용 및 수업편성

1. 현장실습 과목의 교육내용

● 청소년활동과 지도에 대한 이해

- 현장실습 과목의 교육내용 중 첫 번째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에 대한 이해임.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음(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 2025).
-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청소년들이 균형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던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전국적으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이 설립되었으며, 전문 인력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도입되고 시설에 배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대학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론’과 ‘청소년지도방법론’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임. 이 수업들은 청소년활동과 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이처럼 사전에 학습한 전문 지식을 실제 청소년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청소년활동은 이론적 측면에서 경험학습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에 기초하고 있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158-161). 경험학습은 구체적인 경험과 반성적인 관찰, 추상적인 개념화와 적극적인 실험을 통해 이루어짐. 현장실습은 바로 이 ‘구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단계로, 학생들이 이론으로만 알던 지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더 깊이 있는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기회가 됨. 따라서 현장실습은 사전에 학습한 청소년활동과 지도 개념을 구체화하는 필수적인 과정임.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관리

- 청소년지도사가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는 가장 주된 역할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일임. 따라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인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실제 진행되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청소년지도사는 활동프로그램의 기획자로서 적절한 목적과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또한 우선순위 설정과 다양한 대안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72-73).
- 이론 수업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모델을 배우고 프로그램 개발과정과 평가를 익힌 학생에게는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일에 참여하여 이론과 실재를 견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장실습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관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 이는 선수과목 이론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서 체험하며 심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청소년기관과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이해

- 청소년지도사는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 청소년시설에 취업하여 청소년활동 지도 역할을 수행하게 됨. 이는 사범대 학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한 후 임용시험을 거쳐 학교의 교사가 되는 과정처럼, 전문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 분야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행 과정임.

- 이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앞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근무하게 될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청소년기관운영론’이나 ‘청소년지도자론’과 같은 교과목 이수와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청소년지도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경험할 때 이러한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음. 현장실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역할은 무엇인지, 해당 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업무와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현장교육이 필요함. 현장실습 과정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기관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증진시키는 계기가 됨.

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수업 편성

● 현장실습 수업 편성과 운영계획 수립

- 대학 등 양성기관은 우선 현장실습 과목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은 현장실습 과목 운영현황 진단과 현장실습 과목 교육과정 편성(선수과목 고려), 학생 현장실습 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과 현장실습 전담교수 배정 등을 통해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현황 진단:** 현장실습 과목 운영에 대한 현황 진단은 2027년 1월부터 현장실습이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제도 변화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첫 단계임.
- ▶ **현장실습 과목 교육과정 편성:** 현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선수과목 이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학생들이 졸업 전에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 한 후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현장실습 수업을 듣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선수과목은 청소년활동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그리고 ‘청소년’이 과목명에 포함된 1과목 등 총 4과목임.
- ▶ **수요 조사:** 본격적인 현장실습 수업 계획 수립에 앞서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볼 수 있음. 이는 현장실습 과목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절차임. 해당 학부나 학과의 학생 중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해 현장실습을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실습담당교수 배정:**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시에 실습 담당교수에 대한 배정이 이루어져야 함. 실습담당교수는 학생의 실습기관 배정, 수업 운영과 실습기관 현장방문, 실습 평가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학생 규모에 따라서 학부나 학과 전임교원과 외에 현장실습을 전담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겸임교수 혹은 강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현장실습을 추진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원에 대한 검토와 확정이 이루어져야 함.
- ▶ **운영기준 점검:** 실습 담당교수는 현장실습 운영계획이 성평등가족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함. 주요 점검 사항은 현장실습이 최소 15일, 130시간 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했는지, 1회 이상의 실습오리엔테이션을 편성했는지, 1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의 실습세미나(1주당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원격수업 시 대면 방식을 1회 이상 포함) 편성했는지, 1회 이상의 최종실습평가회를 편성했는지, 양성기관과 실습기관 간의 협약체결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지,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조교수 이상 혹은 5년 이상의 교육경험, 5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지도사 자격소지자)을 준수했는지, 현장실습 수업 전에 선수과목(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과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했는지 등임.

● 실습기관 모집 및 협약체결

-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는 실습기관 모집 및 협약체결 절차가 필요함. 먼저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함.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실습 가능 기관 파악을 위해 실습기관 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실습기관 정보 수집 이후에 실습기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습기관에 실습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함. 실습 요청 공문은 수요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실습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기관과는 실습 진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 협약 체결 방식은 방문을 통한 상호 직접 서명 형태로 격식을 갖추어서 진행될 수 있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문을 통한 약식 체결방식을 취할 수 있음. 협약 체결은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섭외해 온 실습기관과는 추후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 실습기관 정보 제공 및 실습기관 확정

- 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거나 실습 협약 기관 목록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이 필요함. 실습기관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과 직접 접촉해 현장실습 담당자를 확인하고 기관명, 현장실습 담당자명, 연락처 등을 담은 실습 가능기관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이어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실습기관 정보를 제공함. 이어서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반드시 청소년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에서 미리 협약을 체결해 실습기관을 확보했다라도, 학생이 거주지역에서 실습을 받기를 원하거나, 선호하는 특정 기관이 있을 경우, 직접 기관과 연락해 실습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사후에 해당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이때 양성기관은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학생이 실습기관과 협의한 후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성평등가족부 고시 제6조 안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청소년 관련 법률에 따른 곳인지,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곳인지 확인
- ▶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해당 기관에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최소 1명 이상 있는지 파악

- 실습기관이 확정되면, 현장실습 담당 교수는 학생에게 실습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기관을 같이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실습 운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실습을 진행할 학생의 규모가 큰 경우 담당 교수가 동행하지 않고 학생이 기관을 방문해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

● 실습오리엔테이션 진행

- 실습오리엔테이션은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교육으로 이루어짐.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라 실습세미나는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실습오리엔테이션은 현장실습 과목 수업 안내, 실습기관 및 실습 운영 소개, 현장실습 준비 및 유의사항 점검 등을 다룰 수 있음.

- 실습오리엔테이션은 대학 등 양성기관의 학부나 학과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실습을 진행할 학생이 많지 않거나 실습기관이 소수인 경우 실습기관에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양성기관이 주체가 되어 실습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해야 함.

● 실습기관 현장실습 진행

- 실습담당교수는 각 실습기관에서 어떻게 실습이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습기관이 작성한 실습지도 계획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운영 기준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를 해야 함. 대학 등 양성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최소 15일 이상 현장실습 진행
- ▶ 130시간 이상의 실습기관 현장실습 진행
- ▶ 4가지의 현장실습 교육내용(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지도에 대한 이해,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의 실제,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포함해서 진행
- ▶ 식사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진행
- ▶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초과할 경우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 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하도록 운영
- ▶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해 제한적으로 야간 운영
- ▶ 1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동일한 시간에 10명 이내 지도 여부

- 실습담당교수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실습생 지도, 실습기관 확인 및 실습지도자 면담 등을 위해 현장 방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실습세미나 진행

- 실습세미나는 강의, 발표, 토론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론수업은 현장실습과 관련된 대학 수업교재를 활용하여 이루어짐. 발표수업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대한 소감이나 실습계획서, 실습기관분석보고서 등 실습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받거나 담당교수가 현장실습에 대해 조언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 1주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1회당 2시간 이상 진행이 되어야 하며 총 5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

- 원격수업의 경우 반드시 1회 이상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조의 ④항에 명시되어 있음.

● 현장실습 평가회

- 현장실습 평가회는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라서 1회 이상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평가회는 실습오리엔테이션과 마찬가지로 대학 등 양성기관에서 운영함. 학교에서 현장실습 평가회가 열릴 경우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참여할 수 있음. 평가회는 학생의 현장실습 소감 발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발표 및 제출,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참여할 경우 실습지도자의 평가 의견 발표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현장실습 평가

-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담당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담당교수가 부여함. 실습담당교수는 협조요청 공문 발송이나 협약체결 시에 실습평가 주체 및 배점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배점은 대학 등 양성기관에서 정하여 실습기관에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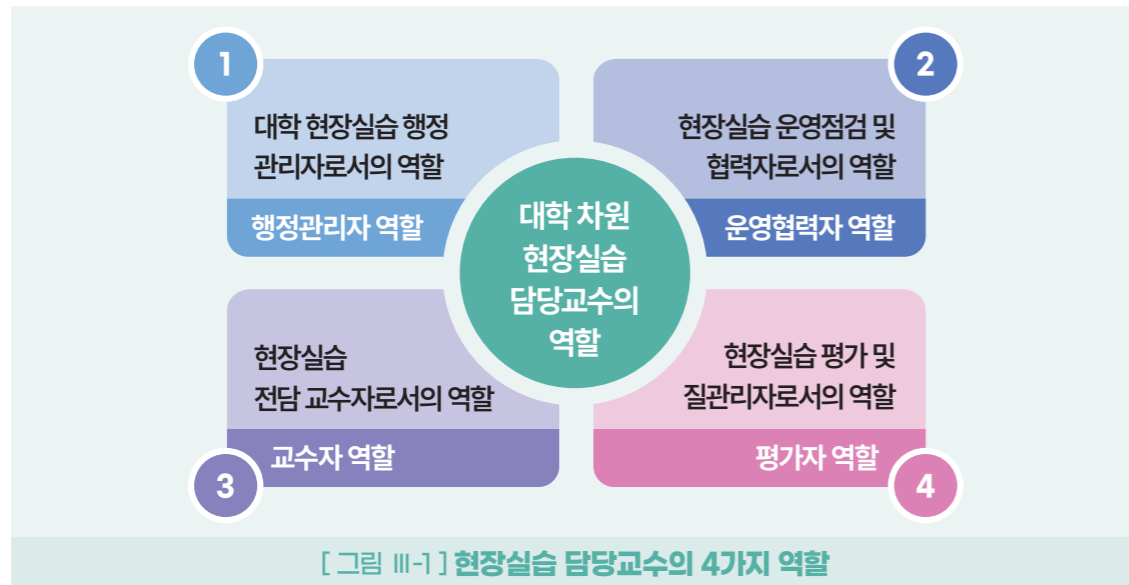
III-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과 요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

1.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4가지 역할

- 실습담당교수의 역할은 크게 4가지 행정관리자, 운영협력자, 교수자, 평가자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2. 대학 현장실습 행정관리자로서의 역할(행정관리자 역할)

- 실습담당교수는 대학 양성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행정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대학 내부에서 필요한 현장실습 관련 수업에 대한 계획 수립에서부터 현장실습에 필요한 각종 공문 처리와 실습비용 처리까지 실무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대외적으로는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수요 조사와 협약 사항 등 행정업무를 총괄 담당함.

[표 III-1]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행정관리자로서의 역할



-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 현장실습 수요조사 및 매칭
- 현장실습 기관 협약
- 보험가입 및 현장실습비용 처리
- 현장실습 관련 공문처리

(1) 현장실습 계획 수립

- 현장실습 담당교수는 현장실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해서 청소년지도사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관한 고시 내용과 현장실습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계획 수립 시에 우선적으로 실습 대상 학생 수를 파악해야 함.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선수과목으로 기본과목 3과목(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과 관련 전공교과목 중에서 1과목 이상 총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
- 다음으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한 대상 기관을 사전 점검해야 함. 실습기관의 자격요건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6조를 확인하면 되고, 유의할 점은 동일시간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 가능 실습생 수가 1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실습기관의 수와 실습가능 인원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실습생이 대학별 적게는 1명에서 2명, 많게는 3~4명을 넘지 않는 것이 실습 효과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됨. 또한 실습기관의 지리적 위치가 실습생이 출퇴근이 용이한 곳인지도 고려해야 함. 청소년지도사 실습은 특성상 주로 활동시설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복지·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을 희망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대상기관으로 다양한 유형의 실습기관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함.
- 실습대상자와 실습가능기관의 수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으면, 그 다음은 실습 운영 기간과 실습비 예산 확보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실습 계획에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서 현장실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현장실습이 운영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대학 학과(전공) 차원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2) 현장실습 수요조사 및 매칭

- 실습담당교수가 실습 진행과정에서 세심히 점검할 사항 중 한 가지는 현장실습 수요조사와 매칭 작업임. 실습 수요조사를 토대로 실습기관과 실습생을 매칭하는 작업이 잘 이루어지면 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만 매칭 작업이 잘못되면 실습기관이나 실습생 모두 어려운 현장실습을 경험할 수 있음.
- 먼저 양성기관인 대학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할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 여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이를 토대로 현장실습 진행 여부와 실습 운영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함. 수요조사 시 포함할 주요 내용에는 모집하는 실습생 수, 실습 기간, 실습 내용, 실습비용을 포함한 실습 운영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모두 포함됨.
-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실습기관별 실습 가능 기간을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학생이 희망하는 실습기관을 제출하도록 함. 이 때, 학생들에게 가급적 한 개 기관만 선정하지 않고 1순위, 2순위, 3순위로 실습 희망기관을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함.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생이 희망하는 1순위 실습기관에 최대한 배정하되, 한 시설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에는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실습생을 배정함.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은 최대한 2순위, 3순위 희망시설에 배정함. 학생이 실습을 희망하는 별도 시설이 있거나 개인 사정으로 특정 기관을 원하는 경우 실습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실습 가능 여부를 결정함.

(3) 현장실습 기관 협약

- 성공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우수한 실습기관을 확보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에 적합한 기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실습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습 내용의 적절성, 실습지도자의 전문성, 실습 환경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러한 점검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해야 함. 협약은 대학과 실습기관과의 공신력을 갖는 약속이기 때문에 가급적 협약 절차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을 확정하는 것이 좋음. 현장실습 기관 협약은 현장실습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표준협약서 서식을 사용하되 현장실습에 국한된 협약체결 없이도 현장실습내용이 포함된 실습 의뢰 공문이나 별도 서식으로 협약을 대신할 수 있음.
- 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에는 협약 기간, 실습 기간 및 장소, 실습생에 대한 평가, 실습생에 대한 안전 사항, 실습비 등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함. 이때 협약이나 실습 기간 등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보험 가입 및 현장실습 비용 처리

- 실습담당교수의 역할 중 중요한 확인 사항은 안전하게 현장실습이 진행되도록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 실습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현장실습 보험 가입임. 현장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실습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함. 일반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수련시설종합보험을 가입하지만 양성기관의 보험가입도 필수임. 따라서 현장실습 계획 시에 실습생 보험 가입 비용을 예산 계획에 포함해야 함.
- 현장실습에 따른 실습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학교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실습비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현장실습은 대학 교육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실습비는 대학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생이 부담하거나 실습기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실습비 없이 진행될 수 있음. 또한, 현장실습 비용 처리는 실습기관별로 협의하여 실습 비용과 납부 절차(사전 또는 사후 납부) 등을 결정함.

(5) 현장실습 관련 공문 처리

- 실습담당교수는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학 내부 뿐 아니라 실습 관련기관들과의 공식적인 절차와 협의 과정과 관련된 공문을 처리하여야 함. 먼저 대학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 계획과 운영, 평가 전반에 대한 내부 공문을 처리해야 함. 또한 실습기관들과 협약이나 실습 수요 조사 요청이나 실습확인서, 실습평가서 등의 공문을 발송, 수신해야 함. 실습담당교수는 이러한 일련의 공문 처리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실습담당교수는 현장실습 양성기관인 대학에서 현장실습 협약 체결 사항을 운영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잊지 않고 확인해야 함.

3. 현장실습 운영 점검 및 협력자로서의 역할(운영협력자 역할)

- 실습담당교수는 실습 진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은 주로 실습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습생들이 현장실습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함. 즉,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기간 중에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실습생과 실습기관을 격려하는 등 실습 운영의 협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표 Ⅲ-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운영협력자로서의 역할



- 실습기관 방문
- 실습 기관장 및 담당자와 현장 실습 운영 협의
- 실습생 상담 및 지도
- 실습생 보호 및 안전 점검

(1) 실습기관 방문

- 현장실습이 본격 진행되면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습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실습 운영에 협력하기 위해 실습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함.
-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생을 실습기관에 위탁한 보호자의 입장에서 실습기관에 방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따라서 실습기관 방문이 현장 지도 점검이나 평가가 아니라는 점에 특히 유의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실습생 지도를 위해 애쓰는 실습기관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음. 실습기관을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며,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실습기관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아야 함.

(2) 실습기관 기관장 및 담당자와 현장실습 운영 협의

-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기관 방문 시에 가급적 기관장 및 실습담당자와 면담하는 시간을 확보하여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함. 시설 방문이 단순히 의례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시설이 협력 기관으로서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현장실습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현장실습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협의 시에는 실습기관 차원에서 대학에서 현장실습 운영에 어떠한 사전 준비와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대학에서도 실습기관의 실습 여건과 실습 내용 등 실습 전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만약 실습기관 사정으로 인해 기관장 면담이 어렵다면 실습담당교수는 실습담당자와 실습 전반의 진행사항과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원만한 실습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3) 실습생 상담 및 지도

-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기관 방문 시 실습생을 만나서 실습과정 전반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함. 이 때, 실습기관에 요청하여 기관 관계자 동석 없이 실습생과 만나서 실습 과정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함.
- 실습생 중에는 실습과정 운영에 대해서나 실습 이후 진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실습과정에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해당 사안을 파악하여 빠르게 조치해야 하며, 좀 더 문제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실습생과 이후 별도의 실습상담 계획을 마련해야 함. 학생이 실습 관련 진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이후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진로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4) 실습생 보호 및 안전 점검

- 실습담당교수는 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서 실습생을 보호하고, 실습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함.
- 먼저 실습기관과 실습 내용 협의 시에 각종 사고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함. 실습오리엔테이션에서도 실습 중에 보호조치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실습생들이 학과 행정실이나 실습담당교수에게 보고하도록 교육해야 함.
- 사전 교육 진행에도 불구하고 문제 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기관 방문 시 현장에서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이나 안전 사항이 있는지 확인 및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만약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각 시정 요청, 실습 중단, 실습생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4. 현장실습 담당교수자로서의 역할(교수자 역할)

- 실습담당교수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성평등가족부, 2025)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현장실습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은 사전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습세미나, 실습최종평가회(평가자 역할에서 실습평가 내용을 별도로 다룸), 현장실습 관련 교육 등임. 현장실습은 대학에서 다룬 이론 내용을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청소년과 현장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교과목임. 실습담당교수는 이러한 현장경험을 어떻게 교육하고, 적용가능하게 도울 수 있을지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표 III-3]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교수자로서의 역할



- 실습생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실습 세미나 운영
- 현장실습 관련 내용 교육
- 실습최종평가회 개최

(1) 실습오리엔테이션 실시

-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생을 대상으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실습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전달해야 함.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습 교과목 학점 인정을 위한 절차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지만, 보다 중요한 사항은 실습 시에 필요한 실습생 행동지침을 교육하는 것임.
- 실습생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장 예절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실습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규칙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도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습담당교수가 신경 써서 교육해야 할 내용임. 더불어 빠뜨리지 않아야 할 교육은 안전 사항으로 보건·위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성희롱예방 교육도 실시해야 함. 이 사항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담당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면 됨.

(2) 실습세미나 운영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고시(성평등가족부, 2025)에 따르면, 실습담당교수는 실습 교과목에서 최소한 실습 세미나를 최소 5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실습세미나는 실습관련 내용으로 주 1회, 2시간 이상 개최해야 하며 원격수업을 하는 양성기관의 경우 최소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해야 함.
- 실습이 진행되기 전에 실습세미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교육, 토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됨. 현장실습을 마친 후 교과목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습생들이 경험한 실습기관 사례에 대한 발표, 질의응답, 피드백을 통해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발표, 토론하는 시간으로 실습세미나를 운영하면 됨.

(3) 현장실습 관련 내용 교육

-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오리엔테이션과 실습최종평가회 이외에 현장실습에서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해야 함. 첫째,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지도에 대한 이해, 둘째,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의 실제, 셋째,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넷째,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임.
-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지도사 검정 교과목에서 다른 내용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현장실습을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실습기관과 실습 내용을 협의할 때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실습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기관에서의 관련 내용 교육과는 별도로 청소년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 교육내용으로 현장실습을 통해 체감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프로그램의 실제, 청소년기관의 이해, 청소년지도사의 윤리적 실천 등의 주제를 실습세미나 등을 통해 교육,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4) 실습최종평가회

- 실습담당교수가 해야 할 교수자로서의 역할 중 한 가지는 실습최종평가회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현장실습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을 얻는 일은 매우 중요함. 평가회 결과를 정리하여 이후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함.

5. 현장실습 평가와 질관리자로서의 역할(평가자 역할)

- 실습담당교수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실습 운영의 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실습생 평가, 실습 운영 효과 점검,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피드백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현장실습 계획을 보완해야 함. 실습담당교수는 최종적으로 실습생 평가 자료를 근거로 학점을 부여함.

[표 III-4]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평가자로서의 역할



-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운영 평가
- 현장실습 피드백 및 현장실습 계획 보완
- 현장실습 효과 평가
- 실습생 평가 및 실습학점 부여

(1)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운영 평가

- 실습담당교수는 현장실습 전반에 대해 운영 수준을 평가해야 함. 이 평가는 주로 실습생을 대상으로 실습 과정 전반에서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통해 경험한 실습 내용, 실습 여건, 실습지도자, 실습 방법 등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설문조사 방식을 이용하여 양적 문항으로 평가하게 하고, 일부 문항은 주관식으로 만족하는 이유와 개선점을 기술하게 하는 조사방식임.
- 현장실습 평가 결과는 일반적으로 실습생의 만족도 지표로 제시되지만, 평가 항목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서술형 답변을 함께 활용하여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었는지 단점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또한 여러 실습기관들을 동일 설문으로 조사할 때, 기관별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기상대적인 실습만족도를 분석할 수도 있음. 실습담당교수는 이러한 현장실습 운영 평가 자료를 토대로 각 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 실습운영 효과 점검

- 현장실습 만족도 평가는 실습생의 주관적 만족 수준을 나타낼 뿐 실습 운영 효과를 대표하지는 못함. 현장실습 참여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습생들의 사전 기대수준과 사후 도달수준을 점검하면서 달성 수준을 확인하여 현장실습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오승근 외, 2025).
- 일반적으로 현장실습 이전에 청소년지도사 직무 역량과 실시 이후 직무 역량을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를 확인하여 실습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음. 다만 이 자료는 엄격한 실험설계 방식의 조사 결과로 얻은 통계치가 아니기 때문에 실습으로 인한 효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음.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실습담당교수가 실습생은 물론 실습기관의 기관장 및 실습지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실습 효과를 기술함으로써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실습생들이 실습 경험 이후 진로 결정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때문에 실습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3) 현장실습 피드백 및 현장실습 계획 보완

- 실습담당교수가 평가 자료를 토대로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일은 실습과정에 대한 피드백과 실습계획에 대한 보완임. 실습 평가는 단순히 실습의 우수성 정도를 판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습과정에서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실습 계획에 반영하는 것임. 따라서 실습담당교수는 실습 평가 자료를 토대로 실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습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고, 향후 실습계획 개선점을 찾기 위해 힘써야 함.

(4) 실습생 평가 및 실습학점 부여

- 실습담당교수가 해야 할 최종 업무는 실습결과 자료를 토대로 실습생의 실습 활동 및 실습 수업 수행도를 평가한 후 실습 학점을 부여하는 것임. 실습 결과 평가에 활용한 근거자료는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대학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에서 진행했던 실습세미나 발표 및 참여도를 평가한 점수를 모두 포함함.
- 현장실습은 대학별 학사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하지만 실습 교과목이기 때문에 대체로 절대평가 방식을 준용하여 학생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요건

1. 실습담당교수의 요건

- 실습담당교수는 양성기관인 대학에서 현장실습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현장실습 전반에 대해 책임지고, 실습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는 사람을 말함.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2025. 10. 1) 제4조에 따르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법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실습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1.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해당 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자.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의 교육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 위의 고시 안에서 제시된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실습담당교수는 법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현장 경력만을 충족하면 됨. 그러나 실습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대학 전공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 적용하고, 현장 직무이해와 진로 탐색 및 결정에 이르도록 지도하려면 실습담당교수는 청소년기관 현장 이해와 지도 역량을 폭넓게 갖추어야 함.



[그림 Ⅲ-2]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갖추어야 할 요건

(1) 전문 지식 및 교수 경력

- 성평등가족부 고시(성평등가족부, 2025)에 따르면,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교과 전공 교수로서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거나 교수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함(박사학위 이상 소유자는 3년 인정,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는 2년 인정). 즉, 실습담당교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교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일정 기간 해당 교과목을 가르친 경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됨.
- 현장실습 교과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전공과목이므로 청소년지도사 검정 교과목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실습세미나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필요함. 따라서 실습담당교수는 교수자로서 적정수준의 교수 경험이 필요함.

(2) 청소년기관 이해와 경험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학습한 수업 내용을 토대로 실습생 자격으로 청소년기관에서 실습 과정에 적용해 보는 것임. 따라서 실습담당교수가 청소년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 과정을 이끌기 어려움. 왜냐하면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생들의 실습 경험에 대해 실습 과정이나 실습 이후에 실습세미나를 통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실습담당교수로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3) 행정관리 능력

- 현장실습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양성기관 자체 내에서 뿐 아니라 실습기관이나 운영기관과의 관계에서 행정 처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예컨대, 실습 계획 수립, 실습 기관 수요 조사, 현장실습 협약, 실습비용 처리, 기타 현장실습 공문처리 등의 행정처리 과정이 현장실습에서 진행됨.
- 현장실습에 필요한 행정 처리 절차 이해와 적절한 실무 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현장실습 운영 자체에 혼란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실습담당교수는 현장실습 운영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행정 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4)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

- 현장실습은 양성기관인 대학 내부 뿐 아니라 대학 외부 즉, 실습기관과 운영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따라서 실습담당교수는 대학 행정 직원이나 실습 담당 조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현장실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해야 함. 특히, 기관 실습지도자와는 실습 진행 사항 전반에 대해 상세히 협의하고, 의사소통해서 기관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갈등을 방지해야 함.
- 실습담당교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습생과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실습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절히 조치하는 것임. 요컨대,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습생은 물론 실습 관련기관 담당자들과 협력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5) 리더십과 책임감

- 실습담당교수는 양성기관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실습기관 및 운영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임. 따라서 현장실습 진행 전체에서 실습담당교수의 리더십과 책임감은 성공적인 현장실습 운영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
- 실습담당교수로서 실습생에게 신뢰성을 주며, 그들의 요구 사항을 잘 충족시켜주는 존재로서 인식되어야 실습 과정 전반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음. 따라서 실습담당교수가 현장실습을 잘 이끌어가도록 책임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III-3 현장실습생 참여 및 보호 조치



현장실습생 참여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의 현장실습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현장실습생 자격요건

- 현장실습 양성기관의 실습생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함.
 - 실습생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습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습생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1조 제1항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구분	선수과목(총 4과목)
1. 기본 과목 (3과목)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 추가 과목 (1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 보호 등 교과목 이름에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표 III-5]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선수과목

* 출처: 성평등가족부 고시(2025).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호).

2. 실습 시작 전 준비사항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실습의 목적을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와 충분한 지식을 갖춘 상태로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1회 이상의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현장실습 양성기관에서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내용 구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음.
 - ① 현장실습의 목적과 의의
 - ② 청소년에 대한 존중, 실습지도자 및 기관 직원과의 관계 등 실습생의 기본자세와 태도 및 역할
 - ③ 실습 운영, 업무 및 직무 설명, 평가기준 및 방식 안내 등
 - ④ 산업안전보건 기본 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
 - ⑤ 실습생 행동수칙 및 유의사항
 - ⑥ 문제 발생 시 보고 및 지원 체계 등

3. 실습생 참여 기간 및 시간

- 현장실습 양성기관의 실습생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실습생은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실습생은 현장실습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오리엔테이션 1회 이상 참여해야 하고 실습세미나에 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 이와 별도로 실습생은 1회 이상의 실습최종평가회의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실습생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되며, 식사 및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을 보장받아야 함.
 - 실습생은 실습 수행 과정 중 실습 시간의 연장 요청을 받을 경우, 사전 동의를 한 후 주당 최대 5시간 이내에서 추가 실습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습생은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에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교육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의 자발적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4. 실습생이 숙지해야 할 현장 직무 및 업무 내용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청소년기관의 역할과 직무 내용, 업무 환경 및 실습 태도,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실습기관 내 실습지도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실습에 앞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해야 함.
-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직무 및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 실습생은 청소년기관의 법적 근거와 설립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기관의 역할과 기능, 주요 청소년 사업 및 프로그램의 유형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상태로 실습에 참여하여야 함.
 - 실습생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실시 전·후 평가, 정리 및 자료 작성 업무, 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실무 지원 등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 업무 지원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습생은 청소년 활동 기록이나 관찰 및 행정 업무 보조, 회의록 정리 등의 관련 업무 지원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습생은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 문서 정리 및 작성 지원, 기관 내 자료 출력, 복사, 정리 등 일반 행정 및 문서 업무 지원, 홍보물 제작 보조 등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습생은 지역사회 연계 사업 및 행사, 청소년 축제, 어울림 마당, 캠페인 등 기관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습생은 청소년 지도 및 활동 보조뿐만 아니라, 청소년과의 원활한 소통 및 긍정적 관계 형성,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에도 참여할 수 있음.
 - 실습생은 활동 공간이나 프로그램실 등의 환경 정리, 물품 정리 및 비품 관리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지원, 보조가 실습의 주요활동이 되어서는 안됨.

5. 실습생의 의무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실습생이 다음의 기본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하여야 함.
 - (실습 기간 및 과제의 성실한 수행) 실습생은 정해진 실습 기간 및 시간을 성실히 준수하여 실습에 참여하여야 하며, 지각·조퇴·결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실습지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또한 실습일지 및 과제 등은 성실히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업무 수행 및 지도 준수) 실습생은 실습지도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실습기관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지도 및 감독을 받으며 실습에 참여하여야 함. 무단이탈이나 단독 행동은 금하며, 모든 활동은 실습지도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 인권 및 관계 윤리) 실습생은 청소년의 인권과 개인적 특성을 존중하며, 차별적 언행이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또한 청소년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청소년과의 사적인 관계 형성 또는 신체적 접촉은 엄격히 금지됨.
 - (비밀 유지 및 정보 보호) 실습생은 실습기관에서 알게 된 청소년 및 기관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 비밀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또한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 촬영·기록·SNS 게시 행위 등은 금지되며, 실습기관의 제반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기관 규정 및 윤리의식 준수)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규정 및 행동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복장·언어·태도 등 기관의 내부 규정과 예절을 따라야 함.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등에 참여 시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실습에 참여하여야 함.
 - (특이 상황 발생 시 보고 의무) 실습생은 실습 중 특이 상황을 목격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실습지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습생이 독단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여서는 안 됨.



현장실습생 보호 조치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이 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실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함.

1.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 확보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실습생에게 안전한 실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이를 위해, 현장실습 시작 전 실습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2. 사고 발생 시 대응

- 현장실습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와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현장실습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습기관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해당 실습생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이와 별도로,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에 대비하여, 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이 실습생의 실습기간 및 시간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정해진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실습생의 현장실습은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으로 운영되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실습기관에서는 정해진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실습생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습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습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제공받아야 함.
 - 실습생은 해당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동안 실습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음.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이 이에 대해 추가적인 휴일 또는 실습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사망 등의 경조사 발생 시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 다만,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실습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습기관, 실습생, 대학 간 협의를 통해 실습 중단, 복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성희롱 등 인권 침해 방지

- 현장실습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이 안전하고 건강한 실습 및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관련 법정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실습 시작 전, 성희롱 예방 등 인권 침해 관련 교육을 실시(최소 4시간 이상 권고)하여, 실습생이 관련 예방 지식과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및 관계자로부터 인격적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당해서는 안 됨.
-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실습기관은 즉시 현장실습 양성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사실을 신속히 확인한 후, 실습기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의 실습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안전·보건, 위생, 성희롱 및 재해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현장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처리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충 처리·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고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양성기관과 실습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부적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등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6. 현장실습 내용의 적절성 유지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이 성평등가족부 고시에서 정한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실습생에게 부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강요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함.
 -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에게 실습과 관계없는 단순 노무, 사적인 심부름, 반복적·비생산적 업무 등을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만약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가 부여된 경우, 실습기관은 즉시 현장실습 양성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신속히 사실을 확인한 후 실습기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실습 평가의 공정성 확보

- 현장실습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이 실습생을 평가함에 있어 기관의 자체 기준이나 규정을 적용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불이익 등의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수행하고, 실습지도자와 실습담당교수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실습담당교수가 최종 점수를 부여함. 모든 평가가 편견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실습생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함.

III-4 현장실습기관 선정 및 관리



양성기관의 현장실습기관 선정

1. 실습기관의 자격 조건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강의실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청소년기관의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과정임. 현장실습기관은 이 과정을 통해 실습생을 청소년지도 전문가로 훈련하고 실무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청소년기관을 의미함.
- 현장실습 기관 선정은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청소년활동 분야의 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중심으로 실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외에 청소년보호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중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청소년 활동영역]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 보호영역]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 복지영역]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주배경청소년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기타 영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안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따른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지도자 자격 요건

- 양성기관은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의 자격과 배치 조건을 확인하고 실습기관을 선정해야 함.
-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자적 자질과 경력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지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한다) 이상인 사람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지도자의 실습지도자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해야 함.
 -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가 지도하는 실습생은 10명 이하로 제한됨.

3. 실습기관 선정 시 추가 고려사항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관련 청소년 현장(지도)실습 과목과 현장실습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전문 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둠. 즉, 구조화된 실천적 경험을 통해 교과에서 습득한 청소년 지도 관련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체화함으로써 청소년 현장에서의 전문성 향상에 목적이 있음.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정해진 교과목 또는 과정을 이수한 뒤(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과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이수), 청소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지도 활동을 위한 모든 과정, 즉 기획, 관리,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하거나 참관함으로써, 강의실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것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라는 실제적 상황에 적용해보는 과정임.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에 대한 이해,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의 실제,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생은 청소년지도사 자격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이 현장에 진출하기 전에 양성기관에서 학습한 청소년지도 관련 이론과 기법들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실습생은 일정 선수과목을 이수하고,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을 신청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함.
- 실습기관은 청소년 관련기관으로서의 청소년활동, 보호 및 복지 관련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기관 유형별 설립 목적을 반영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또한 현장실습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야 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청소년활동·보호·복지 등 청소년 관련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과 청소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청소년지도 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임. 이러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효과는 실습생과 양성기관의 실습담당교수,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의 역량 및 역할 수행에 따라 좌우됨.

- 양성기관은 실습기관 선정과 현장실습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습생에게 기관 현황 분석, 실습 활동 내용 기술 및 평가 등 학습활동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전 실습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기관의 정보 수집 및 분석 훈련 필요(해당 실습기관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기관 특성은 무엇인지 등 조사 분석)
 - 실습요구 분석(실습에 참여하기 전 실습과정 동안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좀 더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여 목록 작성)
 - 현장실습 계획작성(실습생으로서 자신이 왜 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실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점검)
- 양성기관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선정 시 기본 실습기관 자격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참고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해야 함.
 - 청소년 현장실습기관의 정확한 명칭 확인 및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허가·인가·등록된 기관인지를 확인
 - 실습기관은 청소년 현장실습기관으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실습기관의 비전과 미션, 목표를 확인
 - 실습기관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학습경험을 실습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습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기관 및 시설의 역량 및 역할 수행 능력 관련 평가자료 확인(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등)
 - 실습기관이 실습생들에게 현장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 등의 물리적인 여건과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
 - 실습기관이 실습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운영 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습지도가 기관의 주요 운영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실습기관 차원에서 실습지도에 대한 운영이 상시화, 공식화 되어 있을 때 실습생은 물론 실습지도자 역시 안정된 상황에서 실습지도에 몰입할 수 있음.
 - 실습기관이 실습생의 업무 수행(실습일지, 보고서, 프로그램 계획서)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기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담 등과 같은 특별한 실습 과제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공간이 제공되는지 확인





1. 실습기관 협약체결 전 확인사항

- 양성기관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습의뢰서 발급 등 현장실습 실습기관과의 업무 연락을 지원
- 양성기관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실습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및 평가 계획을 수립
 -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양성기관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해당 과목의 교육 경험이 5년 이상 인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 양성기관은 기관, 시설, 단체 등을 실습기관으로 선정하고 실습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음.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실습생의 보건·위생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그 밖에 실습생의 현장교육과 실습지도가 가능한 조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 양성기관은 선정된 실습기관의 협약 체결 전 실습운영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함.
 - 실습생의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과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이수)
 - 실습 일정과 내용의 사전협의
 - 시설의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확인 및 실습지도 담당자 확인
 - 실습에 필요한 물품, 준비해야 할 사항 확인
 - 추가 제출 서류 여부 확인
 - 실습일지, 실습평가서 등 현장실습 관련 서류 확인

2. 실습기관 협약체결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양성기관과 실습기관 간의 계약 및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양 기관 모두 실습 운영을 위한 신뢰 형성을 위해 실습 관련 서류들이 요구됨.
- 양성기관은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의 자격 조건 등을 확인하고, 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시작 전에 현장실습 교육 관련 협약을 체결해야 함. 단,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이 실습을 포함한 총괄적인 협약을 맺고, 현장실습 관련사항들은 협의과정에서 송수신한 문서로 협약을 갈음할 수 있음.
- 양성기관은 실습기관과 협약을 통해 실습과 관련한 각종 계약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습지도 과정 중 실습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돕도록 해야 함.
- 양성기관은 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의 전문성, 실습기관 실습환경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양성기관과 실습기관과의 협약체결과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약기간(생략하고 쌍방 중 한 곳이 협약 폐기를 원할 경우로 체결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실시기간(협약기간과 동일하게 생략할 수 있음) 및 장소
 -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 그 밖에 실습비 등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은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각각의 사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양성기관은 실습기관과 현장실습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 사항을 현장실습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3. 실습기관 협약체결 후 점검사항

- 양성기관은 실습기관과의 실습 협약체결 후 실습운영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및 서류를 점검해야 함.
- 양성기관의 실습 관련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장실습 보험가입 서류 확인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일지 및 실습평가서 확인
 - 실습담당교수 실습기관 방문일정 확인
 - 실습생의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실습생 인적사항 관련 서류 확인
 - 실습생의 실습신청서, 실습일지, 실습평가서 등 현장실습 관련 서류 구비 확인

III-5 현장실습생 평가 및 학점 인정

1. 현장실습 평가의 중요성

- 현장실습 평가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임.
- 체계적인 평가는 학생들의 실무 능력과 학업 성취도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여 학생의 이론적 지식과 실무 적용 능력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고, 개인별 강점과 개선 영역을 식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오승근 외, 2025).
- 또한 평가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피드백으로 다각도의 평가를 통해 현장에 진출하기 전 실습생의 강점 강화와 약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따라서 평가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얻은 실제 학습 성과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의 신뢰성을 높여 학생, 대학,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임.
- 대학 등 양성기관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습의뢰서 발급 등 현장실습 실습기관과의 업무 연락을 지원해야 함.
- 이에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실습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해야 함.

2. 평가의 목적과 원칙

- **평가의 목적:**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교육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습생의 전문성 및 실무역량, 청소년지도자로서의 태도와 가치 내재화를 점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피드백하여 향후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교육목표 달성 여부 확인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건 충족 여부 검증
 - 실습생의 향후 진로·현장 적응 능력 제고
 - 평가 결과를 학점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적 책무성 확보
- **평가의 3원칙:**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 다면성을 원칙으로 함(청소년5대학회, 2023; 박승곤, 김수진, 2024; 김윤나, 2012).
 - **공정성:** 평가 기준의 명확한 안내 및 일관된 적용
 - **객관성:** 실습기관과 대학 등 양성기관의 공동 평가
 - **다면성:** 실습지도자, 실습담당교수, 실습생 자기평가 등 다각적 시각 반영

3. 평가 절차 및 운영

- **실습 전:** 대학 등 양성기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평가 방법 및 항목, 점수배분에 대한 안내 - 1회 이상의 실습오리엔테이션(의무사항) 참석 여부 확인
- **실습 중:** 실습 지도자와 실습담당 교수에 의한 중간 점검(출석, 태도, 과제 수행, 실습일지 확인, 개선사항·강점 피드백 제공 등), 기관 최종 평가회(실습 종료 후 발표·토론 형식으로 종합평가 실시) - 기관에서의 130시간 이상의 실습기관 현장실습(의무사항) 이행 여부 및 내용 평가, 대학 등 양성기관의 경우 1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의 실습내용을 교육·토론·연구하는 실습세미나(1주당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대면방식을 1회 이상 포함: 의무 사항) 이행
- **실습 후:** 실습 기관의 평가서 제출, 실습생의 자기 평가, 1회 이상의 실습최종평가회(의무사항), 대학 등 양성기관에서 학점 부여 및 취득, 기록·보관(평가서와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

4. 주요 평가 영역

- 현장실습 평가 기준은 학생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으로, 주요 평가 영역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학생의 실무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 각 평가 영역은 상호 연결되어 학생의 총체적인 성장 잠재력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도록 함(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2016)
 - **실습 내용 평가:** 실습담당 교수는 1차적으로 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하면서 기관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기관 혹은 슈퍼바이저에게 권장
 - **업무 수행 능력 평가:** 실습생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지를 측정. 이는 전문적 지식의 실제 적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업무 완성도, 시간 관리 능력 등을 포함
 - **협업 능력 평가:** 조직 내 효과적인 소통과 팀워크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동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갈등 해결 능력, 팀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문적 태도 평가:** 실습생의 직업윤리, 책임감, 적극성, 학습 의지 등을 평가. 시간 엄수, 복장 및 예절, 업무에 대한 열정과 헌신, 피드백 수용 능력 등이 주요 평가 요소. 이는 단순한 기술적 능력을 넘어 진정한 전문가적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
 - **창의성 평가:** 실습생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측정함. 문제에 대한 독창적 접근, 새로운 해결 방안 제시, 기존 관행에 대한 건설적 제안 능력 등을 평가

5. 세부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에 대해서 성평등가족부(2025), 청소년5대학회(2023),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2016) 등을 참고하였음.
- **실습 내용 평가 항목**
 -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지도에 대한 이해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의 실제
 -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 업무 수행 능력 평가 항목

- 과제 완료 정확성: 주어진 업무를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행하는지 평가, 세부 요구사항 준수 여부, 오류 최소화, 결과물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측정
- 시간 관리 능력: 프로젝트 기한 준수, 효율적인 업무 진행, 우선순위 설정 능력을 평가. 업무의 신속성과 동시에 품질 유지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토
- 기술적 역량: 전공 관련 전문 지식의 실제 적용 능력, 새로운 도구와 기술에 대한 학습 속도, 실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접근 방식을 평가

● 협업 능력 평가 항목

- 의사소통 효과성: 팀원 및 상급자와의 명확하고 건설적인 소통 능력,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적극적인 정보 공유 태도를 평가
- 팀워크 기여도: 팀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의 기여, 동료 지원,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 갈등 상황에서의 중재 능력과 긍정적인 팀 분위기 조성 노력을 포함

● 전문적 태도 평가 항목

- 직업윤리: 성실성, 책임감, 업무에 대한 헌신도, 조직의 가치와 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
- 학습 민첩성: 피드백 수용 능력, 지속적인 자기계발 의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측정

● 창의성 평가 항목

- 혁신적 사고: 기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창의적 제안, 독창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 새로운 관점 제시 능력을 평가
- 전략적 사고: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잠재적 기회와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을 측정

6. 평가 주체와 역할

● 세부평가 항목에 대해서 청소년5대학회(2023)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2025)를 참고하였음.

● 양성기관과 실습 담당 교수

- 양성기관 행정 부서: 실습 의뢰 공문 발송, 실습기관과 실습담당 교수 점수 합산, 최종 학점 부여, 기록 보관 및 이력 등록
- 실습 담당 교수: 보다 학술적이고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실습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평가(개인의 전문성 성장 잠재력, 전공 지식의 실무 연계성, 학습 목표 달성 정도, 이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의 통합적 이해), 실습의 전과정을 총체적으로 평가, 학점 부여

●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

-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을 밀접하게 모니터링하며, 핵심 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실무 기술 적용 능력, 팀내 협업 및 소통 능력, 업무 프로세스 이해도, 문제 해결 접근 방식, 조직 문화에 대한 적응력 등)

● 실습생

- 실습 목표 달성 정도, 학습성과, 개인적 성장, 보완점 등을 기록하는 자기평가서 작성, 이를 통해 실습생 스스로 학습 경험을 성찰하고, 기관과 지도자가 개선할 점을 확인

● 세 주체 간의 정기적인 소통과 피드백 공유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메커니즘임. 실습전 과정에서부터

- 실습 중, 실습 종결 과정까지 다음과 같은 협력 방식을 통해 학생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실습담당교수의 기관방문을 통한 실습 환경 점검 및 실습내용 확인 파악(상호 관찰 결과 및 평가데이터 교환)
- 기관에서 실습일지 기록에 따른 슈퍼비전, 이에 대한 내용 실습담당 교수 평가
- 기관에서의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회 진행, 실습생 수업에서의 기관 평가 내용 실습담당교수에게 발표, 보고(학생의 성장 영역에 대한 공동 확인)
- 기관분석보고서 및 실습종결평가서 내용 확인을 통한 실습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개선

구분	역할	세부 내용
양성기관 행정부서	학점 부여	실습의뢰 공문 발송, 점수 합산, 최종 학점 부여, 기록 보관 및 이력 등록
양성기관 실습담당교수	2차 평가	실습일지, 기관에서 부여한 과제,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혹은 운영 계획서, 집단활동기록지, 종결평가서 보고서, 발표, 자기평가서 검토,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담당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 부여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1차 평가	실습태도, 참여도, 전문성, 안전 준수, 대인관계 등 현장 중심 평가
실습생	자기 평가	실습일지, 중간평가서, 종결평가서, 수업 발표자료, 소감문, 만족도, 적성 및 강점 등 성찰적 자기 평가

[표 III-6] 현장실습 평가 주체와 역할

* 출처: 성평등가족부(2025), 청소년5대학회(2023),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2025).

7. 평가 시기 및 빈도

● 사전 오리엔테이션 평가(실습 시작 전): 실습 시작 직전에 실시되는 것으로 참석 여부 및 간단한 퀴즈로 실습 오리엔테이션 내용에 대한 평가, 실습 시작 전 학생의 초기 기대치, 학습 목표, 그리고 전공 관련 기본 역량을 확인, 양성기관의 실습담당교수는 학생의 잠재력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사전에 식별하고, 필요시 기관과 소통

● 중간 평가(실습 중간 시점): 학생의 초기 성과와 적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 업무수행능력 평가
- 협업능력 평가
- 전문적 태도 평가
- 창의성 평가

● 최종 평가(실습 종료 시점): 현장실습 종료 직전에 실시되는 최종 평가는 가장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평가 단계.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 전체 실습 기간 동안의 성과 종합
- 초기 학습 목표 대비 달성도
- 전문성 및 실무 역량 성장 정도
- 향후 이력 개발을 위한 구체적 권고 사항

8. 평가 방법 및 항목, 배점

- 평가 방법: 현장실습의 수업 방법, 운영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학칙 등 관련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성평등가족부, 2025). 현장실습 평가는 학생의 실무 역량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한 다층적 접근 방식을 채택
 - 실습기관 지도자의 정기적인 실습일지 지도 의견
 - 실습기관 지도자의 종결 평가서
 - 학생의 수업 발표 자료 및 자기평가 보고서
 - 양성기관 실습담당교수의 관찰 및 피드백
 - (필요시) 실습 종료 후 심층 면담 결과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구성할 수 있음.

구분	세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출석 및 성실성	출석일수·시간, 지각·조퇴 여부, 준비성	20점	출석부 확인
전문 역량	프로그램 기획(창의성)·운영·평가 능력	25점	관찰, 보고서
대인관계 및 협업	청소년·동료·지도자와의 관계, 협업 능력	15점	관찰·피드백
윤리·안전 준수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안전지침 준수	15점	사고·위반 여부
자기성찰 및 발전 가능성	자기평가, 피드백 반영, 학습태도	15점	자기평가 보고서·면담
성과발표	최종 발표, 보고서 완성도	10점	발표·서면평가

[표 Ⅲ-7] 현장실습 평가 항목 및 배점 - 예시 1

*출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2016).

구분	세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수업 참여	출석(동영상강의, 화상수업, 오프수업 등)	12점	출석부 확인
실습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출석, 실습 OT 내용 퀴즈	10점	참여도 및 퀴즈 정답
수업 발표	수업 발표자료	13점	발표 준비 및 내용
실습 과제	실습일지, 기관분석보고서, 실습종결평가서, 기타과제물	30점	과제수행 정도, 완성도
실습기관 실습생 평가서	실습기관에서 부여한 실습생 평가 점수	30점	기관 실습생 평가 점수
자기평가서	자기평가, 피드백 반영, 학습태도	5점	자기평가 보고서·면담

[표 Ⅲ-8] 현장실습 평가 항목 및 배점 - 예시 2

*출처: 서울사이버대학교(2025).

9. 학점 인정 기준 및 최소 요구사항

- 학점 인정 기준

구분	기준
시간	130시간 이상, 출석률 90% 이상
성적	실습지도자 평가와 교수 평가를 합산하여 절대평가 점수로 인한 학점 부여 혹은 총점 60점 이상 Pass, 59점 이하 Fail(P/F)
필수 이수	오리엔테이션 1회, 실습세미나 5회 이상, 최종평가회 1회
과제 제출	실습일지(매일), 과제, 최종보고서 등
윤리 준수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없음, 안전규정 준수

[표 Ⅲ-9] 학점 인정 기준 내용

*출처: 성평등가족부(2025), 청소년5대학회(2023),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2025),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2016)를 참조하여 재구성.

- 학점 인정의 주요 평가 기준

- 실무 프로젝트 완수도
- 업무 성과의 질적 수준
- 전문성 및 학습 성장도
- 실습 기관에 대한 기여도

- 학점 인정 최소 요구사항

- 총 130시간 이상, 15일 이상
- 실습지도자 평가와 교수 평가를 합산(비율 자율 지정, 지도자 평가 30%+교수 평가 70% 혹은 지도자 평가 50%+교수 평가 50% 등)하여 절대평가 점수 부여, 혹은 총점 60점 이상 Pass, 59점 이하 Fail로 학점 취득
- 필수 이수: 실습오리엔테이션, 실습세미나(1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의 실습 내용을 교육·토론·연구,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대면방식을 1회 이상 포함), 실습최종평가회
- 과제 제출 예시: 출석부, 실습일지(매일),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과제 수행 내용, 기관 분석 보고서, 종결 보고서, 자기평가 보고서

- 학점 불인정 사항 및 처리 방안

- 안전사고, 윤리규정 위반 시 실습 중단
- 실습일지 및 평가서 허위 작성 시
- 학점 불인정 사항에 따른 대처를 위해 학교 실습 규정 마련(부정 실습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학점 인정 절차 및 관련 서류 제출

- 현장실습 학점 인정 절차는 학생의 실무 경험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학술적 성과로 인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학생들의 실제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식화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체계화, 학점 인정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
 - 현장실습 시작 전 학교에 실습 계획서 제출
 - 현장실습 기관 및 예상 업무 영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 실습 중 문서화 내용
 - 실습 일지 작성
 - 주요 프로젝트 및 업무 성과 기록 등
- 최종 서류 제출
 - 실습 지도자 평가서
 - 실습 결과물
- 심사 및 학점 인정 과정
 - 제출된 서류의 완전성 및 질적 수준 평가
 - 실습 지도자의 평가와 학생 자기 평가의 교차 검증
 - 최종 학점 확정 및 공식 인정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증빙 자료 및 성과물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제출 마감일 엄수하여 제본 제출



III-6 양성기관 FAQ

FAQ

1. 현장실습 운영 기본 구조

Q1. 현장실습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A1.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양성기관(대학 등)등이 전체 행정총괄 및 실습의뢰서 발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즉, 대학은 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실습요청·행정관리를 맡고, 실습담당교수는 교과과정 운영 및 평가를 총괄합니다.

Q2. 현장실습 과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까?

A2. 실습은 청소년지도사의 기본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4개 영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 ① 청소년활동 및 지도 이해
- ②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 실습
- ③ 청소년기관의 이해 및 현장경험
- ④ 청소년지도사의 윤리와 가치 이해

2. 현장실습 교육과정 구성 요소

Q3. 실습시간과 수업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A3.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실습오리엔테이션	1회 이상 실시	출석부 확인
기관 현장실습	130시간 이상	실습기관 내에서 수행
실습세미나	1회당 2시간 이상 × 5회 이상	1주 1회 초과 불가, 원격수업 가능하나 1회 이상 대면 필수
실습 최종평가회	1회 이상	실습 성과 공유 및 종합평가

Q4. '실습세미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4. 실습세미나는 실습내용을 공유·토론·분석·연구하는 수업입니다. 주로 실습 중간 점검, 문제해결, 사례분석 등을 다루며 1주 1회, 총 5회 이상, 1회 2시간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3. 평가 및 지도 체계

Q5. 현장실습 평가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A5. 평가권자는 실습담당교수입니다. 단,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교수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성적을 부여합니다(제2조 제5항).

Q6. 실습담당교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A6. 교수는 실습기관의 지도자와 협력하여 실습이 교육목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습 운영 총괄(계획서 확인, 일정 관리)
- 실습지도자와의 협력 및 조정
- 실습세미나 운영
- 최종 평가 및 피드백 제공

4. 협약 및 기관 관리

Q7. 실습기관과의 협약은 언제,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A7. 제3조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 시작 전 또는 시작일까지 반드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협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실습 기간 및 장소
- 평가 관련 사항
- 보건·위생 및 산업재해 예방
- 실습비 등 운영 관련 사항

※ 협약은 필요 시 변경 또는 해지가 가능하며, 체결·변경 시 운영기관(성평등가족부 지정)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이 실습을 포함한 총괄적인 협약을 맺고, 현장 실습 관련사항들은 협의과정에서 송수신한 문서로 협약을 갈음할 수 있음.

Q8. 실습기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8. 대학은 협약 체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 실습지도자의 전문성
- 실습환경의 안전성

이는 학생 보호와 실습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5. 실습기관 선정 및 협약

Q9. 어떤 기관이 현장실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A9. 고시에 따라 다음 두 범주의 기관이 가능합니다.

- 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기관
 - ②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사회복지·교육기관 등
- 즉, 청소년 및 복지 관련 공공·민간기관으로서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면 가능합니다. 필요할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정에 따라 가능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2년 이상 현장 경험) 소지자가 없으면 실습이 불가능합니다.

Q10. 실습기관을 선정할 때 대학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10. 제6조 제3항에 따라 대학은 다음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운영 중인지
- 청소년 관련 실습기관 요건을 갖추었는지
- 현장교육과 실습지도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이 확인을 위해 대학은 관련 자료(기관등록증, 프로그램 안내서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1.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과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11. 아니요.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미 체결된 협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실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6. 담당교수의 자격과 학생 이수요건

Q12. 실습담당교수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A12. 제4조에 따라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요건
① 학계 전문가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담당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교육경력 5년 이상자 ※ 박사 3년, 석사 2년으로 인정 가능
② 현장 전문가	대학·전문대학 졸업 + 청소년기관 5년 이상 경력의 1급 청소년지도사

Q13. 실습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선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나요?

A13. 네. 제5조에 따라, 기본과목으로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와 추가 과목으로 '청소년이 교과목 이름에 포함된 과목 등 총 4개 과목을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편입학생이 해당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7. 실습시간 및 운영기준

Q14. 실습시간 운영기준은 무엇인가요?

A14. 제7조에 따라 실습은 다음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준	비고
최소기간	15일 이상, 총 130시간 이상
1일 실습시간	4~8시간(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초과 불가
1주 최대시간	40시간 이내, 필요시 5시간 추가 가능(학생 동의 필수)
휴게시간	1일 1시간 이상 반드시 보장
야간실습	불가 (22시~익일 6시) 단, 교육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협의 가능

Q15. 실습지도자 배치 기준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15. 제8조~제9조에 따라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지도사+2년 이상 경력자(자격 취득 후 경력만 인정)
- 배치: 상근자 1명 이상, 동시에 지도하는 학생 10명 이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실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8. 실습비 관련

Q16. 실습기관이 실습비를 받을 수 있나요?

A16. 제10조에 따라 실습기관은 실습지도나 관리 목적의 실습비를 학생 또는 대학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지급방법에 대해서 대학은 성평등가족부 지정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9. 실습생 관리와 요건

Q17. 현장실습 대상 학년이나 학기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A17.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학의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3~4학년 또는 해당 전공 교과목 선이수자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Q18. 실습생의 기본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A18. 대학은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수업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철저히 지도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 과목 수업 안내
- 실습기관 및 실습 운영에 대한 소개
- 현장실습 준비 및 유의 사항 점검 등

10. 실습생 권리 보장

Q19. 실습생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해야 하나요?

A19.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실습생은 다음 권리를 가집니다.

- 지도를 받을 권리 (교육·코칭·피드백 제공)
-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고의·중과실 제외)
- 운영계획과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시정 요청할 권리

따라서 대학은 고충 접수 및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12. 학생 보호 및 대응

Q20. 안전교육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A20.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 산업안전 및 위생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재난 및 비상상황 대응교육

을 실시해야 합니다.

Q21. 실습 중 사고나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대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1.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습생이 문제를 신고하면 대학은 즉시 사실 확인하여 기관에 시정 요구 또는 실습 중단을 명령하고 학생 복교 조치 및 후속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에서 학생 보호 의무로 매우 중요합니다.

Q22. 실습기관이 자체 평가결과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A22.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평가결과로 징계·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대학은 이를 감시하고 필요시 평가무효 및 재평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행정·운영 관련 사항

Q23. 실습 운영 세부사항은 어디에 명시해야 하나요?

A23. 제2조 제6항에 따라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실습시간 인정 기준, 보고서 양식, 세미나 운영 지침 등



부록

양성기관용 서식 모음



※ 양식은 예시용이며, 상황에 맞게 수정·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양성기관용 1-1]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 실 습 명 :
2. 과 목 명 :
3. 담당교수 :
4. 실습인원 :
5. 실습오리엔테이션(1회 이상)
 - (1) 개요 :
 - (2) 일시 :
 - (3) 내용 :
6.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 (1) 개요 :
 - (2) 실습일정 :
 - (3) 실습장소 :
 - (4) 실습내용 :
 - (5) 현장방문 :
 - (6) 실습기관 평가 배점 :
7. 실습세미나(5회 이상)
 - (1) 개요 :
 - (2) 일시 :
 - (3) 내용 :
8. 실습최종평가회(1회 이상)
 - (1) 개요 :
 - (2) 일시 :
 - (3) 내용 :
9. 실습평가 :
10. 실습경비 :

현장실습 협약서

○○대학교(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와 ○○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은 “양성기관” 소속 학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이하 “실습”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실습의 구분 및 기간)

- ① 실습은 시기에 따라 학기제(정규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최소 15일 13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제2조 (“양성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 ①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계획 및 일정 수립 후 “실습기관”과 실습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 ②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모집인원, 실습기간 등의 내용을 취합, 검토 후 실습생 지원 및 모집에 적극 활용한다.
- ③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의 실습생 선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을 교육한다.
- ④ “양성기관”은 선발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 ⑤ “양성기관”은 실습 중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⑥ “양성기관”은 “양성기관”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과 실습생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실습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실시한다.

제3조 (“실습기관”의 실습 운영)

- ①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전문지식 함양과 경험습득을 위하여 제1조에 따른 학기제 또는 계절제 현장실습 기간에 맞는 이론 및 실습교육 내용을 수립한다.
- ②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습생에 대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4조 (현장실습 시간 및 장소)

- ① 실습 시간은 “실습기관”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습시간의 연장은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 간 최대 5시간까지 가능하다. 실습기관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현장실습은 야간시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습 장소는 “실습기관”의 소재지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하고, 실습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고려한다.

제5조 (실습비)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실습비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실습 운영에 사용한다.

제6조 (지도교수 지정)

“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은 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실습생 지도를 위하여 실습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양성기관”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실습기관”은 “실습기관”의 필요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실습기관” 또는 “양성기관”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기타)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성기관”	“실습기관”
기관명:	기관명:
학과장: (인)	기관장: (인)

현장실습 계약서

제1조 (목적)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습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2000.00.00. ~ 2000.00.00.으로 한다. 현장실습은 갑의 청소년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조 (실습방법 및 내용) 실습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에 대한 이해
2.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관리의 실제
3.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제4조 (실습기관의 의무) 실습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를 제공한다.
3. 현장실습지도자의 자격과 지도능력을 갖춘 실습지도자를 배치한다.
4.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가 지도하는 실습생은 10명을 넘지 않도록 배치한다.
5.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 (현장실습생 권리) 현장실습생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3.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6조 (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현장실습의 교육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2. 업무 상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실습과정에서 사용하게 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1. 총 실습시간은 ___시간으로 한다.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시간의 연장은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까지 가능하다.
3.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4. 현장실습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

실습기관은 양성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양성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현장실습계약의 변경과 해지

현장실습 중단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이 있을 시 현장실습을 중단할 수 있고, 중단 시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중단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10조 (실습비용)

실습비용은 _____ 원으로 하며, 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이 협의 하에 실습 이전 또는 이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준용)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성평등가족부 지침,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대표자	인
현장실습생		성명	인
양성기관명	000대학 000학과	학과장	인

○○대학교

수신자
(경유)

제목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수요조사 요청

1.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다음 항목에 대한 작성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가. 실습가능 여부
- 나. 실습기간 및 수용인원
- 다. 담당자 연락처
- 라. 실습내용
- 마. 실습신청방법
- 바. 실습관련 의견

붙임 현장실습 수요조사표 1부. 끝.

○○대학교 ○○학과

실습조교 _____ 학과장 _____
 협조자 _____
 시행 (. . .) 접수 ()
 우 000-000 _____ http://www. _____
 전화 _____ 전송 _____ 공개 _____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수요 조사표

시설명	실습담당자				
	실습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연락처	전화		
H.P					
Fax					
mail					
실습기간 및 수용인원	기수	실습기간	실습시간	실습비용	수용인원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 ①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가 지도하는 실습생은 1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실습내용 (실습개요, 진행과정 실습일정 등)					
실습신청 방법					
실습관련 의견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대학교

수신자
(경유)

제목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의뢰

1. 귀 기관의 청소년육성과 현장교육에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교 청소년지도학과 학생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습교육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학생 명: (연락처:)
- 나. 실습기간: 2000.00.00. ~ 2000.00.00. (총 130시간 이상, 15일 이상)
- 다. 실습지도교수: (연락처:)
- 라. 실습담당조교: (연락처:)

- 붙임 1. 현장실습 신청서 1부
2. 현장실습생 자기소개서 1부. 끝.

○○대학교 ○○학과

실습조교 학과장

협조자

시행 (. . .) 접수 ()

우 000-000 http://www.

전화 전송 공개

현장실습 신청서

1. 실습생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소속		학과/전공	학년/학기
현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E-Mail			

2. 실습 의뢰내용

실습 부서	
실습 분야	
실습 기간	
실습 내용	

* 상기 내용으로 귀 기관에 실습신청을 의뢰하며 실습생 자기소개서를 동봉합니다.

실습신청학생 : (인)

실습지도교수 : (인)

현장실습생 자기소개서

1. 인적사항

(사진)	성명		생년월일	
	소속	대학교(원)	전공	학년(학기)
	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E-Mail			

2. 이수 전공과목

교과목명	이수완료	현재이수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기타(청소년이 포함된 교과목 1과목)		

3. 경력

구분(취업, 실습, 봉사)	기관	기간	내용

4. 청소년관련학과를 전공하게 된 동기

5. 실습 기관 선택 이유

6.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7. 실습을 마친 후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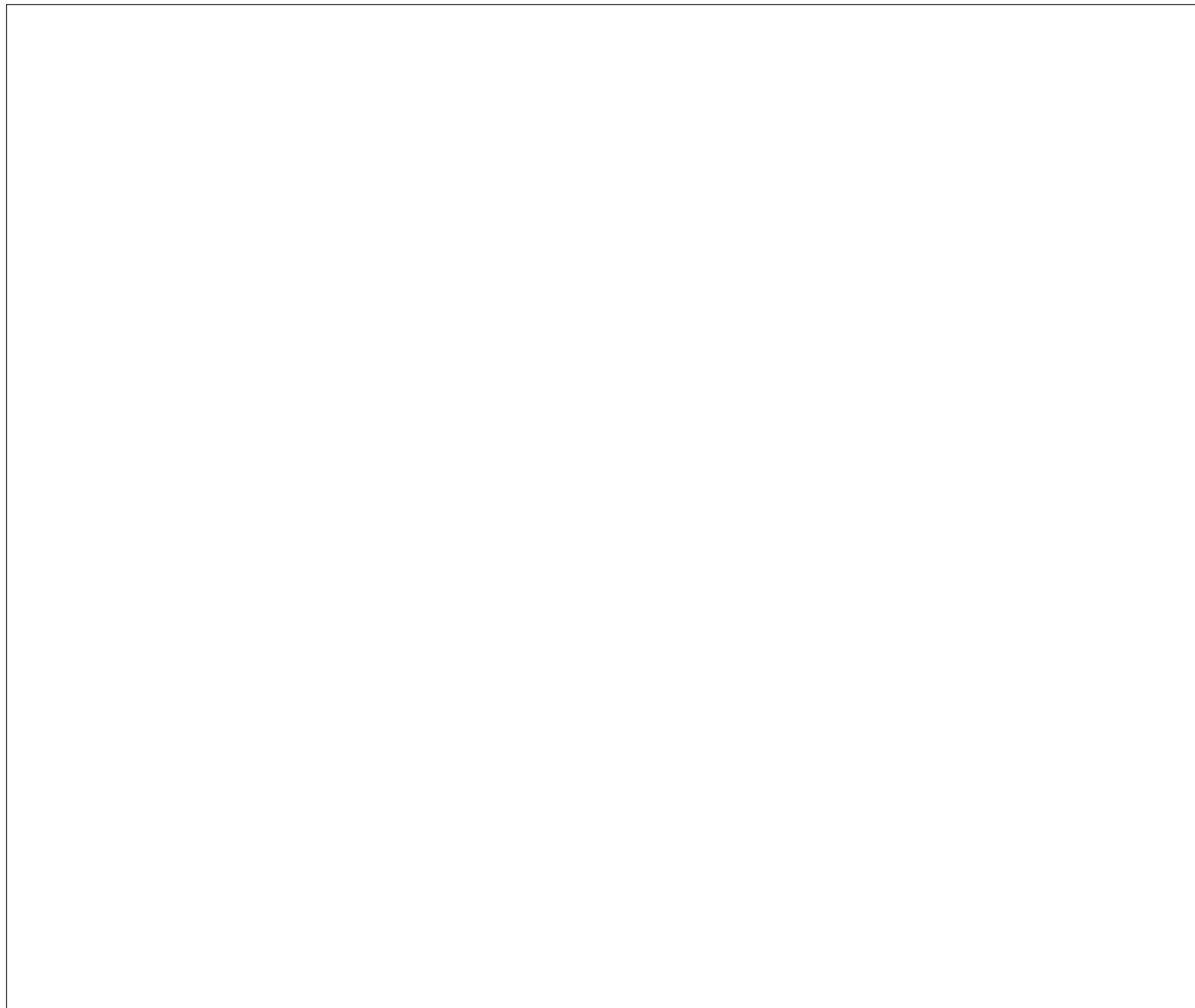
8.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신의 강점과 약점

1) 청소년지도 관련 지식 및 기술의 측면	2) 개인적인 특성 측면

9. 취미 및 특기

10.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및 실습지도교수에게 바라는 점

현장실습 지도사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과명	
실습기관명		기관관리번호	
실습지도자		자격번호	
실습기간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00일)		
실습시간			

실습기관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기관과 지도자에 의해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이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인) / 실습 기관: (직인)

교육기관명		기관관리번호	
학과명		실습교수	
오리엔테이션	총 00회	실습최종평가회	총 00회
실습 세미나 (대면)	총 00회	실습 세미나 (비대면)	총 00회

양성기관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담당교수에 의해 현장실습 과목을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이 위와 같이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 실습 담당교수: (인) / 학과장: (직인)

PART IV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 IV-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 IV-2. 학생 참여 신청과 준비사항
- IV-3.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리와 의무
- IV-4.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
- IV-5. 현장실습생의 자기 평가
- IV-6. 현장실습생 FAQ
- IV-7. |부록| 현장실습생용 서식 모음

IV-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개념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청소년 관련 이론과 기술을 실제 청소년기관 현장에 적용하여 전문성을 기르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임. 이는 단순히 기관에서 경험을 쌓는 수준을 넘어, 이론과 실제의 통합적 이해, 직무 적응력 향상, 윤리의식 함양을 목표로 함.
- 즉,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 학생이 대학에서 습득한 청소년활동·상담·프로그램 운영·행정 관리 등의 지식을 실제 기관의 프로그램과 업무에 적용해봄으로써, 현장에서의 전문적 판단력과 실천 역량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2. 현장실습의 목표와 의의

- **지식과 기술의 실제 적용**
- 실습은 교과서로 배운 청소년 이해, 프로그램 기획, 상담 기법 등을 실제 청소년 활동과 서비스 과정에서 직접 관찰하고 수행해보는 기회임. 이를 통해 학생은 이론이 어떻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실현되는지를 체득하게 됨.
- **직무 역량과 태도의 습득**
- 실습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행사 지원, 상담 보조, 행정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실습생은 직무에 필요한 기술·기획력·책임감·협업 태도를 배우게 됨. 특히 보고·기획·기록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기본 직무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함.
- **현장과 기관에 대한 이해**
- 청소년기관은 각각의 설립 근거 법령과 목적에 따라 기능이 다름. 예를 들어 수련관은 활동 중심, 상담복지센터는 심리·상담 중심, 학교밖청소년센터는 복귀·자립 중심임. 실습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경험하고, 기관의 운영 체계와 조직 문화, 청소년 대상 사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음.
- **청소년정책과 법제의 이해**
- 청소년기관의 사업과 프로그램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법령에 근거함. 실습생은 현장에서 이러한 법·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필요성과 한계를 스스로 탐구하고 비판적 사고와 제도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음.
-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정체감 형성**
- 실습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자아 형성 과정임. 실습 중 지도자·선배·동료 실습생과의 협력,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은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가'를 고민하게 하고 직업 정체감을 강화시킴.
- **진로 탐색과 자기 성찰**
- 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임. 실습 과정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며 스스로의 적성·능력·한계를 돌아보고, 청소년분야가 자신의 진로로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 과정은 자기인식·성찰·진로결정의 중요한 계기가 됨.

3. 실습기관의 자격과 운영 기준

- **실습기관의 자격 요건**
-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만 현장실습이 가능함.
 - ▶ 「청소년기본법」기관: 청소년단체, 한국·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 ▶ 「청소년활동진흥법」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 ▶ 「청소년복지지원법」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이주배경청소년센터 등
 - ▶ 「학교밖청소년지원법」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기타: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대안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학생수련원, 해양수련원 등이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실습이 가능
- **실습지도자 요건 및 배치**
- 자격: ①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② 2급 자격증 + 자격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 배치: 상근자 1명 이상 필수, 동일 시간대 지도 인원은 10명 이내 → 지도자가 없는 기관에서는 실습 불가
- **운영 시간 기준**
- 총 130시간 이상, 15일 이상 실습
-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일, 야간(22~06시) 금지
- 1일 4~8시간, 주 40시간 이내
- 필요시 학생 동의 하에 주 5시간 한도 연장 가능

4. 실습 교과과정의 구성

- 4가지로 구성되며 이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건에 해당하며, 누락 시 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 실습오리엔테이션: 실습 전 1회 이상 실시 (안전교육·윤리교육 포함)
 - 현장실습: 실습기관에서 130시간 이상 수행
 - 실습세미나: 1회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 (주 1회 초과 불가, 원격시 1회 이상 대면 필수)
 - 최종평가회: 실습 종료 후 1회 이상 (보고서 발표·피드백 공유)

5. 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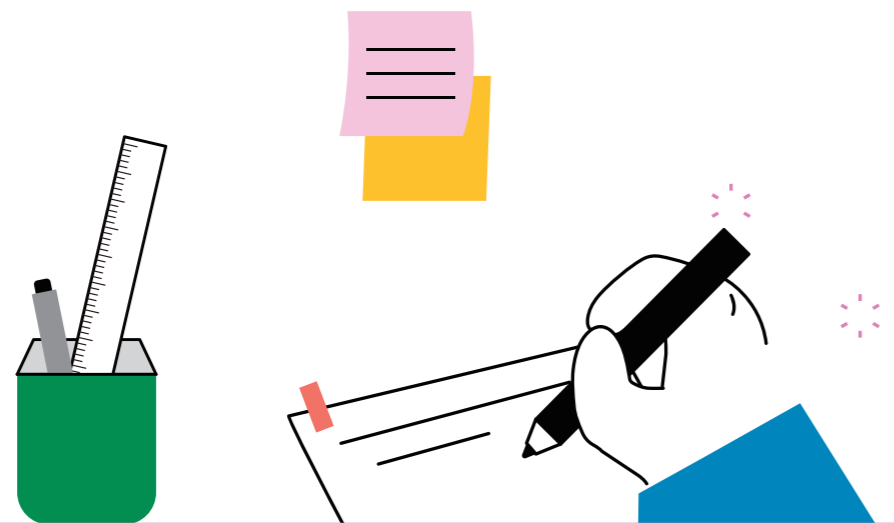
- **실습생의 권리**
- 실습교육 및 지도를 받을 권리
-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 운영 기준 또는 계획과 다른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 조치를 받을 권리
- **실습생의 의무**
- 학교 및 기관의 실습 규정과 절차 준수
- 기관의 안전관리 기준 및 윤리 강령 준수
- 실습 중 알게 된 기관 정보와 개인정보 비밀 유지
- 실습생은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함.

6. 실습생에 대한 보호

- 학교와 기관은 실습 전 안전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 실습기관은 자체 평가를 근거로 실습생에게 징계나 불이익을 줄 수 없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함.
 -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강요, 실습시간·기간 기준 위반, 안전·위생·성희롱·재해 문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등이며 학교는 사실 확인 후 시정 요구나 실습 중단·복교 조치를 취해야 함.

7. 평가 및 보고

- 평가 주체는 실습기관 지도자와 담당교수이며 점수 부여는 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담당교수가 최종 점수 부여, 평가 요소는 출석, 태도, 협력, 실습참여도, 보고서 충실도 등임.
- 학생은 평가와 관련 실습일지, 보고서, 포트폴리오, 최종발표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IV-2 학생 참여 신청과 준비사항

1. 현장실습 참여조건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실습생')은 현장실습에 참여하기 전에 선수과목을 이수한 상태에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참여 신청하고, 실습기관의 수락을 받아야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음.
 - 선수과목: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과목과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2. 현장실습 사전 준비단계 진행절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사전 준비단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 [1단계] 실습공고 및 실습기관 확인 (대학 → 실습생 → 실습기관)
 - 대학 등 양성기관에서는 현장실습 과목을 실시하기에 앞서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협약을 맺어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실습생은 대학 등에서 제공한 현장실습 협약 기관과 접촉해 실습 여부를 타진하거나 실습담당교수와 더불어 실습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또는 학생 본인이 스스로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현장실습 시스템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선정된 기관 현황을 확인하여 실습기관을 탐색할 수 있으며, 실습기관의 일정과 실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음.
 - 시·도 단위에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을 통해서도 지역별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음.
- [2단계] 실습지원 (실습생 → 실습기관, 대학)
 - 실습기관의 실습 신청 기간에 맞춰 기관에 실습 신청서(기관양식) 제출
 - 이와 동시에 학과사무실에 실습 신청서(학교 양식) 제출
 - 실습 신청 기간은 학교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제시된 실습 신청 마감일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3단계] 실습생 선발·확정 및 심사결과 통보 (실습기관 → 실습생)
 - 실습 신청서를 접수한 실습기관에서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실습가능 여부를 최종 확정
 -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 선발 여부를 확인하여 실습지원자에게 통보
- [4단계] 최종 선정결과 학과사무실 통보 (실습생 → 대학)
 - 실습생으로 최종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실습기관과 실습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학과사무실에 알려야 함.
- [5단계] 실습의뢰공문 발송 (대학 → 실습기관)
 - 학과사무실에서는 실습담당교수 승인 후, 실습의뢰공문과 실습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기관의 실습지도자에게 발송하여야 함.
 - 실습운영에 필요한 서류나 기타 관련 자료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발송하기 어려울 경우 이메일로도 발송이 가능함.

● [6단계] 실습생 최종 확정 (실습기관 → 양성기관)

- 양성기관으로부터 실습의뢰공문을 접수하게 되면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으로 최종 확정하게 됨.
- 그리고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수락서를 학교에 발송함.

● [7단계] 실습교육기관 확정 및 실습생 사전교육 (양성기관 → 실습생)

- 양성기관으로부터 실습 수락서를 접수하게 되면 학과에서는 실습교육기관으로 최종 확정함.
- 실습교육기관이 최종 확정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학과에서는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8단계]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결과서 송부 (실습생 → 실습기관)

- 실습생 사전교육을 받은 후 실습생은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결과서를 발급받아 실습기관에 송부하여야 함.
- 경찰서 조회시 대표자나 제 3자가 위임을 받아 경찰서에 직접 방문이나 인터넷 조회로 가능함.

● [9단계] 실습생 계약서, 서약서 작성 (실습생, 실습기관)

- 8단계까지의 단계를 모두 마치게 되면 실습생은 실습기관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계약서를 작성
- 실습생은 실습계약서와 함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10단계] 수강신청 (실습생)

- 실습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입력
-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학과사무실에 실습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신청되는 것이 아님. 수강신청은 본인이 반드시 현장실습 과목을 신청해야만 함.
- 기타 실습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와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특히 실습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학과사무실에 반드시 알려야 함.

3. 실습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 실습생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실습이 가능한 기관의 조건을 충족한 기관 중에서 본인이 알아보거나 양성기관에서 추천한 곳을 선정하고 실습기관의 협조하에 양성기관과의 협약 체결로 결정됨.
- 대학 등 양성기관에서는 현장실습기관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한 기관을 선정하여 MOU와 같은 협약을 맺고 관리하는 기관들의 리스트를 학과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음. 따라서 실습생은 일차적으로 학과 홈페이지나 학과게시판과 같은 곳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지된 협약기관을 실습기관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하지만 실습생이 거주하는 지역과의 이동 거리, 통근 시간, 실습 가능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습이 가능한 기관이 없을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고시에 실습기관의 자격요건을 충족(즉, 아래의 자격요건1과 자격요건 2를 모두 충족)할 경우 실습신청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1.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지부·지회를 말한다.)
2.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의 (본부를 말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14.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1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17.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8.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19. 「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0.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2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2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생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Wee) 스쿨, 위(Wee) 센터, 위(Wee) 클래스
24.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6.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표 IV-1] 현장실습기관의 자격요건

* 출처: 성평등가족부(2025).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호).

-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2: 실습기관에는 다음과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함.

실습지도자 자격 요건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를 한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현장 업무 경력이 2년(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 이상인 사람

- ※ 실습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능함
- ※ 실습신청을 한 이후의 실습 기간 및 실습기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 다만, 실습기관 휴관, 폐관 등 실습기관 사유에 의해 실습자의 실습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실습생은 실습담당교수의 확인이 첨부된 사유서를 학과에 제출하고 학과는 실습 기간 및 실습기관 변경을 허용할 수 있음

● 기타 실습기관 선정시 고려사항

- 현장실습 실습기관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고, 청소년관련기관으로 허가·인가·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해야 함
- 실습기관으로서의 적절성은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만 파악하지 않아야 하고, 현장 방문이나 기타 자세한 정보를 통하여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함.
- 가급적 자신이 배우고 싶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영역의 기관을 선정하도록 함.
- 선정된 실습기관이 자신의 성향과 맞는지 확인해야 함. 예를 들어, 종교나 이념적인 측면에서 기관이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면 중도에 실습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실습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의 업무 수행(실습일지, 보고서, 프로그램 계획서)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기자재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 등과 같은 특별한 실습 과제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공간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자격 유무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청소년지도사 배치 및 인력 확보 수준으로,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의 교육과 지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며, 실습생에게 기관 업무를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어야 함.
- 실습기관이 집에서 통근하기에 적당한지를 고려해야 함.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동시간이 너무 많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4. 현장실습 신청단계에서 준비사항

- 현장실습 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전 준비 없이 현장실습을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은 물론,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실습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확신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성공적인 실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
- 첫째, 실습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자신의 관심영역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청소년지도의 영역 중에서도 자신이 어떤 영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습을 마친 후 어떤 기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이와 관련된 기관으로 선정해야 함.
- 둘째, 자신의 관심 영역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이와 관련있는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해당 기관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기관 특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이와 같이 관심 영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는 작업은 실습과 취업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서 중요함.
- 셋째,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습 과정 동안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좀 더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여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현장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으로 참여하게 될 현장실습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기대, 계획을 정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함.
 - 이러한 작업은 실습생으로서 자신이 왜 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실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임.

IV-3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리와 의무



들어가며

-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현장실습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임.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단순한 견학자가 아니라,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기르는 과정에 참여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학생들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청소년기관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리

1. 학습권 보장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③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3.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 실습생의 학습권은 단순히 실습 기회를 부여받는 차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적 경험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함. 따라서 대학과 실습기관, 그리고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의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학습자료 및 정보 제공의 보장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5조에 제시되어 있음.
 - 대학의 역할: 실습생이 현장실습에 앞서 청소년 관련 법·제도, 기관 운영 구조,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습생은 사전 학습을 바탕으로 실습 현장에 적응할 수 있음.
 - 실습기관의 역할: 기관은 기관 소개서, 연간 운영계획, 프로그램 매뉴얼, 안전지침 등 실습 수행에 필요한 내부 자료를 실습생에게 공개하고 제공해야 함.
 - 의의: 실습생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실습에 참여함으로써 단순 참여자가 아닌 학습자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2) 현장경험 및 참여 기회의 보장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5조, 제6조, 제8조-제9조에 제시되어 있음.
 -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실습기관은 청소년 상담, 동아리 운영,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실습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특정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학습권 침해에 해당함.
 - 실제적 경험 강조: 단순 참관 위주의 실습이 아니라, 기획·실행·평가 등 단계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의의: 청소년지도 현장의 다양한 측면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실습생은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는 학습 효과를 얻게 됨.

(3) 지도와 피드백의 체계적 제공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지도자의 역할: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이 수행한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함.
 - 양성기관 실습담당교수와의 연계: 실습지도자와 양성기관의 실습담당교수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습생의 학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함.
 - 의의: 지도와 피드백은 실습생이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학습 과정임.

(4) 학습권 보장의 윤리적·법적 의미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 제1호, 제8조 제3항, 제18조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생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므로, 단순한 노동력 제공자가 아닌 학습권의 주체임.
 -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학습 기회를 제한하거나, 단순 업무 대체 인력으로 활용해서는 안 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제도의 취지는 미래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확보에 있으며, 학습권 보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칙임.

2. 안전한 실습 환경

- 실습생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가짐. 이는 실습생이 전문적 역량을 습득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 속에서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임. 따라서 대학과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신체적 안전 보장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명시되어 있음.
 - 안전한 시설·장비 확보: 실습기관은 청소년활동에 사용되는 시설과 장비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함. 특히 소방시설, 응급처치 장비, 안전관리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비치되어야 함.
 - 안전교육 실시: 실습 시작 시점에 기관은 화재, 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안전수칙, 활동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위험 업무 제한: 실습생에게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나 신체적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예: 고소 작업, 위험 장비 단독 사용 등)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모든 활동은 지도자의 감독하에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함.

(2) 정신적·정서적 안전 보장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제시되어 있음.
 - 차별과 괴롭힘 금지: 실습생은 성별, 연령, 학력,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기관 구성원이나 청소년으로부터 언어적·심리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존중받는 실습 환경: 실습생은 기관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부당한 대우나 무시, 비인격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업무 부담의 적정성: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과도한 업무나 기관 운영을 위한 단순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실습생의 학습 목적과 수준에 맞는 업무를 배분해야 한다.

(3)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제시되어 있음.
 - 성희롱 및 폭력 예방: 실습생은 실습 과정에서 성희롱,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관은 예방 교육 및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신고 및 보호 체계 구축: 실습생이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할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절차와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신고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함.
 - 대학과의 연계 보호: 대학은 실습생의 안전 문제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함.

(4) 안전권 보장의 교육적 의미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생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에서 실습할 때, 학습에 몰입할 수 있으며 전문적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청소년지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안전관리 및 인권 보호의 원칙은, 실습생이 향후 청소년지도사로 활동할 때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기본 윤리이자 전문성의 핵심임.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은 단순히 보호 차원을 넘어, 실습생이 “안전을 고려하는 청소년지도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과정임.

3. 공정한 평가와 피드백

- 실습생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정에서 자신의 활동과 학습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받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평가는 단순한 성적 산출의 과정이 아니라 실습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과정이며, 피드백은 실습생이 전문적 역량을 성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 도구임.

(1) 공정한 평가 보장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7조에 제시되어 있음.
 - 평가 기준의 명확화: 대학과 실습기관은 실습생 평가의 기준과 항목(출석, 참여도, 과제 수행, 전문역량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차별 없는 평가: 실습생의 성별, 학력, 출신,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모든 실습생은 동등한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함.
 - 다면적 평가: 실습생의 활동은 단순한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기획-참여-성찰)과 태도(책임성, 협력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2) 체계적인 피드백 제공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8조 제3항에 제시되어 있음.
- 정기적 피드백: 실습지도자는 주 단위 혹은 주요 활동 종료 후 실습생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며, 단순 지적이 아닌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함.
- 개별 맞춤 피드백: 실습생의 특성과 학습 수준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여,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 피드백 기록 관리: 피드백은 구두로 그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 기록으로 남겨 실습생이 추후 학습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대학과 실습기관의 역할

- 대학의 역할: 대학은 실습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평가 자료를 종합 검토하고, 필요시 실습생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학습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실습기관의 역할: 기관은 실습생의 활동 과정에 대한 관찰 기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평가 결과를 실습생에게 투명하게 공유해야 함.
- 공동 책임: 대학과 실습기관은 실습생 평가와 피드백을 단순히 행정 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실습생의 전문성 성장을 위한 공동 책임으로 인식해야 함.

(4) 공정한 평가와 피드백의 교육적 의미

- 실습생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학습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됨.
- 피드백 과정은 실습생이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청소년지도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학습 기제가 됨.
- 공정한 평가와 성실한 피드백은 실습생이 향후 청소년지도 현장에서 객관적 평가자이자 성장을 돕는 피드백 제공자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훈련이 됨.

4. 상담 및 지도권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생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정에서 전문적 성장을 위한 상담과 지도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실습은 단순히 경험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학습과 성찰의 과정임. 따라서 실습기관과 대학은 실습생이 학습적·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도 체계를 갖추어야 함.

(1) 상담 및 지도 제공의 기본 원칙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5조에 제시되어 있음.
- 정기적 상담 보장: 실습생은 실습지도자로부터 주기적으로 상담 및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취 수준을 점검해야 함.
- 개별 맞춤 지도: 실습생의 수준, 전공 역량, 진로 방향에 따라 차별화된 지도와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비밀보장 원칙: 실습생이 상담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고민이나 어려움은 보호되어야 하며,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됨.

(2) 실습기관의 역할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8조에 제시되어 있음.
- 전문적 멘토링 제공: 실습지도자는 청소년지도 현장에서의 경험, 직무 역량,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실습생에게 실제적 조언과 지도를 제공해야 함.
- 학습 지원 지도: 실습생이 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 지도자는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안내하고 실습생이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 심리·정서적 지원: 실습 중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도자는 실습생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함.

(3) 대학 등 양성기관의 역할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0조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담당교수 상담 체계: 대학 등 양성기관의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기관에서의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진로·학업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기관과의 연계 지도: 양성기관은 실습기관 지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습생이 일관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위기 개입: 실습생이 기관에서 상담이나 지도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양성기관은 즉시 개입해 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4) 상담 및 지도권의 교육적 의미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7조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생은 상담과 지도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성장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음.
- 상담 및 지도는 실습생이 단순한 현장경험을 넘어, 전문직으로서의 자기 성찰과 진로 탐색을 가능하게 함.
- 상담 및 지도권 보장은 실습생이 향후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을 상담·지도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실질적 훈련 과정이 됨.

5. 자율성과 진로탐색권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5조, 제8조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생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권리를 가짐. 이는 실습생이 단순히 기관의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장 경로를 설계하는 학습자임을 보장하는 것임. 따라서 대학과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자율성을 발휘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교육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

(1) 자율성 보장의 원칙

- 의사 표현의 자유: 실습생은 실습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권리가 있으며, 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함.
- 자율적 참여 기회: 실습생은 프로그램 기획·운영·평가 등에서 스스로 역할을 맡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과도하게 통제된 환경은 지양해야 함.
- 실습생의 선택권 보장: 실습생은 실습 목표와 개인적 관심 분야에 따라 특정 활동에 더 집중하거나 탐색할 권리가 있음.

(2) 진로탐색권의 보장

- 다양한 직무 경험: 실습기관은 상담, 행정, 활동 기획, 지역 연계 등 다양한 직무 영역에 실습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해야 함.
- 진로 상담 제공: 실습지도자와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생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고려해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상담을 제공해야 함.
- 전문가와의 교류: 실습생은 기관 내·외부의 다양한 청소년지도사 및 관련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실제 직무 경험담을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

(3) 대학과 실습기관의 역할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음.
- 대학의 역할: 대학은 실습생이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로를 성찰할 수 있도록 사후 워크숍, 집단 상담,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 등의 기회를 마련해야 함.
- 실습기관의 역할: 기관은 실습생을 단순히 '현장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진로 탐색 과정의 학습자로 존중하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함.
- 공동 지원 체계: 대학과 기관은 협력하여 실습생이 실습 후에도 진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해야 함.

(4) 자율성과 진로탐색권의 교육적 의미

- 자율성 보장은 실습생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움.
- 진로탐색권은 실습생이 청소년지도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상담,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자신의 진로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자율성과 진로탐색 경험은 실습생이 향후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의 자율성과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됨.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의무

1. 성실한 참여와 책임감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에 제시되어 있음.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길러가는 교육 과정임. 따라서 실습생은 실습 기간 동안 성실한 태도로 참여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함. 이는 기관과 대학이 실습생을 신뢰할 수 있게 하며, 실습생 자신이 전문직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함.

(1) 성실한 참여의 기본 원칙

- 출석 준수: 실습생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실습을 이행해야 하며, 무단 결석이나 반복적 지각은 실습생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됨.
- 근무 태도 유지: 실습 시간 동안 사적인 활동(휴대전화 과다 사용,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등)을 자제하고, 기관의 업무에 집중해야 함.
- 규율 존중: 실습기관의 규정, 복무 규율, 안전 지침 등을 준수하며,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함.

(2) 책임 있는 학습자 태도

- 예비 전문가로서의 자세: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수동적 태도를 넘어, 청소년지도사로서 필요한 전문적 시각을 가지고 실습에 임해야 함.
- 비판적 사고와 성찰: 주어진 업무와 활동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
- 책임 있는 언행: 청소년 및 기관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예의와 신뢰를 지키며, 개인적 실수나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대처해야 함.

(3) 기관 업무 참여의 자세

- 협력적 참여: 기관 직원 및 타 실습생과 협력하여 공동 과제를 수행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활동해야 함.
- 적극적 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소년 활동 지원, 행정 업무 보조 등 다양한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함.
- 전문성 강화 노력: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단순 수행이 아닌 학습 자료로 삼아, 실습일지 작성 및 자기 성찰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 함.

(4) 성실한 참여와 책임감의 교육적 의미

- 성실한 참여는 실습생이 전문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이자 태도임.
- 책임감 있는 자세는 기관이 실습생을 미래의 동료 전문가로 인식하게 하며, 신뢰 기반의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함.
- 성실성과 책임감은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는 덕목이며, 실제 현장에서의 지도 활동에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 역량임.

2. 청소년 보호 의무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생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정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의 안전, 인권,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이는 청소년지도사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법적 책임이며, 실습생은 실습 참여 과정에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함.

(1) 신체적 안전 보호

- 위험 예방 의무: 청소년 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응급상황 대처: 청소년이 부상을 입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실습생은 즉각적으로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상황에 맞는 응급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감독 책임 인식: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때는 단순 보조자가 아닌, 청소년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입장에서 임해야 함.

(2) 정신적·정서적 보호

- 인격 존중: 청소년을 대할 때 비하적 언행, 무시, 차별적 태도를 하지 않고,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유지해야 함.
- 심리적 지지: 청소년이 불안, 갈등,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실습생은 경청과 공감의 태도를 보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지도자에게 연계해야 함.
- 폭력·괴롭힘 방지: 활동 과정에서 언어적·정서적 폭력, 따돌림, 성희롱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발견 시 즉시 보고해야 함.

(3)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의 이름, 연락처, 가정환경, 상담 내용 등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됨.
- 상담 내용 비밀보장: 실습 중 알게 된 청소년 개인의 고민이나 상담 내용은 엄격히 비밀로 지켜야 하며, 지도자의 감독하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해야 함.
- 윤리적 책임: 실습생은 청소년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정보 관리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

(4) 전문적 태도와 모범성

- 모범적 행동: 청소년은 실습생을 성인으로서 본보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언행·복장·태도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
- 경계 유지: 청소년과 지나치게 사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사적인 접촉·금품 수수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됨.
- 윤리 준수: 청소년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실천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함.

(5) 청소년 보호 의무의 교육적 의미

-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지도사 직무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원칙이며, 실습생 시기부터 이를 체화하는 것은 필수적임.
- 청소년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습생은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내면화하게 됨.
- 청소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는 장차 실습생이 청소년지도사로 성장했을 때 청소년의 권익 옹호자로 활동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됨.

3. 기관 규정 준수

- 이것은 평생교육현장실습 매뉴얼(평생교육진흥원, 2009)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생은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기관의 규정과 운영 원칙을 존중하고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 이는 실습생이 기관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동시에,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기본 직업윤리를 내면화하는 과정임.

(1) 규정 준수의 기본 원칙

- 내부 규정 존중: 실습생은 기관의 운영 규칙, 안전 지침, 복무 규율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업무 지시 이행: 실습 지도자나 담당 직원의 합리적 지시에 성실히 따르며, 기관 업무의 질서와 체계를 해치지 않아야 함.
- 윤리 기준 준수: 기관이 요구하는 윤리 강령과 청소년 보호 원칙을 따르는 것은 기본 의무임.

(2) 근무 태도 및 책임

- 근무 시간 준수: 실습생은 지정된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지켜야 하며, 무단이탈이나 개인적 용무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됨.
- 시설과 자원의 관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설·기자재·자료는 실습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 용도나 무단 반출은 허용되지 않음.
- 복장과 언행: 기관의 규범에 맞는 단정한 복장과 태도를 유지하고, 청소년 및 직원 앞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는 것이 필요.

(3) 기관 문화 존중

- 조직 문화 이해: 실습생은 기관의 운영 철학과 가치, 조직 문화를 존중하며, 기관 구성원으로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함.
- 대외적 이미지 유지: 실습생의 언행은 곧 기관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관을 대표하는 일원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함.
- 비밀 준수: 기관 내부의 기밀 사항이나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됨.

(4) 기관 규정 준수의 교육적 의미

- 기관 규정 준수는 실습생이 전문직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학습하는 과정이며, 청소년지도사로서 필요한 직업적 태도를 훈련하는 기회가 됨.
- 기관의 질서와 규범을 존중하는 태도는 실습생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신뢰를 얻고, 현장에서 원활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
- 규정을 준수하는 경험은 실습생이 장차 청소년지도 현장에서 규범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됨.

4. 전문적 태도 유지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에 제시되어 있음.
- 현장실습은 단순히 기관 활동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 전문적 태도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과정임. 따라서 실습생은 복장과 언어, 행동 방식에서부터 문서 작성 및 보고 의무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갖춘 자세를 유지해야 함. 이는 기관 내에서의 신뢰 확보뿐만 아니라,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에서 모범이 되는 핵심 요소임.

(1) 복장과 언어에서의 전문성

- 복장: 실습생은 기관의 특성과 청소년활동의 성격에 적합한 단정하고 실용적인 복장을 갖추어야 함. 지나치게 노출이 심하거나 사적 모임에 어울리는 복장은 피하고, 활동 상황에 따라 안전성을 고려한 복장을 선택해야 함.
- 언어: 청소년 및 기관 관계자와 대화할 때에는 존중과 예의를 담은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은어·비속어·과도한 친근감 표현은 지양함. 언어 사용은 곧 실습생의 전문성과 기관의 신뢰도를 반영하는 지표가 되므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됨.

(2) 태도와 인간관계에서의 전문성

- 청소년과의 관계: 실습생은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에서 권위적이거나 지시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함. 대신, 청소년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접근하여 신뢰와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함.
- 기관 구성원과의 협력: 지도자, 직원, 동료 실습생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함. 불만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합리적이고 성숙한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해야 함.

(3) 학사 관리 및 보고 의무

- 실습일지 작성: 매일의 실습 경험과 학습 내용을 기록하고, 성찰을 통해 자신의 태도와 역량을 점검함. 이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전문성 성장을 위한 자기 점검 과정임.
- 보고서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양식과 기한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제출해야 함. 보고서는 실습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자, 실습담당교수 및 기관이 실습생의 태도와 역량을 평가하는 근거가 됨.
- 시간 관리: 과제 제출, 일정 준수 등은 모두 전문성을 나타내는 기본 요소로, 실습생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함.

5. 학습 및 자기계발 의무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 제3항에 제시되어 있음.
- 현장실습은 단순히 기관의 일상 업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지도사로 성장하기 위한 학습과 자기계발의 장(場)임. 실습생은 실습 기간 동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이를 자기 역량 향상으로 연결해야 함. 이러한 태도는 예비 전문가로서 자기주도적 성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임.

(1) 전공 지식 및 실무 능력 학습

- 전공 지식 보완: 실습 과정에서 접하는 다양한 활동은 교과서적 지식을 실제 현장 상황에 적용하는 기회임. 실습생은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여 전공지식을 보완하고 심화해야 함.
- 실무 능력 습득: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소년 상담·지도, 행정 업무 등 다양한 현장경험을 통해 실무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단순 보조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의 폭을 넓히는 자세가 필요함.

(2)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 능동적 참여: 실습생은 실습 과제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학습 과제를 찾아내어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함.
- 질문과 탐구: 모르는 부분이나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지도자나 기관 구성원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탐구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함.
- 성찰적 학습: 일지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자신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성찰적 학습을 실천해야 함.

(3) 자기 계발 및 전문성 향상

- 자기 계발 노력: 실습 기간 동안 청소년학, 상담학, 복지학 등 관련 분야의 최신 이론과 연구를 스스로 학습하여, 현장경험과 연결짓는 노력이 필요함.
- 전문성 확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워크숍·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음. 이는 실습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자기 계발 습관으로 이어져야 함.
- 평생학습 태도: 청소년지도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청소년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직업임. 실습생 시절부터 평생학습의 태도를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함.



권리와 의무의 조화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서 권리와 의무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룸.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실습생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고, 반대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의 정당한 보장을 기대하기 힘들. 따라서 실습생은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학습 효과와 전문성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음.

(1) 권리 보장과 의무 이행의 상호작용

- 안전과 보호의 권리 ↔ 청소년 보호 의무
- 실습생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때, 청소년을 보호하는 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 만약 실습생이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다면, 청소년의 안전까지 지키기 어려움.
- 공정한 평가와 피드백의 권리 ↔ 자기 계발의 의무
-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실습생은 학습 동기를 강화하여 자기 계발에 더욱 힘쓸 수 있음. 반대로, 불공정한 평가가 지속된다면 자기 계발의 의지와 성취감은 약화될 수 있음.
- 학습권 보장 ↔ 전문적 태도 유지의 의무
- 실습생이 충분한 학습 기회와 지원을 보장받을 때, 전문적인 태도를 성실히 유지하며 현장경험을 학문적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음.

(2) 권리와 의무의 균형적 운영의 필요성

- 권리만 강조되면 실습생은 책임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의무만 강조되면 실습생은 소진감과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음. 따라서 두 요소는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함.
- 권리 보장은 실습생의 동기와 자발성을 높이며, 의무 이행은 실습의 질과 기관에 대한 기여도를 높임.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실습은 상호 신뢰와 협력의 장이 됨.

(3) 교육적 의미

- 상호 보완성: 권리와 의무가 함께 작동할 때 실습생은 책임 있는 전문가로 성장함.
- 상호 존중: 권리 존중은 실습생이 기관과 청소년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짐.
- 지속적 성장: 권리와 의무의 균형은 실습생이 단순히 '실습을 이수하는 학생'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예비 지도자'로 성장하게 함.



결론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해 보는 경험의 차원을 넘어섬. 이는 예비 청소년지도사가 전문가로서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고, 사명감(mission)과 책무성(responsibility)을 내면화하는 중요한 교육 과정임. 실습생은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통해 학습과 성장을 위한 안정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을 단련하게 됨.
-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실습생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상호 보완적 요소임. 권리가 보장될 때 의무 이행의 동기가 강화되고, 의무를 다할 때 권리 존중의 당위성이 확보됨. 예컨대, 안전한 환경과 공정한 평가라는 권리가 충족될 때 실습생은 청소년 보호와 자기 계발이라는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 이러한 균형적 관계 속에서 실습은 단순한 기관 적응의 과정을 넘어, 청소년지도사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장이 됨.
- 궁극적으로 현장실습은 개인의 성장과 기관의 발전, 그리고 청소년 복지 향상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적 장치임. 실습생이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이는 곧 청소년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으로 이어짐. 따라서 현장실습은 예비 청소년지도사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는 기반이자, 청소년 정책과 실천 현장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토대라 할 수 있음.



IV-4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

1. 보호의 목적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하 '실습생')의 안정 및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청소년수련시설 등)·운영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보호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현장실습은 단순한 직무체험을 넘어 전문 청소년지도사로 성장하는 교육적 과정이므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보호는 모든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

2. 보호의 필요성

- 위험 노출에 대한 대비
 - 청소년기관의 활동 특성상, 야외 활동·야간프로그램·집단생활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실습생이 노출될 수 있음.
 - 특히 안전사고, 성희롱·성폭력, 언어·정서적 폭력, 과중한 업무 등은 실습생의 신체·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권익 침해 방지
 - 일부 현장에서는 실습생이 교육 목적과 무관한 업무(청소, 사적 심부름 등)에 동원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존재함.
 - 실습생의 학습권·노동권·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제도적·실무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함.
- 제도적 요구
 - 청소년 기본법, 아동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은 미성년자 및 청소년지도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실습생도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3. 현장실습 보호 적용 대상 범위

- 대상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
 -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
 - 학점은행제·평생교육원 이수자(성인, 직장인 포함)
 - 대학원 과정생
 - 청소년 분야 해당 경력자
- 적용 기관
 - 실습생을 배정·관리하는 양성기관(대학교 등)
 - 실습을 실제 운영하는 실습기관(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 제도 운영·감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 적용시점
 - 실습생 선발 및 배치 단계부터 실습 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해당함.

4. 실습생의 보호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하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 활동을 적용함.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제12조(학생 보호) ① 양성기관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은 제2조제5항에 따른 평가 시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③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양성기관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고, 해당 양성기관은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 안전 우선 원칙

- 실습기관에서는 모든 의사결정과 활동은 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세부 지침: 시설·장비·활동 환경 등 사전 위험요소 점검 및 제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공유. 비상대응훈련 실시

● 인권 존중 원칙

- 실습생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모욕·폭력을 배제하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의견 수렴을 보장함.
- 세부 지침: 성별·나이·출신지역·학력 등 모든 차별 금지. 언어적·정서적 폭력 예방 교육. 실습생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교육 목적 준수 원칙

- 실습 내용(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협약서에서 정한 목표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 세부 지침: 실습일지·지도계획서에 명시된 활동 위주 수행. 사적 심부름·비전문 업무 배제

● 비밀보장 원칙

- 실습생 및 기관 내부의 민감 정보 보호해야 함.
- 세부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사진·영상 촬영 및 게시 시 동의 절차, 실습 종료 후 자료 즉시 폐기

● 예방 중심 원칙

-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
- 세부 지침: 안전교육·성희롱예방교육·응급처치교육 실시, 위험 상황별 대응 매뉴얼 배포,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 체계 운영, 피드백 회의 등

● 책임 공유 원칙

- 양성기관·실습기관·운영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공동으로 실습생 보호책임을 지도록 함. 또한 모든 단계에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하여야 함.
- 세부 지침: 기관별 역할 분담 문서화. 비상시 연락망 및 보고체계 운영

● 권익 보호 원칙

- 실습생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 절차를 진행함.
- 세부 지침: 피해 상담·법률 지원 연계, 실습 변경·중단 조치 가능,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실습생의 보호원칙	실천 지침
안전 우선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위험요소 점검(시설·장비·활동 환경)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공유 등
인권 존중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나이·출신지역·학력 등 모든 차별 금지 • 언어적·정서적 폭력 예방 교육 • 실습생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교육 목적 준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일지·지도계획서에 명시된 활동 수행 • 사적 심부름·비전문 업무 배제
비밀보장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사진·영상 촬영 및 게시 시 동의 절차 • 실습 종료 후 자료 즉시 폐기
예방 중심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성희롱예방교육·응급처치교육 사전 실시 • 위험 상황별 대응 매뉴얼 배포 • 정기 모니터링 및 피드백 회의

[표 IV-2]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조치 활동

* 참조: 박승근, 김수정 (2012). 예비청소년지도사의 현장실습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4(3), 29-46.

5. 실습생의 안전

- 청소년지도사의 안전은 업무 수행 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실습기관은 실습생에 대해서도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함
- 기관 내부 및 외부 업무에서도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정책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 실습기관에서는 반드시 실습생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습기관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실습 장소와 프로그램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
 - 안전교육과 비상대응훈련 실시

6. 실습생 사고 시 보호조치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하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습 전·중·후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시행함
- 1단계(사전준비_실습 전):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 마련
 - (1) 실습 협약 체결
 - 양성기관·실습기관 협약
 - 교육목표, 실습 내용, 근무시간, 안전관리, 비밀보장 조항 명시
 - (2) 위험요소 사전점검
 - 실습 장소의 시설·장비·환경 위험 요인 점검
 -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공유
 - 보험 가입: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험 중 해당 범위 가입
 - (3) 사전교육
 - 안전교육(산업안전, 응급처치, 재난 대응)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지도자 사전 검증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 안전관리 역량 검토
- 2단계(실습운영_실습 중): 실습생의 안전, 인권, 학습권 보장
 - (1) 안전관리
 - 위험 활동 시 지도자 1:10 이하 비율 유지
 - 보호구(헬멧·구명조끼 등)지급 및 착용 점검 및 비상연락망 비치
 - (2) 업무 관리
 - 교육목표와 무관한 업무(심부름, 사무 외 잡무) 배제
 - 실습일지 점검 및 지도자 서명
 - (3) 권익보호
 - 차별·모욕·폭력 금지
 - 익명 신고 채널 운영(전화·이메일·온라인 폼)
 - (4) 위기대응
 - 사고·부상 시 즉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성희롱·성폭력 사건 시 즉시 분리 조치 및 기관 보고
 - 기상악화·재난 시 실습 중단 및 대피
 - (5) 모니터링
 - 주 1회 이상 양성기관과 연락·피드백

- 3단계(사후관리_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학습성과 확인 및 피해 회복
 - (1) 성과 평가
 - 실습일지·평가서 검토 후 학점·수료 여부 결정
 - (2) 피해 회복
 - 실습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법률자문 지원
 - 필요시 대체 실습 기회 제공
 - (3) 사후 점검
 - 실습기관 보호조치 이행 여부 평가
 - 문제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 (4) 자료 관리
 - 개인정보·실습 관련 서류 3개월 후 폐기
 - (5) 피드백
 - 실습생·지도자·기관 피드백을 반영해 다음 기수 계획 개선

	사전준비(1단계)	실습운영(2단계)	사후관리(3단계)
목적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 마련	실습생의 안전, 인권, 학습권 보장	실습생의 학습성과 확인 및 피해 회복
주요 조치	실습 협약체결 - 양성기관·실습기관 협약 - 교육목표, 실습내용, 근무시간, 안전관리, 비밀보장 조항 명시	업무 관리 - 실습일지 점검 및 지도자 서명 - 교육목표와 무관한 업무 배제	성과평가 - 실습일지·평가서 검토 후 학점·수료여부 결정
	위험요소 사전점검 - 실습장소의 시설·장비·환경 위험요인 점검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공유	권익보호 - 차별·모욕·폭력 금지 - 익명 신고채널 운영 (전화·이메일·온라인 폼)	피해 회복 - 실습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법률자문 지원 - 필요시 대체 실습 기회 제공
	보험가입 -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험 중 해당 범위 가입	안전관리 - 위험 활동 시 지도자 1:10 이하 비율 유지 - 보호구(헬멧·구명조끼 등) 지급 및 착용 점검 - 비상연락망 비치	사후 점검 - 실습기관 보호조치 이행 여부 평가 - 문제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사전 교육 - 안전교육(산업안전, 응급처치, 재난대응 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위기 대응 - 사고·부상 시 즉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성희롱·성폭력 사건 시 즉시 분리 조치 및 기관 보고 - 기상악화·재난 시 실습 중단 및 대피	자료 관리 - 개인정보·실습 관련 서류 3개월 후 폐기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지도자 사전검증 및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 안전관리 역량 검토	모니터링 - 주 1회 이상 양성기관·실습기관과의 연락·피드백	피드백 - 실습생·지도자·기관 피드백을 반영해 다음 기수 계획 개선

[표 IV-3] 실습단계별 보호조치

*참조: 박수곤, 김수정 (2012). 예비청소년지도사의 현장실습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4(3), 29-46.

7. 사고·분쟁 대응 절차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하 '실습생')의 안전사고, 권익 침해, 성희롱·성폭력, 기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공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며, 사고·분쟁은 크게 안전사고, 인권침해, 성 관련 사건, 기타 갈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함
- 즉시 대응 관계(피해 최소화, 2차 피해 방지)
 - 사고 현장 확보(인명 구조, 위험물 제거, 현장 격리 및 응급 상황 시 119 또는 인근 의료기관 즉시 연락)
 - 피해자 보호(피해 실습생을 가해자·위험 요소로부터 즉시 분리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호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으로 배치하도록 함)
 - 응급 조치(부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고, 정신적 충격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나 심리전문가와 연계하여 조치)
- 초기 보고 단계(관계기관에 신속한 상황 전달)
 - 보고 체계(실습지도자-실습기관 책임자-양성기관 순으로 보고)
 - 긴급 사건(성희롱 및 중대 안전사고는 1시간 이내 보고)
 - 보고 내용(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피해자 및 가해자 정보 파악)
 - 사건 경위(초기 대응 조치 현황 및 사건 기록 보존 등, 사건 관련 증거(CCTV, 사진, 문서) 즉시 확보 및 보관)
- 조사·사실 확인 단계(사건 경위원 책임 소재 명확화)
 - 조사 주체(실습기관 내부 조사팀_필요시 양성기관_외부 전문 조사기관 참여)
 - 조사 원칙(공정성·비밀보장·피해자 중심 및 피해자 재진술 최소화)
 - 조사 방법(관련자 면담·서면 진술서 작성 등, CCTV·문서·전자기록 검토)
- 조치·중재 단계(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 피해자 지원(의료비 및 상담비를 지원하고, 학점 인정·대체 실습으로 제공)
 - 가해자 조치(실습 배제, 징계, 법적 절차 이해)
 - 중재 및 합의(경미한 분쟁의 경우 기관 중재로 합의 가능)
 - 중대 사건은 법률 절차로 진행하도록 함
- 사후 관리 단계(사건 종료 후 후속 조치와 예방 강화)
 - 재발 방지 대책 수립(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안전·인권 보호 매뉴얼을 보완 함)
 - 피해자 추후 지원(심리 상담 지원 및 복학·재실습 지원)
 - 사건 기록 보존(관련 자료 3년 이상 보관) 법령 준수



1. 안전사고 관련 법적 근거

- ① 산업안전보건법
 - 실습이 실제 업무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기관에 있음. 대학이나 수련시설은 실습생에 대한 안전교육, 보호장비 제공,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해야 함
- 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학생도 '학교안전사고'의 범주에 포함되며, 실습 중 발생한 사고가 '학교 활동'으로 인정되면 보상이 가능함
-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수련활동을 하는 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 조치를 해야 함. 실습생도 '청소년활동 참가자'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기관에 과실 책임이 생김

2. 인권침해 관련 법령

- ① 헌법 제10조, 제37조
 -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 실습생이 차별·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가능함
- ③ 대학 학칙·현장실습 운영규정
 - 대부분의 대학은 '현장실습 학생 보호 및 권리 보장 규정'을 내부 규정으로 운영함

3. 성 관련 사건(성희롱·성폭력 등)

-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성희롱 금지)
 - 실습생도 '교육·훈련 관계'에 있는 자로 보호 대상. 기관·지도자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방지 의무 있음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실습 중 지도자·청소년·타 직원이 성폭력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함
-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실습생이 직접 청소년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관련 사건에 적용
- ④ 대학 및 수련시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 대학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인권센터 설치하며 실습생도 피해 발생 시 신고 가능함

4. 시행령·시행규칙 수준

-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 안전사고 보고 절차, 보험 가입, 지도자 책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실습생이 '현장 체험 교육훈련생'으로 분류될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명시
- ③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교육부 고시)
 - 교육부가 제정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는 안전사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대학과 기관이 공동 대응하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하도록 지침이 있음

IV-5 현장실습생의 자기 평가

1. 목적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예비청소년지도사가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직무 경험을 통해 전문 역량을 함양하고, 진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중 하나임.
- 이 과정에서 현장실습생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학습의 깊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도록 자기 평가를 받는 것이 권장됨.
- 현장실습생의 자기 평가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현장실습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현장실습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 강화의 목적을 둠.
 - 현장실습 목표를 수시로 점검하여 남은 기간의 현장실습을 보다 의미 있는 교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현장실습의 성과를 파악하여, 실습에서 학습한 전문 지식 그리고 직무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여 향후 전문성 개발 및 진로 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함.

2. 자기 평가 절차와 내용

- 현장실습생의 자기 평가는 현장실습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한 자신의 평가이며, 실습 전 과정에서 자기 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음.
 - 자기평가 계획: 현장실습의 목표를 구체화하여, 현장실습이 의미 있는 경험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 평가 계획 설계 단계임.
 - 중간 자기평가: 현장실습 목표 달성에 대한 점검과 현재까지의 현장실습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진단을 위한 중간 자기 평가 단계임.
 - 최종 자기평가: 실습 목표에 대한 최종 점검 단계이며, 청소년지도사의 직무 이해, 지식, 역량 달성 수준을 점검하고, 나아가, 핵심역량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적성 및 흥미도를 평가하는 단계임.
- 자기평가 계획 단계, 중간 자기평가 단계, 최종 자기평가 단계의 목적, 내용, 시기, 방법, 효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3. 자기 평가 계획

- 현장실습 수행 전 자기 평가 계획 수립은 청소년기관을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실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습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됨.
- 양성기관(대학)은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자기 평가 계획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활동 내용은 자기 평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기 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야 함.
- 실습담당교수는 자기 평가 계획 보고서를 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양성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 만약, 자기 평가 계획 보고서를 평가 점수로 반영하고자 한다면, 작성방법, 제출방법 및 시기에 대해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 자기 평가 계획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음.

구분	자기 평가 계획	중간 자기 평가	최종 자기 평가
목표	- 실습목표 구체화	- 실습목표 중간 점검	- 최종 성과 도출
내용	- 현장실습 전 현장실습 목표 설정 - 중간 및 최종 자기평가 시기 및 방법 설정	- 현장실습 목표 점검 - 남은 현장실습 동안의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 영역 탐색	- 현장실습 목표 달성 최종 점검 - 실습 중 배운 전문지식·기술·태도의 변화 파악
시기	- 현장실습 이전	- 현장실습 중간	- 현장실습 이후
방법	- 현장실습 목표 계획 보고서	- 중간 자기 평가 보고서	- 최종 자기 평가 보고서
효과	- 현장실습 동기 강화 - 현장실습 방향 명확화	- 성과 진단 - 남은 기간 방향 점검	- 성과 도출(자기성찰) - 향후 계획(발전) 탐색
교수자 활용 방법 Tip	- 과제물에 대한 점수 부여 - 최종 자기 평가는 수업 중 보고회 발표로 활용 가능 * 성적평가 시 발표점수와 보고서 점수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고, 발표 또는 보고서 점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실습담당교수 재량)		

[표 IV-4] 자기 평가의 과정

* 출처: 자체작성

 운영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평가 이해 및 중요성 - 자기평가 보고서 작성 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작성 후 제출(기간안내) - 보고서를 실습기관에 공유
 운영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중 - 수업활동 중 	

[표 IV-5] 자기 평가 계획 운영방법

- 자기 평가에 대한 설명 예시는 다음과 같음

자기평가란? (예시)	- 자기평가(Self-Assess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한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평가활동을 의미한다(HRD 용어사전). ●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을 스스로 진단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을 말한다(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 자기 자신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수행 결과물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함께 장단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평가 활동을 말한다(류성림, 2000)
자기평가의 중요성(예시)	- 현장실습에서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현장실습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청소년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파악할 수 있다. - 청소년기관에서 요구하는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 자신의 장·단점을 강화 및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 자기 평가 계획 보고서 작성은 현장실습생의 기본정보, 자기평가 시기, 자기평가 내용을 작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장실습생의 기본정보(이름, 학번, 실습기관, 실습기관 등)를 작성하도록 함.
- 중간 자기 평가의 시기 및 최종 자기 평가의 시기를 작성하여 일정에 따라 자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기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현장실습이 되도록 개인적 목표와 전문 역량(직무 관련) 목표를 작성하도록 함.

Tip

* 현장실습생이 자기 평가 계획 보고서 작성 시 개인적 목표와 전문역량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습담당교수는 개인적 목표와 전문역량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개인적 목표는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통해 원하는 개인적인 목표를 작성함(자율적으로 작성)

예시)
 청소년분야의 적성과 흥미도
 청소년기관 이해
 대인관계 능력 향상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전문역량 목표는 직무와 관련된 목표를 작성함(아래의 직무관련 사항 참고)

NCS 청소년활동의 능력단위	청소년지도사 활동역량(서희정, 2018)
청소년사업 기획 청소년기관 행정지원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청소년활동정보관리 지도자 교육훈련 청소년권익증진활동지원 청소년현장실습지도 청소년조사연구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청소년프로그램 실행 청소년프로그램 평가 자원봉사활동 운영 청소년자치활동 운영 청소년생활지도 청소년활동 안전 및 위생관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신고 청소년교류활동 지도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	청소년활동 설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및 청소년활동 지식, 정보활용 기술, 청소년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 기술,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 기술 청소년활동 실행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 지식, 홍보 및 사전준비 기술, 안전관리 기술, 오리엔테이션 기술, 참가자와의 관계형성 기술, 참여촉진 기술, 돌발상황 대처 기술, 마무리 기술, 평가 기술 행정업무 수행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수행지식, 네트워킹 기술, 일반행정 수행기술, 청소년지원 기술 팀워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원 이해, 리더십 기술, 협력 기술

• 현장실습생의 자기 평가 계획 보고서 작성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현장실습생의 자기 평가 계획 보고서 (안)			
학 과	청소년관련 학과	이 름	○○○
학 번	○○○○○○○○○○	연락처	○○○-○○○○-○○○○
실습기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실습기간	~
실습담당교수	○○○	실습지도자 (연락처)	○○○ (○○○-○○○○-○○○○)
중간 자기평가	현장실습 중반	최종 자기평가	현장실습 종료 후
개인적 목표	1. 청소년 이해 증진	전문역량 목표	1. 청소년사업 기획
	2. 청소년기관 이해		2.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3. 직업적 정체성		3. 청소년프로그램 실행
	4. 의사소통 함양		4. 청소년생활지도
	5. 전공 적합성		5.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신고

* 자기 평가 계획 보고서 양식과 내용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정·활용 가능

4. 중간 자기 평가

- 현장실습생의 중간 자기 평가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현장실습을 통한 성과를 점검하고, 나아가 문제점을 진단하여 남은 실습기간 동안의 보완 사항을 확인하는 데 있음.
- 중간 자기 평가는 실습기간 중에 점검하며, 양성기관(대학)과 현장실습 기관에서 수행이 가능함.
- 중간 자기 평가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음.

<p>운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달성 정도(개인적 목표/전문역량 목표) - 책임감/성실함(출결, 지각 등) - 어려움과 문제점 - 남은 실습기간에 집중할 영역 - 기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 	<p>운영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과제물 연계 	<p>- 중간 자기 평가 보고서 작성 후 제출(기간 안내)</p>
--	--	--------------------------------------

[표 IV-6] 중간 자기 평가 운영방법

-중간 자기 평가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장실습생의 기본정보(이름, 학번, 실습기관, 실습기간 등)를 작성하도록 함(계획 보고서와 동일).
- 개인적 목표와 전문역량 목표 달성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며, 이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설정한 목표를 주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음.
- 또한, 현장실습 책임감, 문제점, 남은 기간 동안에 경험하거나 집중하고 싶은 영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이 필요함.
- 중간 자기 평가 보고서 작성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현장실습생의 자기 평가 중간 보고서 (안)			
학 과	청소년관련 학과	이 름	홍길동
학 번	○○○○○○○○○○	연락처	○○○-○○○○-○○○○
실습기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실습기간	~
실습담당교수	○○○	실습지도자 (연락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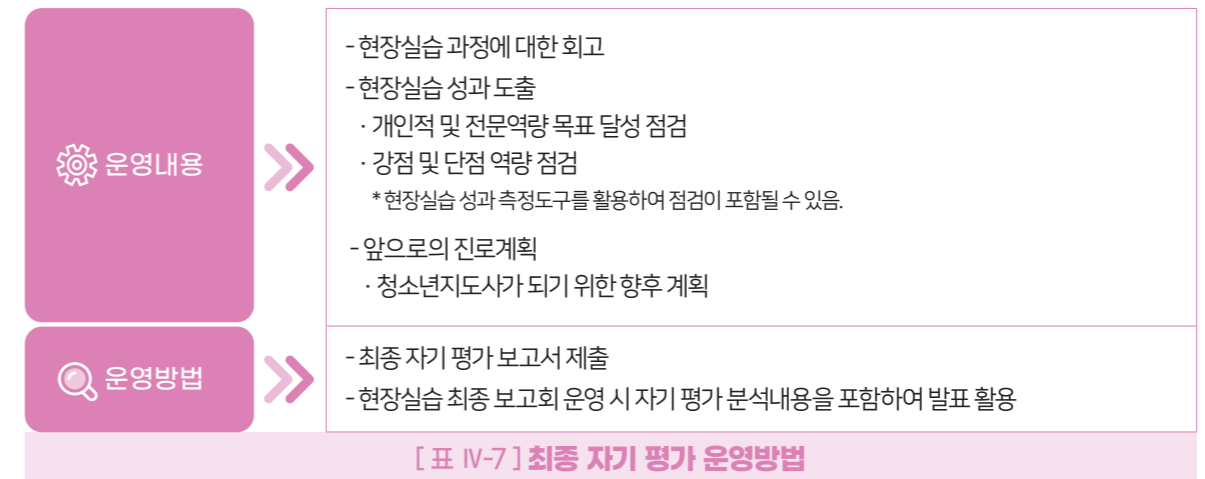
항 목	달성수준 (1-10점)	항 목	달성수준 (1-10점)
개인적 목표달성 정도	1. 청소년 이해 증진	전문역량 목표달성 정도	1. 청소년사업 기획
	2. 청소년기관 이해		2.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3. 직업적 정체성		3. 청소년프로그램 실행
	4. 의사소통 함양		4. 청소년생활지도
	5. 전공 적합성		5.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신고
합 계		합 계	

책임감/ 성실함	- 현재까지 실습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했는지를 작성 • 지금까지의 결석, 지각 등 • 실습기관 과제물 수행 및 참여도 정도 • 실습기관에서의 지적사항 등
어려움/ 문제점	-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정 중에 어려움과 문제점을 작성 • 실습담당 지도자 또는 실습동료와의 관계 어려움 • 실습내용 중 어려움 등
남은기간 집중영역	- 남은 실습기간 동안 무엇을 더 경험하고 싶은지를 작성 •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행정 및 회계 관련 내용 등
기관 요청사항	- 남은 실습기간 동안 기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을 작성 • 기관장 간담회, 지역 타 기관 방문 등 • 직무와 관련된 경험 등
총평	- 위의 내용을 토대로 총평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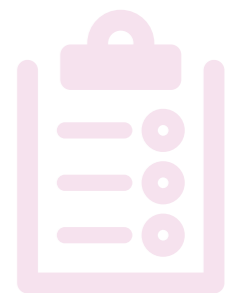
*중간 자기 평가 보고서 양식과 내용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정·활용 가능

4. 최종 자기 평가

- 현장실습 최종 자기 평가는 현장실습 목표(개인적 목표, 전문역량 목표) 달성을 점검하여 현장실습 성과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현장실습 최종 자기 평가는 본인의 진로탐색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것으로 현장실습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가치관을 점검하고 앞으로 청소년지도사로서 진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최종 자기 평가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최종 자기 평가 보고서 작성 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장실습생의 기본정보(이름, 학번, 실습기관, 실습기간 등)를 작성하도록 함.
 - 개인적 목표와 전문 역량 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중간 자기 평가 점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 현장실습 후에 최종 자기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지도사로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함.
 - 역량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강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약점 및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도록 함.
 - 현장실습 후 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인식변화, 행동적 변화, 직업에 대한 흥미도 등을 점검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향후 진로계획을 작성하여 전공 적합성, 희망 취업분야, 청소년지도사 이외 필요한 자격증 등 앞으로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진로준비를 위한 계획을 고민하도록 함.



현장실습생의 자기평가 최종 보고서 (안)

학 과	청소년관련 학과	이 름	홍길동
학 번	○○○○○○○○○○	연락처	○○○-○○○○-○○○○
실습기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실습기간	~
실습담당교수	○○○	실습지도자 (연락처)	○○○ (○○○-○○○○-○○○○)

항 목		최종 (1-10점)	중간 점수	항 목		최종 (1-10점)	중간 점수
개인적 목표달성 정도	1. 청소년 이해 증진			전문역량 목표달성 정도	1. 청소년사업 기획		
	2. 청소년기관 이해				2.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3. 직업적 정체성				3. 청소년프로그램 실행		
	4. 의사소통 함양				4. 청소년생활지도		
	5. 전공 적합성				5.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신고		
합계				합계			
개인적 목표 달성 점검		- 중간 자기 평가와 비교하여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높은 영역은 무엇이며, 중간보다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높은 이유, 중간보다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 등을 작성하도록 함.					
전문역량 목표 달성 점검		- 중간 자기 평가와 비교하여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높은 영역은 무엇이며, 중간보다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높은 이유, 중간보다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 등을 작성하도록 함.					
최종 자기분석	청소년지도사로서 강점	- 개인적 목표와 전문역량 목표 중에서 자신의 강점 역량을 작성하고, 이 역량이 앞으로 청소년지도사로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 등을 기술					
	청소년지도사로서 약점	- 개인적 목표와 전문역량 목표 중에서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역량을 제시하고, 이러한 약점이 청소년지도사로서 어떤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인지를 기술					
역량개발 계획		- 강점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기술 -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기술					

현장실습 후 나의 변화	- 현장실습 후 청소년기관 및 시설에 대한 변화된 인식은 무엇인가? -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는가? - 현장실습 후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등을 기술
진로계획	-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이 나에게 적합한가? - 청소년지도사가 된다면 어떤 시설에서 종사하고 싶은가? -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할 자격증은 무엇인가? - 향후 어떤 봉사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 또 다른 방안에서 현장실습 성과 측정 도구를 활용한 자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성과 척도의 하위 요소와 문항을 점수로 평가하여 강점/보완해야 할 지표와 문항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도록 함.
- 이 방법을 활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측정 도구를 선정하고, 하위 요소와 문항을 파악함.
 - 둘째,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영역에 체크함.
 - 셋째, 영역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낮은 문항과 영역을 파악함.
 - 넷째, 이 점수를 토대로 자기 평가를 실시함.
- 현장실습 성과 척도: 오승근 외(2025). 예비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성과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함.
- 현장실습 성과 평가: 자기 보고서 체크리스트에 1~5점 중 점수를 부여하고, 각 영역별로 합산하여 성과영역과 문항별 점수를 확인함.
- 성과 척도 활용 시 현장실습 성과 보고서 작성은 현장실습생의 기본정보, 하위 성과 영역별 해석, 청소년지도사 역량 문항별 해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
 - 현장실습생의 기본정보는 이름, 학번, 실습기관, 실습기간 등을 작성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하위 성과 영역별 해석은 하위영역별로 점수를 작성하고, 점수가 낮은 지표와 높은 지표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현장실습생의 의견과 해석을 작성하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 역량 문항별 해석은 현장실습을 통해 직무역량에 대한 탐색과정으로 청소년지도사 역량 문항 중 점수가 높은 3개의 문항(강점역량)과 점수가 낮은 3개의 문항(보완역량)을 파악하여, 강점역량 강화 및 보완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과 방안을 작성하도록 함.



구분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 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진로 탐색	A-1	청소년학 전공인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다.			○	
	A-2	내 진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	
	A-3	졸업 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
	A-4	내 진로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A-5	청소년 관련 진로가 나의 적성에 맞는지 알 수 있다.			○	
	A-6	내 진로 목표를 위한 준비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A-7	내 진로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		
	A-8	청소년지도사의 근무 여건을 이해할 수 있다.			○	
	A-9	청소년지도사 직업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		○		
합계 점수(평균점수)		35점(35점/9문항=3.9점)				
사회적 이해	B-1	지역사회 내 사회적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B-2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B-3	진로와 관련한 좋은 인맥을 구축할 수 있다.		○		
	B-4	나와 다른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	
	B-5	지역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B-6	지역사회와 청소년기관의 연계망 형성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B-7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	
	B-8	청소년 분야 정책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	
합계 점수(평균점수)		28점(28점/8문항=3.5점)				
학습 역량	C-1	이전에 배우지 못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C-2	대학에서 배운 것을 실제 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	
	C-3	나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다.				○
	C-4	관련 분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동기를 높인다.				○
	C-5	기존 다른 수업에서보다 학습할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C-6	학습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높인다.				○
합계 점수(평균점수)		27점(27점/6문항=4.5점)				
청소년 지도사 역량	D-1	청소년학 전공인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다.		○		
	D-2	내 진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
	D-3	졸업 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	
	D-4	내 진로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D-5	청소년 관련 진로가 나의 적성에 맞는지 알 수 있다.		○		
	D-6	내 진로 목표를 위한 준비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D-7	내 진로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	
	D-8	청소년지도사의 근무 여건을 이해할 수 있다.			○	
	D-9	청소년지도사 직업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		○		
	D-10	청소년지도사 직업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		○		
	D-11	청소년지도사 직업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		○		
	D-12	청소년지도사 직업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		○		
합계 점수(평균점수)		27점(27점/6문항=4.5점)				

● 현장실습생의 최종 자기 평가 보고서 작성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현장실습생의 자기평가 최종 보고서 (성과척도 활용 예)			
학 과	청소년관련 학과	이 름	○○○
학 번	○○○○○○○○○○	연락처	○○○-○○○○-○○○○
실습기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실습기간	~
실습담당교수	○○○	실습지도자 (연락처)	○○○ (○○○-○○○○-○○○○)

성과영역	진로탐색	사회적 이해	학습역량	청소년지도사 역량
평균점수	3.9점	3.5점	4.5점	3.5점
자기평가	<p>- 점수가 높은 지표와 낮은 지표에 대해 작성 (아래는 작성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영역별 점수는 학습역량 점수가 4.5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진로탐색 3.9점, 청소년지도사 역량 3.5점과 사회적 이해 3.5점 순으로 확인됨. 현장실습 성과로는 학습역량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지도사 역량과 사회적 이해 영역은 다소 낮은 점수로 나타남. <p>- 점수가 낮은 영역과 높은 영역이 도출된 이유에 대해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역량이 높은 이유를 현장실습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청소년지도사 역량과 사회적 이해 역량이 낮은 이유에 대해 작성하도록 함. 			

구분 (D1~D12)	문항내용	학습역량	비고
점수가 높은 문항 (1-3순위)	청소년의 다양한 행동에 대한 지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5	강점역량
	청소년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5	
	청소년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4	
점수가 낮은 문항 (1-3순위)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다.	2	보완역량
	청소년 관련 기관의 특성과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	3	
	청소년관련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향후 계획	<p>- 강점역량에 대한 해석과 강점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방안에 대해 작성</p> <p>- 보완역량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과 방안에 대해 작성</p>		

IV-6 현장실습생 FAQ

FAQ

1. 실습 기본 이해

Q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란 무엇인가요?

A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을 실제 청소년기관(예: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유스호스텔 등)에서 직접 적용해보는 교육과정이에요. 청소년지도사로서 필요한 실무 역량과 윤리, 현장 경험을 쌓는 필수 교과목입니다.

Q2. 실습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A2. 학교(양성기관) → 행정 관리, 실습의뢰서 발급, 협약 체결
 담당교수(실습담당교수) → 수업 운영 및 최종 평가
 실습기관 지도자(실습지도자) → 현장 지도 및 평가
 즉, 학교와 기관, 그리고 학생이 함께 협력해서 진행합니다.

2. 선수과목

Q3. 실습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A3.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선수과목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과목을 선이수해야 합니다.

- 청소년활동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상담론 등

※ 학교별로 구체적인 지정 과목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학과 공지를 확인하세요.

Q4. 편입생은 선수과목을 다시 들어야 하나요?

A4. 아니요. 편입 전에 이수한 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되면,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3. 실습 기간 및 구성

Q5. 실습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A5. 총 130시간 이상 실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실제 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활동하는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주중 또는 주말 배치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Q6. 실습 전·중·후에 어떤 수업이 포함되나요?

A6. 실습은 단순 현장근무가 아니라 교과과정으로서 다음 네 가지가 포함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실습오리엔테이션	1회 이상 실시	실습 목적, 안전교육 등
기관 현장실습	130시간 이상	프로그램 기획, 운영, 행정지원 등
실습세미나	1회당 2시간 이상 × 5회 이상	실습 중 토론·사례 공유 (1주 1회 이내, 1회 이상 대면 필수)
실습 최종평가회	1회 이상	실습보고서 발표, 종합 피드백

4. 실습기관 및 자격 이해

Q7. 실습기관은 어떻게 정하나요?

A7. 학교(또는 학과)가 미리 협약을 맺은 기관 중에서 배정받습니다. 직접 기관을 제안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학교가 실습협약을 체결해야 인정됩니다. 협약서에는 실습 기간, 장소, 안전관리, 평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8. 어디서 실습할 수 있나요?

A8. 실습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따른 공인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기관,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대안학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Q9. 내가 희망하는 기관이 실습기관으로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9.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보다, 학교(양성기관)가 협약 체결 시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단, 학생이 제안할 수도 있으므로, 기관이 청소년활동 또는 복지 관련 법령상 기관인지 확인 후 학교에 알려주세요.

5. 실습시간 및 근무형태

Q10. 실습은 며칠 동안 해야 하나요?

A10. 최소 15일 이상, 총 130시간 이상 실습해야 합니다. 하루 4~8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입니다. 필요하면 최대 5시간 연장 가능하지만, 반드시 학생 동의가 필요합니다.

Q11. 야간실습도 가능한가요?

A11.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는 실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행사나 캠프 등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본인 동의와 교수 협의 후 가능합니다.

Q12. 실습 중 휴식은 보장되나요?

A12. 네. 매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주휴일 1일 이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6. 실습지도자 및 평가

Q13. 누가 나를 지도하나요?

A13. 실습기관에는 반드시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자격+2년 경력자가 상근하며, 동시에 10명 이하의 실습생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성과 관리가 보장된 지도자에게 배우게 됩니다.

Q14. 실습비를 내야 하나요?

A14. 기관이 실습 운영을 위해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학교-기관 협약에 명시되며, 학교를 통해 공지됩니다. (예: 프로그램 자료비, 실습지원비 등)

7. 실습 중 유의사항

Q15. 실습 중에 해야 할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A15. 기관의 운영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보조
- 활동·행사 진행 및 평가
- 행정·홍보 업무 지원
- 청소년상담, 멘토링, 참여활동 등 보조
- 기관운영 회의, 교육 참여

또한,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의식과 가치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Q16. 실습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A16. 협약서에는 실습생의 보건·위생·산업재해 예방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기관 지도자 및 담당교수에게 연락하고, 학교의 절차에 따라 보고합니다.

Q17. 실습세미나는 꼭 참석해야 하나요?

A17. 네. 실습세미나는 필수입니다. 매주 1회 이하, 총 5회 이상 참여해야 하며, 원격수업이 가능하더라도 최소 1회는 대면 참여해야 합니다.

8. 평가 및 보고서

Q18. 평가는 누가 하나요?

A18. 평가권자는 학교의 실습담당교수입니다. 하지만 평가점수는 ① 기관 지도자가 준 점수와 ② 교수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점수가 산출됩니다.

Q19. 평가 기준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19.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출석 및 시간준수
- 실습태도와 책임감
- 청소년이해 및 소통능력
- 프로그램 참여 및 기획역량
- 실습보고서의 충실도

9. 실습생의 기본 의무

Q20. 실습생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20.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 학교와 성평등가족부 고시에서 정한 절차·규칙을 따르기
- 기관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 기관 내부 정보나 기밀사항 유출 금지

이는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기본 윤리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Q21. 실습 중 알게 된 정보를 SNS나 개인 블로그에 써도 되나요?

A21. 기관 운영 정보, 청소년 개인정보, 내부 프로그램 내용 등은 비밀 유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나 기밀사항 유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 실습생의 권리

Q22. 실습 중에 어떤 권리를 보장받나요?

A22. 세 가지 주요 권리가 있습니다.

- 지도를 받을 권리: 지도자에게 도움과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방지 권리: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지시 거부 및 신고 권리: 고시 기준에 어긋나는 업무를 강요받으면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3. 실습 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3. 즉시 학교(실습담당교수 또는 실습지원센터)에 알리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습기준(시간, 내용)을 벗어난 업무 지시
- 안전·위생·성희롱 문제 발생
- 과도한 업무, 부당한 대우

학교는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시 실습중단 및 복교 조치를 합니다.

11. 안전과 보호

Q24. 실습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24.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비상대응(사고·재해 시 연락체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당신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Q25. 실습기관 평가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A25. 아닙니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기관은 자체 평가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평가는 교육 목적이며, 부당한 평가가 있을 경우 학교에 즉시 신고하세요.

12. 자주 묻는 추가 질문

Q26. 실습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A26.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학교와 기관이 상호 협의 후 협약 변경 또는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7. 실습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A27. 원칙적으로 기관실습은 현장(대면) 실습입니다. 다만 일부 교육·세미나·보고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8. 방학기간 중 사전실습도 인정 되나요?

A28. 실습은 시기에 따라 학기제(정규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현장실습 대상 학년이나 학기 기준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도교수와 협의 후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Q29.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습을 점검할 수도 있나요?

A29. 네. 성평등가족부는 실습이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도 출석·보고서·윤리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부록

실습생용 서식 모음



※ 양식은 예시용이며, 상황에 맞게 수정·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생용 2-1] 현장실습 신청서

현장실습 신청서

1. 실습생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소속		학과/전공		학년/학기	
현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E-Mail					

2. 실습 의뢰내용

실습 부서	
실습 분야	
실습 기간	
실습 내용	

* 상기 내용으로 귀 기관에 실습신청을 의뢰하며 실습생 자기소개서를 동봉합니다.

실습신청학생 : (인)

실습지도교수 : (인)

현장실습생 자기소개서

1. 인적사항

(사진)	성명		생년월일	
	소속	대학교(원)	전공	학년(학기)
	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E-Mail			

2. 이수 전공과목

교과목명	이수완료	현재이수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기타(청소년이 포함된 교과목 1과목)		

3. 경력

구분(취업, 실습, 봉사)	기관	기간	내용

4. 청소년관련학과를 전공하게 된 동기

5. 실습 기관 선택 이유

6.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7. 실습을 마친 후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

8.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신의 강점과 약점

1) 청소년지도 관련 지식 및 기술의 측면	2) 개인적인 특성 측면

9. 취미 및 특기

10.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및 실습지도교수에게 바라는 점

현장실습생 서약서

본인은 ○○기관의 현장실습생으로서 실습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의 능력 향상을 위해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습기간 동안 취득한 청소년 개인정보 및 기관정보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받지 않은 경우 이를 누락하지 않으며,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 보건·위생 규정 및 성희롱 예방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학교/학과): _____

실습생: _____ (인)

○○기관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신청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 필요 시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대상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이용기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신청서 (실습생)	성명, 생년월일, 학번, 소속·전공,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적사항(이수 학점·선수과목 이수현황), 실습프로파일 (실습기관명, 기간, 지도자 정보 등)	본인신원 확인, 실습지도, 실습 신청 요건 확인, 행정업무 처리	졸업 시까지, 실습 종료 후 3년 이내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실습기관	성명, 생년월일, 학번, 소속·전공, 연락처, 실습기간, 학점 이수 현황, 실습프로파일	본인실명확인, 실습지도, 실습 신청 요건 확인 등	실습 종료 후 3년 이내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신청 및 배정이 불가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학번: _____ (인)

성명: _____ (인)

현장실습 계약서

제1조 (목적)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습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2000.00.00. ~ 2000.00.00.으로 한다. 현장실습은 갑의 청소년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조 (실습방법 및 내용) 실습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에 대한 이해
2.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관리의 실제
3.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제4조 (실습기관의 의무) 실습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를 제공한다.
3. 현장실습지도자의 자격과 지도능력을 갖춘 실습지도자를 배치한다.
4.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가 지도하는 실습생은 10명을 넘지 않도록 배치한다.
5.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 (현장실습생 권리) 현장실습생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3.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6조 (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현장실습의 교육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2. 업무 상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실습과정에서 사용하게 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1. 총 실습시간은 ___시간으로 한다.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시간의 연장은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까지 가능하다.
3.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4. 현장실습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

실습기관은 양성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양성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현장실습계약의 변경과 해지

현장실습 중단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있을 시 현장실습을 중단할 수 있고, 중단 시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중단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10조 (실습비용)

실습비용은 _____ 원으로 하며, 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이 협의 하에 실습 이전 또는 이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준용)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성평등가족부 지침,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대표자	Ⓜ
현장실습생		성명	Ⓜ
양성기관명	000대학 000학과	학과장	Ⓜ

현장실습생 기본자세

실습생 마음의 준비

1. 실습생은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만나게 되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지도사와 동일한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책임감과 긍정적인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2. “나는 실습생이니까”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하나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며,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더욱 알찬 실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관의 직원 및 다른 학교의 동기 실습생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4. 실습에 충실히 임하여 기관으로부터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습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현장경험을 익힐 수 있도록 자원봉사나 예비지도자 등으로 지속적인 유대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습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기관의 정책과 규정을 준수하고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여 친화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6.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현장의 모습에 당황하거나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평’과 ‘고민’이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습생의 바람직한 근무자세

1. 출·퇴근 시간 및 조회/평가 등의 약속시간을 잘 지킵니다.
2. 결근, 지각, 조퇴는 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습니다.
3. 실습일지는 그날그날 기록하고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으로 기록합니다.
4. 개성을 존중하되,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가급적 검소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 하도록 합니다.
5. 항상 상냥하고 고운 말씨와 부드러운 웃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합니다.
6. 실습생이 사용한 장소는 항상 정리 정돈하여 청결을 유지합니다.
7. 실습생은 실습기간 중에 사적인 업무는 다루지 않습니다.
8. 실습기관의 서류나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습니다.
9. 실습생은 실습담당자의 승인과 지도하에 청소년지도에 참여하고, 공식적으로는 경어를 사용하며 청소년을 공정하고 우호적으로 대합니다.
10. 실습 중 알게 된 기관의 주요사항이나 청소년의 사적인 정보를 사전에 합의된 목적(대학실습 지도 등)이외에는 절대 발설하지 않으며 사전 합의가 되었다더라도 개인정보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합니다.
11. 정치나 특정 종교에 대한 성향을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12. 안전사고 예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본인의 안전은 물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항상 돌아보고 조심합니다.
13. 과제물은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고 출근 전에 작성을 마칩니다.
14. 기관의 명칭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실습생의 신분을 지킵니다.
15. 실습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라도 실습비 이외에 사례금 등의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6. 실습 중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실습지도자와의 우선적 면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습일지

실습기간 (00주차)	0000년 00월 00일 ~ 00월00일	실습시간	_____ 시간
실습 내용			
소감 및 자기 평가			
실습생		인	실습지도자
			인

실습기관 분석보고서

성명		기관명	
실습지도자		실습기간	

1. 기관 주요현황

- 가. 시설개요
- 나. 기관의 설립목적
- 다. 주요연혁
- 라. 조직 및 인력구조
- 마.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 바. 기타 기관 이해자료

2. 사업현황

- 가. 주요사업
- 나. 특화사업
- 다. 지역 및 기관연계

3. 실습프로그램

실습일정	실습프로그램

4. 본 기관을 선택한 이유

5. 기관의 특징

기관방문 분석보고서

실습생명		방문기관명	
기관주소			
기관담당자		연락처	

1. 기관현황

- 가. 시설개요
- 나. 기관의 설립목적
- 다. 주요연혁
- 라. 조직 및 인력구조
- 마. 기타 기관 이해자료

2. 사업현황

- 가. 주요사업
- 나. 특화사업
- 다. 지역 및 기관연계

3. 기타사항

- 가. 방문목적 및 기관 선택 이유
- 나. 질의사항
- 다. 습득정보
- 라. 기관의 특징

현장실습 자기평가 계획서

학과		이름	
학번		연락처	
실습기관		실습기간	
지도교수		실습지도자 (연락처)	
개인적 목표		전문역량 목표	

현장실습 자기평가 중간보고서

학 과			이 름		
학 번			연락처		
실습기관			실습기간	~	
지도교수			실습지도자 (연락처)		
항 목		달성수준 (1-10점)	항 목		달성수준 (1-10점)
개인적 목표달성 정도	1. 청소년 이해 증진		전문역량 목표달성 정도	1. 청소년사업 기획	
	2. 청소년기관 이해			2.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3. 직업적 정체성			3. 청소년프로그램 실행	
	4. 의사소통 함양			4. 청소년생활지도	
	5. 전공 적합성			5.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신고	
합계			합계		
책임감/ 성실함	현재까지 실습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했는지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까지의 결석, 지각 등 실습기관 과제물 수행 및 참여도 정도 실습기관에서의 지적사항 등 				
어려움/ 문제점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정 중에 어려움과 문제점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담당 지도자 또는 실습동료와의 관계 어려움 실습내용 중 어려움 등 				
남은기간 집중영역	남은 실습기간 동안 무엇을 더 경험하고 싶은지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행정 및 회계 관련 내용 등 				
기관 요청사항	남은 실습기간 동안 기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 간담회, 지역 타 기관 방문 등 직무와 관련된 경험 등 				
총평	위의 내용을 토대로 총평을 작성				

현장실습 자기평가 최종보고서

학 과			이 름		
학 번			연락처		
실습기관			실습기간	~	
지도교수			실습지도자 (연락처)		
항 목		최종 (1-10점)	중간 점수	항 목	
개인적 목표 달성 정도	1. 청소년 이해 증진			전문역량 목표 달성 정도	1. 청소년사업 기획
	2. 청소년기관 이해				2.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3. 직업적 정체성				3. 청소년프로그램 실행
	4. 의사소통 함양				4. 청소년생활지도
	5. 전공 적합성				5.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신고
합계				합계	
개인적 목표 달성 점검		-중간 자기 평가와 비교하여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높은 영역은 무엇이며, 중간보다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높은 이유, 중간보다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 등을 작성하도록 함.			
전문역량 목표 달성 점검		-중간 자기 평가와 비교하여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높은 영역은 무엇이며, 중간보다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높은 이유, 중간보다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 등을 작성하도록 함.			
최종 자기분석	청소년지도사로서 강점	-개인적 목표와 전문역량 목표 중에서 자신의 강점 역량을 작성하고, 이 역량이 앞으로 청소년지도사로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 등을 기술			
	청소년지도사로서 약점	-개인적 목표와 전문역량 목표 중에서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역량을 제시하고, 이러한 약점이 청소년지도사로서 어떤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인지를 기술			
역량개발 계획		-강점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기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기술			
현장실습 후 나의 변화		-현장실습 후 청소년기관 및 시설에 대한 변화된 인식은 무엇인가?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는가? -현장실습 후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등을 기술			
진로계획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이 나에게 적합한가? -청소년지도사가 된다면 어떤 시설에서 종사하고 싶은가?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할 자격증은 무엇인가? -향후 어떤 봉사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PART

V



실습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 V-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 V-2. 실습기관의 범위와 실습지도자의 자격
- V-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사전 준비
- V-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 V-5. 실습기관의 평가
- V-6. 실습기관 Q&A
- V-7. |부록| 실습기관용 서식 모음

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개념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대학 등 양성기관에서 청소년 관련 전공을 이수한 학생이 현장에서 이론과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보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실무 역량과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임.
- 이는 단순한 인턴십이 아니라, 국가자격 취득과 연계된 교육적 실습으로서, 청소년기관과 대학이 함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책임지는 협력 프로그램임.
- 따라서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이 현장에서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2. 현장실습의 목표와 의의

- **이론과 실제의 통합**
 - 실습은 대학에서 학습한 청소년 관련 지식과 기술이 청소년사업·상담·활동 등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함. 지도자는 실습생이 이러한 연계 과정을 이해하도록 안내해야 함.
- **예비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 실습을 통해 실습생은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 행정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 지도자는 학생이 단순 보조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청소년사업의 흐름과 목적을 이해하며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함.
- **현장 이해와 기관 적응**
 - 실습은 기관의 구조, 역할, 운영방식, 조직문화를 익히는 과정이기도 함. 지도자는 실습생에게 기관의 역사, 주요 사업, 청소년 대상군 등을 설명하고, 업무 참여를 통해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해야 함.
- **직업정체감 형성 지원**
 -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활동가가 아니라 전문 인력임.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이 현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피드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기관과 지역사회에의 기여**
 - 실습은 기관에도 의미 있는 과정임. 실습생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얻고, 지역 청소년사업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됨.

3. 실습기관의 자격과 책임

- **실습기관 자격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만 실습을 운영할 수 있음.
 - ▶ 「청소년기본법」기관: 청소년단체, 한국·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 ▶ 「청소년활동진흥법」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 ▶ 「청소년복지지원법」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이주배경청소년센터 등
 - ▶ 「학교밖청소년지원법」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기타: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대안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학생수련원, 해양수련원 등이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실습이 가능

- **실습지도자 요건 및 배치**

- 자격: ①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② 2급 자격증 + 자격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 배치: 상근자 1명 이상 필수, 동일 시간대 지도 인원은 10명 이내 → 지도자가 없는 기관에서는 실습 불가

- **운영 시간 기준**

- 총 130시간 이상, 15일 이상 실습
-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일, 야간(22~06시) 금지
- 1일 4~8시간, 주 40시간 이내
- 필요시 학생 동의 하에 주 5시간 한도 연장 가능

4. 실습과정의 구성

- 4가지로 구성되며 이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건에 해당하며, 누락 시 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 실습오리엔테이션: 실습 전 1회 이상 실시 (안전교육·윤리교육 포함)
 - 현장실습: 실습기관에서 130시간 이상 수행
 - 실습세미나: 1회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 (주 1회 초과 불가, 원격시 1회 이상 대면 필수)
 - 최종평가회: 실습 종료 후 1회 이상 (보고서 발표·피드백 공유)

5. 실습지도자의 역할

- **교육적 지도자 역할**
 - 실습생이 기관의 목적과 사업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 프로그램 참여 시 목적·대상·성과를 함께 점검함.
- **현장 코치 역할**
 - 실습생에게 과제나 역할을 부여하고, 수행 결과를 피드백함. 성취보다 과정 중심의 학습을 강조함.
- **윤리·안전 관리자 역할**
 - 실습생에게 기관의 안전 지침,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 규정을 숙지시킴. 사고·위반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실습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시설등록상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말함.
-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지부·지회를 말한다.)는 같은 법 제3조 8의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이 외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법」상의 쉼터·보육원·다함께돌봄(키움)센터·자립지원기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대안학교, 각 지자체(교육청)가 설치한 학생교육원·학생수련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아이월센터),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실습기관으로 가능. 이 경우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업무를 수행하고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실습지도자(1명 이상)가 근무하고 있어야 함.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습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6.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7.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8.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9.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1.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고시에 따르면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양성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해 양성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3조(실습기관 협약체결) ① 양성기관은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실습기관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의 전문성, 실습기관 실습환경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현장실습 실시기간 및 장소
2.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3.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실습비 등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③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 시설, 단체 등을 실습기관으로 선정하고 제3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2. 실습생의 보건·위생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실습생의 현장교육과 실습지도가 가능한 조건의 구비 여부

- 실습기관으로서 실습생의 보건·위생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실습운영이 가능한 조건의 구비 여부 등은 고시 규정 사항과는 별개로 실습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며, 이를 바탕으로 양성기관인 학교와 실습기관의 상호 책임있는 실습 운영체계 마련과 추진을 위해 협약을 반드시 체결할 필요가 있음.

3. 실습기관의 고려 및 권고사항

- 기관 차원의 사항
 - 현장실습의 합목적성 : 실습기관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전문성 및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실습기관의 기관장 및 직원은 청소년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실습에 관한 목적의식과 책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조직 구성원 전체의 의사결정 :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장 뿐만 아니라 실무에 연관된 기관 공통의 이해와 협업이 필요하므로 조직 구성원 전체가 참여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 실습 운영의 지속·성장 가능성 고려 : 실습 내용은 현장 전문성 체득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전문적·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함. 동시에 기관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실습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기관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 계획과 실제 운영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실습지도 업무의 공식화 : 실습지도가 기관의 기본적인 고유목적사업의 하나로 공식화되어 실습 운영이 기관의 조직 문화로 자리잡아야 함. 이를 통해 실습지도자를 비롯한 청소년지도자들이 원활한 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지도에 필요한 적절한 업무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한 적절한 실무 인력의 확보와 배치가 병행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실습에 필요한 공간 확보 : 실습교육을 비롯하여 실습생의 업무 수행(일지 및 보고서·계획서 등 작성, 회의, 상담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함. 기관 여건이 부족할 경우 사무실 내 지정 공간(회의테이블 등)을 활용하되, 업무 자료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양성기관과 관련된 고려사항

- 양성기관과의 협약 체결 : 실습과 관련된 필수 요소(기본 요건, 안전, 교육 및 평가 등)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긴밀한 협조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상호 책임 있는 실습지도를 통해 실습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
- 지역기반 양성기관 연계 : 실습기관이 위치한 지역 기반의 양성기관과 우선적인 연계·운영으로 실습생의 원활한 확보·운영과 더불어 실습 이외의 다양한 연계 기반을 마련함.
-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등의 지속적 확인 :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실습 모집을 진행하고, 학교 현장에서 다루기 어려운 현장 중심 실습교육 내용을 반영함.

● 실습생과 관련된 고려사항

- 실습기관 특성·가치관 명시 : 실습기관의 특성, 가치관, 설립 취지, 운영 형태 등을 선발 과정에서 실습생에게 미리 알려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실습생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념(종교 등)이 기관의 운영(근무일, 근무시간 등) 형태나 가치관·취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피교육생의 신분에 맞는 적절한 업무배정 : 실습생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배정하거나 단순 보조 인력이 되지 않도록 업무 구조와 분위기를 갖추어야 함.



실습지도자

1. 정의 및 배치

- 실습기관에 상근하는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 2급 청소년지도사로서, 실습생이 실습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습 전과정을 지도하고 조언하며 평가하는 담당자임.
- 실습기관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하고 있어야 함. 하나의 과정,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 1인당 지도하는 실습생은 최대 10명이 넘지 않게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해석상 기관 내에 실습지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에 따라 실습생이 각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10명씩 더 지도 가능. 다만 실습지도자의 업무량, 교육 내용의 질적수준 확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4명 이내의 실습생 지도를 권고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8조(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한다) 이상인 사람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 ①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가 지도하는 실습생은 1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2. 실습지도자의 자질과 고려사항

- 실습지도자는 실습의 계획 수립부터 모집, 운영,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의 실습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전문성과 숙련도, 자질, 기관 내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
- 실습지도자는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충분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청소년 현장의 실무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함.
 - 청소년지도의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는 실제의 사업과 활동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는지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자질을 갖추어야 함.
 -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접목해 보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실습생들이 관련학과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실천적 내용으로 무엇을 학습하는지', '관련 법이나 제도, 정책의 변화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숙지
-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에게 지도자이면서 지지자, 상담자, 선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실습생의 다양한 의견 및 질의, 건의 사항 등을 수용하고 설명 및 피드백할 수 있어야 함.
- 실습기관 내 다양한 구성원과의 협의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행정 조직 및 자원, 지도 업무 분담을 하고 때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까지 유도할 필요도 있으므로, 일정 직급과 경력이 있는 지도자가 실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이 필요함. 실제 여러 명의 실습생을 지도하는 경우, 기관의 여러 청소년지도자와 '멘토-멘티'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때 실습지도자의 기관 내 지위 등에 따라 기관 청소년지도자의 참여 여부 및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실습지도자에게는 실습생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짐. 이는 단순히 실습 과정에 대한 개인별 학습 결과를 산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습생의 성찰과 성장을 이끄는 또 하나의 교육적 과정이므로,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
- 실습지도자는 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안전한 실습 수행의 1차적 책임자로서 전반적인 안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안전교육 또한 직접 지도해야 함. 여기에는 위생과 성희롱 및 폭력 관련 예방 사항도 포함됨.
- 실습기관의 실습 목적은 기관 차원의 성과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실습지도자의 역량 강화와 성장에 기여하는 것임.
 - 청소년지도사 정체성 재정립 : 청소년 관련 인구·사회적 변화(청소년 인구 감소, 후기 청소년으로의 대상 확대 등)와 지도자 개인의 지도 연차 증가로 인해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의 대상 연령층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됨. 이에 따라 실습지도 과정은 청소년지도자로서 후기 청소년 지도 및 후배 지도자 양성 경험을 통한 또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함.
 - 새로운 지식과 기술, 트렌드의 경험 : 비교적 후기 청소년(19~24세) 연령대의 실습생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실습 과정을 통해 새롭게 접하는 내용들을 두려움 없이 활용하며 관심과 흥미를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함.
 - 낮은 시각으로의 자극 : 기관의 일상적·반복적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습생을 통해 비교적 청소년과 가까운 연령대이면서 예비 청소년지도자인 제3자의 시각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 필요.
-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했던 실습지도자들의 집단워크숍에서 다음과 같은 '청소년 현장실습 실습지도자의 자세(윤리강령)'를 만들었으며, 이는 실습지도자로서의 자격만큼 중요한 기본적·필수적 자질을 잘 정리하고 있음.

우리는 실습지도자로서 실습생이 성공적인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책임성과 사명감의 마음을 갖는다.

하나, 우리는 실습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하나, 우리는 실습생이 예비청소년지도자로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하나, 우리는 실습생이 비전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실습생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감하고 소통한다.
 하나, 우리는 실습 평가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하나, 우리는 실습지도자로서 지속적인 배움과 실천적 자세를 갖춘다.
 하나, 우리는 실습생이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한다.

[표 V-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지도자의 자세(윤리강령안)

* 출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관련 현장전문가 집단워크숍, 201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V-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사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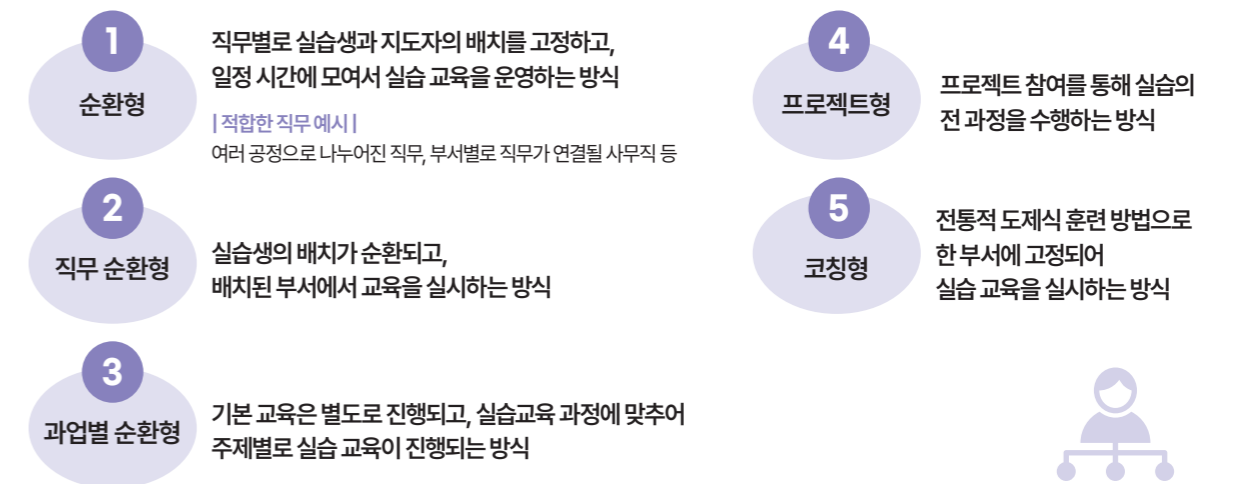
1. 실습지도 계획 수립

- 청소년기관이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운영과 절차 등을 포함한 기관 차원의 내부 실습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실습지도 계획에는 실습의 목적과 목표, 실습운영 개요, 홍보 및 모집계획, 자원활용계획, 평가계획, 예산, 행정사항 등이 제시될 필요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성평등가족부 고시 등 법 개정 및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항을 실습지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실습지도 계획의 수립 시 실습기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습운영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 작업이 필요. 또한 변화된 실습 운영 방식과 정책이 실습 운영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도 사전 교육을 통해 실습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지식이나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전환해야 하며 실습평가에 대한 절차와 규정, 근거 등도 익힐 필요
- 실습신청서 등 실습생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실습생의 교육적 요구와 기대, 장, 단점 등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실습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2. 현장실습의 방식과 일정 결정

- 청소년 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여건과 실습생의 상황·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실습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됨.
- 현장실습은 청소년기관, 실습생, 영향을 받는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습 일정과 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함.
- 현장실습 운영 방식은 청소년기관의 종류·유형·규모 등을 고려해야 함. 표에 제시된 운영 형태는 현장실습과 구조가 유사한 일학습병행제의 현장 교육 훈련 방식을 참고로 제시함. 일학습병행제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숙련도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실습생 신분은 다르지만 현장 교육 훈련 방식에서 공통점이 많음.

[표 V-2] 현장실습 운영 방식



*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용 현장교육훈련 및 내부평가 운영 가이드.

- 청소년기관이 현장실습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실습 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 예를 들어 4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과정에 실습생이 참여하게 된다면 참가자의 홍보와 모집, 오리엔테이션, 회기별 프로그램, 평가 등 단위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집중적인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음. 다만 매주 토요일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방식이 적합한 기관이나 실습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방학을 중심으로 4주간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청소년기관은 학교의 방학을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실습을 하게 된다면, 캠프, 축제 등 단위 프로젝트를 밀도 있게 경험할 수 있음.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확대되어 방학 시기 중심의 실습 교육이 효과적임.

3. 실습생 모집

- 실습생의 모집은 크게 청소년기관과 양성기관의 협약에 의한 모집과 청소년기관의 모집 공고를 통한 실습생 선발로 나눌 수 있음.
- 협약에 의한 방식에서는 청소년기관의 실습 운영 계획에 따른 실습가능 인원과 양성기관의 실습 대상 인원을 양자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청소년기관이 실습생을 선발하는 방식 대신, 양성기관에서 의뢰하는 실습생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모집을 통한 방식에서는 실습생 모집 과정에서 청소년기관 자료(기관 소개·실습 계획 등)와 실습생 정보(신청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동의서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과도한 정보 수집이나 필수 정보 누락을 피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좋음.

4. 실습생 선발

- 청소년기관에서 공고를 통한 실습생의 선발은 청소년기관과 실습생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임. 기관 측에서는 운영 방향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인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실습생 측에서는 교육 효과 극대화와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함.
- 실습생 선발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기관 상황에 맞게 선택 운영하되, 모집 공고와 실제 과정의 일치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서류심사의 경우 심사 판단기준에 필요한 내용이 신청서를 통해 수집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과 내용 기재란 등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단순 개인정보만 기재된 서류를 가지고 실습생을 선발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으므로, 자기소개서나 기타 실습생의 요구와 경험, 실습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음. 너무 많은 자료의 요구는 실습을 신청하는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수준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음.
- 서류심사는 채점표를 마련하여, 기준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음. 서류심사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심사에 따른 배점이나 가중치 등은 실습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심사의 배점표를 사전에 실습생 모집 공고에 제시하면 실습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실습 교육의 방향과 중요 고려 사항이 신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음.

- 면접심사의 경우 실습생의 선발과 채용 과정에서의 직원선발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접심사 과정에서 면접관에게 충분한 고지하는 것이 좋음. 예를 들어 채용 면접은 기관의 입장에서 사람을 선발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현장실습은 학습자의 관점에서 적절한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임.
- 면접과정에서 실습기관과 실습생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습기관과 실습생 모두 실습 과정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병행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음. 서류심사에서 적격 여부만 판단하고, 적격자에 한해 면접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있고,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종합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도 있음. 실습기관의 상황과 실습생 모집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법을 선택하되 서류심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류와 면접을 병행할 경우에도 선발 과정에 대해 사전 공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음.

5. 실습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

- 실습교육 공간은 실습생이 통상적으로 100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써, 실습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교육 집중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습교육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음.
- 청소년기관의 상황에 따라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만, 실습생의 근무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실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실습교육을 위한 공간의 확보에는 실습생의 처우에 대한 환경도 포함되므로, 실습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음.
-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도 필요함. 직원들의 경우 잠금장치 등이 있는 서랍이나 보관장 등이 있지만 실습생의 경우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제공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상정하여 개인용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실습 운영 과정에서 실습생에 대한 지도 및 고충 등을 청취하기 위한 상담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용공간이 아니더라도 실습생과의 면담 시 필요한 공간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회의장소는 하루의 일과에 대한 설명이나 하루의 실습과정을 마친 후 자체 평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실습생들이 실습 과정에서 제시된 과제 등을 수행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음.
- 청소년기관의 사무실에서 실습을 진행할 경우 현장에서 지도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나 전화응대, 행정적 처리 등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청소년기관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보안이 필요한 문서 등의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실습생에게 업무 현장을 노출시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감도 감안하는 것이 좋음.

6. 실습생 출결관리를 위한 준비

- 청소년기관은 실습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습생의 출결관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출결 관리는 평가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실습 운영에 대한 공적인 감시에 대한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임. 수기에 의하거나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준비를 위한 고려 사항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전자 출근부나 전자 지문 인식 등의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인 경우, 사전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통상적으로 실습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습생의 출결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실습생 계약서와 서약서 작성

- 청소년기관은 양성기관으로부터 실습생의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결과서를 확인 후 실습계약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실습계약서는 필요에 따라 계약의 주체를 변경할 수 있음. 예시 안은 청소년기관, 양성기관, 실습생을 계약의 주체로 보고 작성한 내용이며, 각 기관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부 고시나 기타 규정, 관련 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관에서는 법의 개정 사항이나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V-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실습생에게 제공되는 실습 내용

1. 추진절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준비와 기초업무역량 학습을 중점으로 하는 전반기실습과 중간 점검 및 개선점을 찾는 중간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업무수행 및 실습평가를 수행하는 후반기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아래 그림과 같이 추진됨.



[그림 V-2] 현장실습 추진절차

* 출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2016).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매뉴얼.

2. 실습내용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③ 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에 제시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1.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지도에 대한 이해
2.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의 실제
3.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내용을 각 기관유형 등 여건에 맞게 다양한 지도방법 등으로 추진절차에 맞춰 필수 구성하여 계획, 운영하여야 함.
- 그 외 기관의 특성화 등을 반영한 지도방법 등을 추가로 선택하여 계획, 운영 할 수 있음.

3. 전반기 실습

- 운영목표
 - 실습생들이 실습기관의 운영현황(운영비전과 역할의 이해, 조직구성과 역할, 기관업무의 흐름과 행정적 절차, 사업운영의 현황 등)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에게 요구되는 기초적인 업무역량(지식, 기술, 태도)등을 학습함.

4. 전반기 실습과정

● 오리엔테이션

- 실습 기관과 실습교육 과정에 대한 상세이해, 관계 형성, 업무(근무)를 위한 기본 행동 지침(안전, 성희롱 예방) 등을 위한 사전 교육과정으로 구성함.

프로그램	세부내용	비고
실습기관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설립목적(비전), 연혁, 주요사업, 조직구성 및 역할 소개 기관이 속한 지역사회현황소개 직원인사 및 소개(기관장 인사, 실습책임자, 부서별 직원 들 소개 등) 	PPT 및 한글자료준비 (기관)
실습생 실습학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에 참여한 참가자의 개별소개(자기소개, 실습 및 자원봉사경험, 실습에 대한 의지 및 욕구 등) 및 소속 학교에 관한 소개(연혁, 학과특성 등) 	학교소개용 안내 자료 (실습생준비)
관계형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생간, 실습지도자와 실습생간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활동 	실습지도자
실습교육 과정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기관이 편성한 실습교육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각 과정별 과제를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질의응답 및 추가적 실습 과정에 대한 욕구파악 시간을 통하여 실습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습과정에 흥미를 높인다. 	세부실습 운영계획서 준비 (기관준비)
기관(시설)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이 시설인 경우 실습담당자의 안내로 시설을 견학하게 한다. 시설의 위치와 서비스 및 이용현황,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숙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배치도
평가 및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책임자와 실습담당자는 모두 평가 및 마무리 자리에 실습생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실습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소감과 향후 실습기관에 대한 느낌, 실습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등을 상호간에 나누게 하며, 향후 실습에 대한 평가 및 건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실습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실습의 시작과 종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6시 - 실습종료 후 실습일지 작성, 실습평가회참석 실습일지 샘플을 제공하여 실습일지작성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실습일지를 작성하고 귀가시킨다. 	실습일지

[표 V-3] 운영계획 예시

* 출처: 성평등가족부(2025), 청소년5대학회(2023),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2025).

● 집단 지도 관찰 및 지도 실습

목 표

-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선배 청소년지도사들이 수행하는 집단 활동과 프로그램 진행을 관찰하고 지도 기술과 태도를 탐색함.
- 사전에 수립한 집단 지도 계획을 토대로 직접 청소년 집단을 지도해봄으로써 선배 청소년지도사들로부터 관찰한 지도 기술과 태도 등을 적용함.

주요내용

- 기획프로그램(일일 체험 프로그램, 가족 캠프, 워크숍, 연수 등)의 관찰과 보조
- 자치조직 활동(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원봉사단, 국제청소년취포상제 등) 관찰과 직접 지도 실습
 - ▶ 관계 형성 프로그램 진행, 회의 및 토론 진행 등
- 대집단 프로그램 사회(레크리에이션, MC 등) 실습
- 관찰 및 지도 평가 보고 및 토론 활동을 통해 필요한 집단 지도 기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집단 지도 관련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 사항을 점검함.

● 단체생활 지도 실습

목 표

- 청소년 생활지도 실습을 통해 학기 중에 실시되는 청소년 캠프와 교육과정 운영시 필요한 생활지도 기술을 익힘.

주요내용

- 청소년 캠프(청소년 주말 캠프, 가족 캠프 등)에서 생활 지도 실습
- 청소년 및 지도자 교육과정(연수, 워크숍 등)에서 생활 지도 실습

● 시설 이용 지도 실습 (각종 이용 거리 및 대관 서비스 실습)

목 표

- 청소년 활동시설 이용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용 거리, 대관 등)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법을 학습함.

주요내용

- 시설 대관 운영 관리실습, 이용 거리 이용 관리 실습, 시설 이용 안내 및 프로그램 안내 실습, 시설 이용 불편 건의 사항 접수 및 조치 관리 실습 등



● 시설 운영 모니터링 실습

목 표

- 청소년활동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 청소년지도사가 실시하는 시설 운영 현황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결과 분석, 해결 방안 마련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함.

주요내용

- 시설 이용 모니터링(이용 거리, 장비/설비 이용, 시설 대관 등), 프로그램 모니터링

구분	내용	점수			Comments
		3	2	1	
1	- 시설 내부의 환경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		시설이 매우 건조하며, 환기가 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답답한 느낌을 준다.
	-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탁자, 의자, 음료수대, 휴지통 등)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		원형기둥에 있는 의자가 노후되어 삐그덕 거린다.
2	- 이용거리는 이용자의 성별, 연령, 욕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			
3	- 이용거리는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까?	○			
4	-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적절한 안내와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까?		○		안내데스크와 사무실이 있으나, 안내데스크의 유무를 알기 힘들고 사무실은 아이들이 출입하기에 불편함이 있다.
5	- 시설내부에는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곳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			공연연습실 같은 경우 맨발로 활동하는 곳이다 보니 다칠 위험성이 높다.
6	-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가 정상인 상태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	소화기의 유통기한은 8년인데 시설에 있는 소화기 모두 7년 또는 8년 이상 된 소화기이다.
7	- 식수대는 청결합니까?	○			
8	-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언제든지 쉽게 접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	시설 내에 불만을 말할 수 있는 함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9	-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일반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불편사항은 개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0	- 이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까?		○		
11	- 시설대관의 절차와 과정은 편리합니까?	○			
12	- 시설 내 이용공간별 설치목적에 적합한 물품과 장비가 이용 가능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	공연 연습실에 앰프가 있으나 공연을 하기에는 앰프의 규격이 작고 상태도 좋지 않다. 또한 공간이 좁아 연습을 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다.

[표 V-4] 모니터링 보고 실습 예시

* 출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구센터 (2016).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매뉴얼.

● 활동 장비·기자재 활용 실습

목 표

- 활동 장비 및 기자재 운용·관리 실습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활동 장비 및 기자재 사용법을 익힘.

주요내용

- 음향 및 조명 장비(마이크, CD플레이어, 콘솔, 핀조명 등) 조작실습
- 빔프로젝터 설치 및 멀티미디어 기기(노트북, 휴대폰, MP3 등) 연결 조작 실습
- 공동체프로그램 장비(도미노, 단체줄넘기 등) 설치 및 운영 실습 등

● 활동 안전지도 및 관리 실습

목 표

- 현장 대처 능력 기술 실습을 통해 청소년 현장에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대처 능력을 함양함.

주요내용

- 현장 대처 능력 기술 실습은 청소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사시 상황의 사례와 유사시 상황 대처 능력(안전사고 예방법, 응급처치 요령, 비상연락망 구축 등)으로 구성

5. 실습 중간평가(선택과정)

- 전체 실습 일정의 50%가 지나는 시점에서 중간 평가회를 실시할 수 있음.
- 평가는 실습생 평가와 실습지도자(실습책임자, 실습담당자 등)의 평가로 구성함.
- 실습생 평가는 실습생들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에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중간평가 양식을 제공하고 양식에 의거해 중간 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기타 실습에 대한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발표하게 하는 것이 좋음.
- 평가 항목은 '실습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적절성', '실습지도자의 지도력',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실습 진행 방식에 대한 건의 사항' 등으로 구성하되, 실습 기관별로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좋음.
- 실습담당자는 지난 실습 과정에 대한 실습생들의 실습 과정에 대한 참여 태도, 행동의 변화 수준,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 수준 등에 대한 자료를 개별로 준비하여 제공하고 피드백함.
- 평가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경직되지 않게 실시해야 하며, 기관과 실습생들과의 원활한 소통 관계를 만들고 친밀감을 형성하게 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 하반기 실습 운영에 반영하여, 실습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현장실습 중간평가서

성명		학교	
학과		학번	
실습기간			
실습지도자			

1. 실습 전반

- 가. 실습일정
- 나. 실습내용
- 다. 실습지도자

2. 실습목표

- 가. 목표
- 나. 목표의 적절성 및 수정

3. 대인관계

- 가. 실습지도자 및 기관내 직원
- 나. 동료 실습생
- 다. 청소년

4. 실습을 통해 배운 점(행정, 지도, 기획 등)

5. 자신의 발전을 위해 보완할 점

6. 실습기관 및 지도자에 대한 건의사항

[표 V-5] 현장실습 중간평가서 예시

* 출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2016).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매뉴얼.

6. 후반기 현장실습

- 실습의 구체적인 교육 및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실습생에게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 직무와 관련한 실제적 업무역량을 기르도록 함.

7. 후반기 실습과정

- 프로그램기획과 운영의 실제 실습

목표

-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정을 직접 실습하여 기획력·실행력·평가능력을 함양함.

주요내용

- 프로그램기획과 설계, 프로그램 운영 관리, 프로그램 평가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사업기획서 작성, 인증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단위 활동(프로그램) 지도안 작성, 세부 실행계획서 작성,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개발,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작성 실습, 프로그램 마케팅 홍보(홍보자료의 제작과 실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함.
- 가능하면 실습생이 기획의 전 단계를 모두 직접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능할 경우 기획의 일부라도 직접 맡아 업무를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함.

	목표	내용
프로그램 기획의 실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기획기법을 습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기획의 개념과 절차 이해교육 ● 프로그램기획안 작성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청소년프로그램기획서 사례분석발표 ● 프로그램기획(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에 관한 기본교육이 끝난 후 과제물로 제출하게 한다. - 기획과제는 기관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 유형과 실습의 형태(학기중, 방학중)를 감안하여 적합한 과제를 부여한다. - 중간점검을 거쳐 기획(안) 수정 보완 ● 기획안 브리핑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지도의 단계교육 ● 지도 시 유의사항 교육 ● 프로그램운영단계별 처리업무 및 점검사항교육 ● 프로그램운영계획서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운영 모니터 및 보고서제출 ● 프로그램 지도 실습

[표 V-6] '프로그램기획과 운영의 실제' 설계 예시

* 출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2016).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매뉴얼.

● 프로그램 마케팅·홍보

목 표

- 프로그램 마케팅·홍보를 통해 청소년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이해함.

주요내용

- 프로그램 마케팅·홍보는 기관 전체 홍보 과정(홈페이지, 리플렛, 소식지 등)과 사업 및 프로그램별 홍보 과정(현수막, 보도자료, 온라인배포용 자료 등)으로 구성됨.

● 설문분석 실습

목 표

- 프로그램의 평가를 기초적인 평가도구인 설문지의 개발과 통계 분석 역량을 키움.

주요내용

- 설문 분석 실습은 설문 문항 작성 요령, 만족도 설문지 작성법, 효과성 설문지 작성법, 설문 통계 및 분석 등으로 구성됨.

● 행정실습

목 표

- 행정문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현장실무자의 행정능력을 키우도록 함.

주요내용

- 사업 기획 과정 관련 문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근태관리 관련 서류 실습, 예·결산서 관련 문서 이해하기, 구매 관련 문서 사례 검토 및 작성 실습 등 실습기관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행정 서류 중심으로 구성됨.

●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목 표

-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청소년활동의 다양화, 마을 기반 청소년 활동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한 청소년지도사의 주요 과업 중 하나로 여겨지며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고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성장을 도모함.

주요내용

- 지역사회 탐방(청소년시설 및 유관기관 방문), 지역사회 및 청소년 욕구 조사 분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사례) 조사 분석하기 등으로 구성함.

● 지역사회 탐방 및 보고 실습(지역 네트워크, 유관기관)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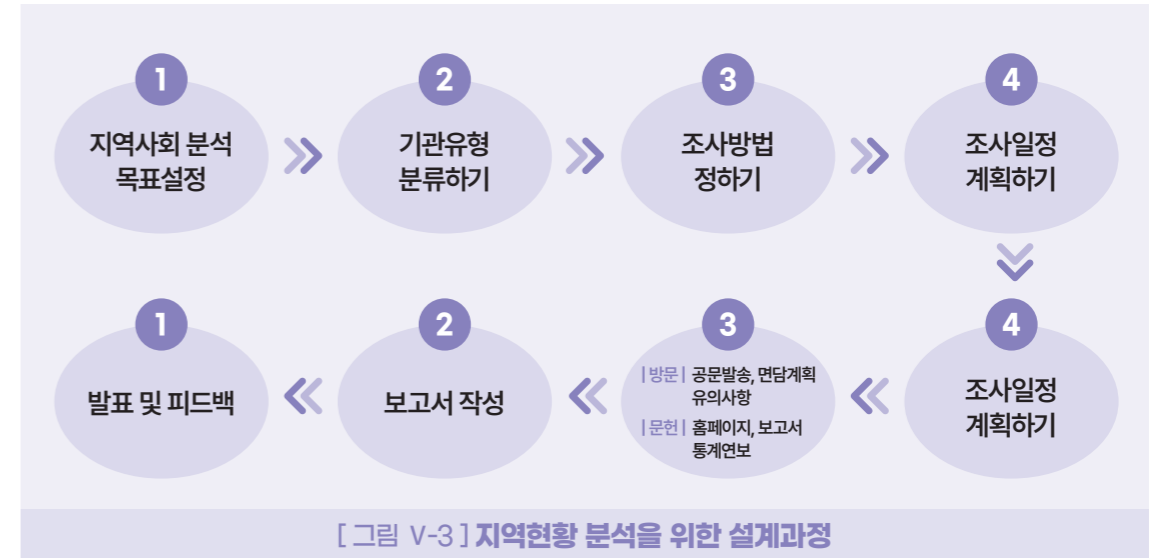
- 지역사회 기관 탐방을 통해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청소년 유관기관(관한 지방자치단체 주무 부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관 등)을 이해함.

주요내용

- 청소년 유관기관 현황 조사 및 탐방 계획 수립
- 기관 탐방보고서 작성 및 발표(종합토론)



* 출처: 청소년관련 5대 학회(2023). 청소년 현장실습. 교육과학사.



* 출처: 청소년관련 5대 학회(2023). 청소년 현장실습. 교육과학사.

● 지역사회 욕구 조사 및 분석 실습

목 표

- 지역사회 욕구 확인 및 자원 개발을 통해 양질의 청소년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욕구 파악 과정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을 알아봄.

주요내용

- 지역 청소년 욕구 분석 실습(지역사회 청소년인구 및 대상 분석, 기관 이용 청소년 분석, 기관 사업 참여 청소년의 욕구 조사·분석 등)
- 지역사회 자원 개발 실습(기관 사업별 지역사회 자원 분류 및 분석, 사업별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접근방법,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사례 등)

●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사례분석 실습

목 표

-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각종 활동프로그램의 사례를 조사해 봄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현황을 이해함.

주요내용

- 지역사회의 타 기관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정보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
- 수집된 프로그램 관련 자료 및 모니터 정보를 토대로 활동프로그램의 특성분석(필요성, 창의성, 논리성, 흥미성, 운영의 체계성, 예산 확보 방식과 집행의 효율성, 파급효과, 발전 가능성 등)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함.
- 보고서 양식은 자유롭게 하되, 특성 분석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사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하고 피드백 함.

● 선배 청소년지도사와의 만남

- 선배 청소년지도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철학, 현장 노하우 등 롤모델로서의 나눔을 통한 학습

● 멘토·멘티

- 선배 청소년지도사와 실습생의 1:1 멘토·멘티를 통해 실습 과정 전반의 도움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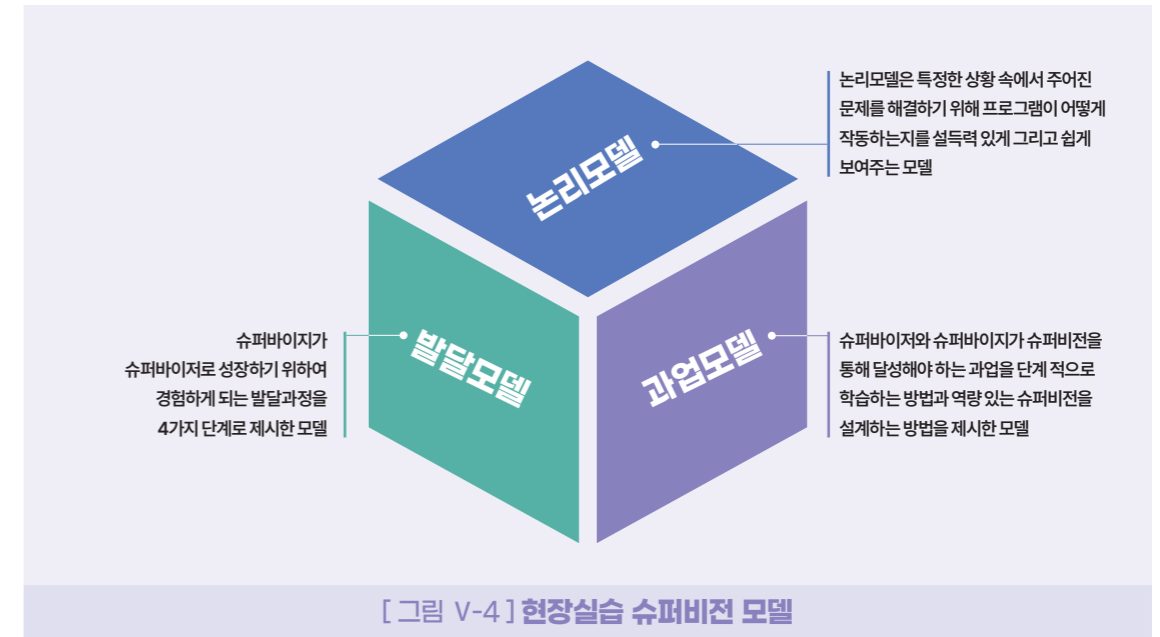
● 취업 준비·면접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등을 통해 현장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함.



현장실습을 통한 슈퍼비전¹⁾

1.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슈퍼비전 모델



*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사회복지현장실습매뉴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재구성.

이 3가지 대표적인 모델들을 활용하여 절충적으로 통합하여 슈퍼비전계획 설계에 활용할 수도 있고, 대표적인 논리모델을 활용하여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을 논리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이 있음. 논리모델은 청소년현장실습과 같이 실습생을 대상으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경우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과업모델은 기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경우에 더 적절함.

2.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슈퍼비전 모델(논리모델)

- 논리모델은 프로그램에 대한 논리적인 이론적인 모형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하나의 틀이라고 할 수 있음.
- 특정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림으로, 무엇이 투자되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시각적으로 표현해 낸 것임.
- 논리모델은 프로그램 구조와 조직을 정교하게 만들고 자체 평가를 적절하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됨.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사회복지현장실습매뉴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사회복지현장실습매뉴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사회복지현장실습매뉴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재구성.

3.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슈퍼비전 모델(과업모델)

- 미들맨과 로우즈(Middleman & Rhodes, 1985)는 '역량 있는 슈퍼비전'의 개념을 제시하며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양자 모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제시
- 각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과업과 학습에 필요한 구체적 전략과 기술을 제시해 놓은 것이 본 과업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역량을 갖춘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가 필요한 역량을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를 따라 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함.

목록	내용
행정	• 예산집행; 회계; 서비스 질 관리; 프로그램 관리; 목표관리; 프로포절 작성; 마케팅; 광고홍보; 직무분석; 우선순위결정; 회의주재
평가	• 욕구사정; 프로그램 평가; 모니터링; 정보추적시스템; 서비스 질 관리; 컴퓨터 사용; 연구방법론 익히기; 목표개발
교육	• 역할극; 모의실험; 목표설정; 학습계약; 인시타일의 활용; 학습; 특수영역(교류분석기법, 최면술 등)
전문직 사회화	• 역량사정; 윤리; 시간관리; 인생목표 설정과 관리
인간화	• 의사소통; 가치명료화; 차별철떼를 위한 행동; 평생직 계획
긴장관리	• 협상; 교섭; 교환이론; 스트레스 예방 긴장완화 기법; 갈등관리; 권력 다루기; 소진 예방과 관리; 주장훈련
옹호	• 로비; 설득; 강연; 토론; 법률체계의 활용
측매	• 명목그룹기법; 델파이기법; 브레인스토밍; 창조성; 인간잠재성; 두뇌; 동기화
변화	• 힘의 영역 분석; 조사; 네트워크 개발; 연합체 개발; 집단의 역동과 과정; 연구설계; 자료분석

[표 V-7] 슈퍼바이저에게 요구되는 과업지식과 기술의 예

*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사회복지현장실습매뉴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슈퍼비전 업무	내용
1. 교수 / 학습상황계획	• 맥락, 관계, 구조, 과정의 측면을 판단할 수 있음
2. 슈퍼바이저의 학습욕구사정	• 조직에서 요구한 과업사항: 슈퍼바이저의 이전 인생경험 및 공식적 학습과 경력: 기대나 관심, 능력, 신뢰감 등과 관련된 슈퍼바이저와의 실제적 대화 등으로부터 정보를 획득, 대화와 관찰을 통해 슈퍼바이저 학습스타일의 장점 파악
3. 슈퍼바이저와 계약	• 지도감독 합의의 규칙이 세워지고 슈퍼바이저의 관점으로부터 바람직한 교수의 강조점이 구체화
4. 서비스 및 학습을 위한 주요 목적을 공식화	• 시간계획표와 과정에 대한 평가방법, 그리고 목적달성 등 활용할 수단에 대해 토론하고 점검
5. 목적, 하위목적, 수행목표 등의 선택과 순서매김	• 우선순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차례, 강조점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줌
6. 학습을 위한 조건결정	• 목적(가르치는 방법, 학습과정에 더 포함시켜야 할 사람, 내용, 과정, 적용할 수 있는 구조적 요소 등)을 구체화
7. 슈퍼바이저와 함께 상호 계획된 슈퍼비전 디자인 시작	• 슈퍼비전 실시
8. 회습목표성취에 대하여 피드백을 주고 토론	• 교수의 일부로서, 정기적으로(주별 또는 월별로) 실시되어야 함
9. 슈퍼비전 디자인 업데이트	• 어떤 학습목표가 성취되었거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호 협력에 의하여 다른 또는 새로운 학습목표를 대치하거나 추가하고, 구체화된 시간의 과정을 사정하며, 새롭게 강조할 점이나 또 다른 교수·학습의 구성을 명확히 함
10. 슈퍼비전 디자인을 새롭게 정리	• 업데이트된 슈퍼비전 디자인을 새롭게 정리

[표 V-8] 과업모델 슈퍼비전의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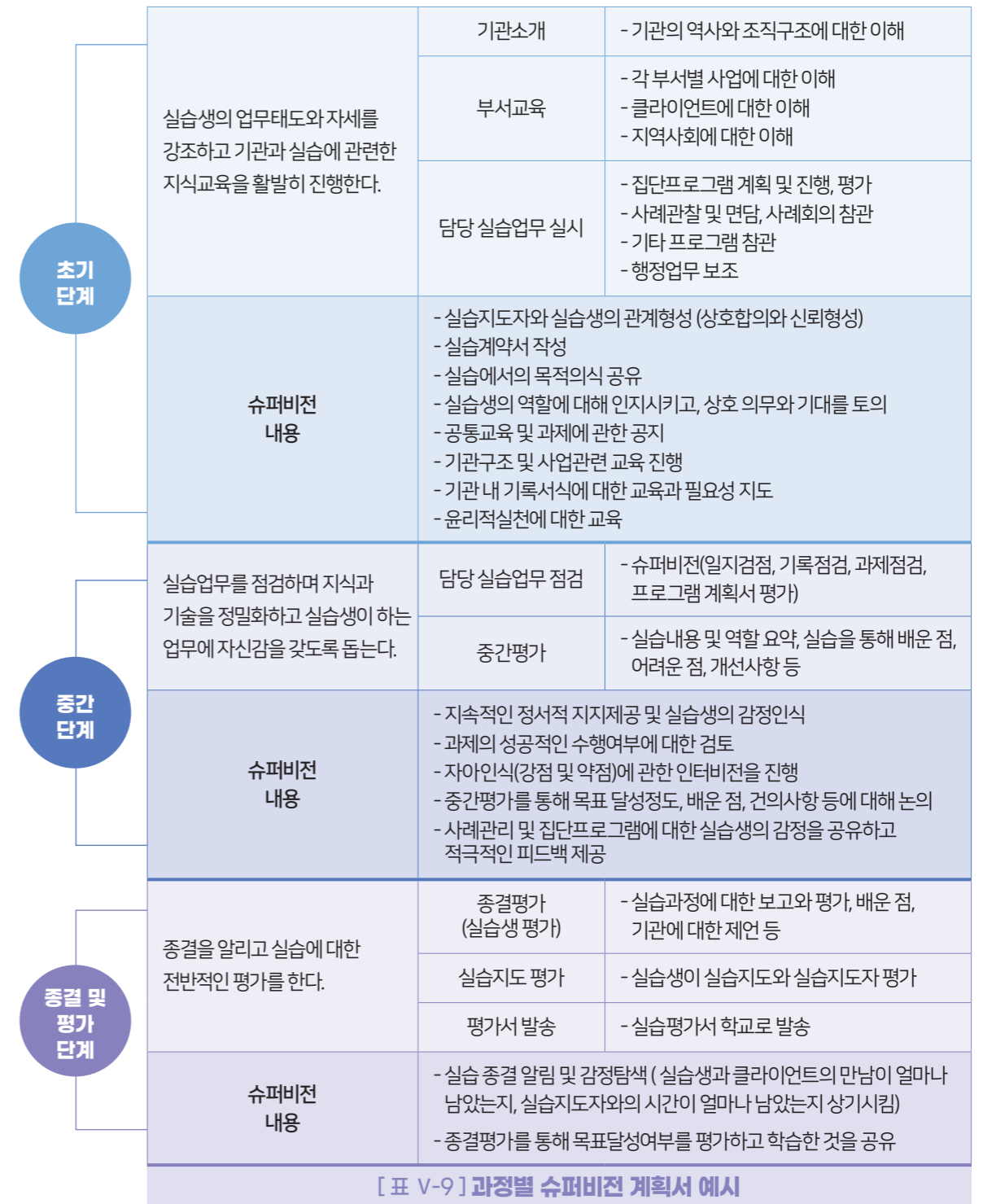
*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사회복지현장실습매뉴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현장실습 슈퍼비전 계획서 작성

- 실습계획서는 기관의 실습프로그램 계획서라면, 현장실습 슈퍼비전 계획서는 그 계획서상의 투입 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개별화된 지도계획서를 의미함.
 - 실습생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업무에 대한 책임, 동료 실습생과의 관계 형성 등과 관련하여 초기 긴장과 불안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지지적 슈퍼비전을 통해서 불안감을 완화하고 극복하도록 해야 함.
 - 행정적 측면에서는 조직의 정책과 규율, 실습생의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함.
 - 슈퍼비전의 내용은 맞춤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습생 개개인 각각의 의지와 능력(기술과 지식)을 기초로 개별화하여 슈퍼비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슈퍼비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 실습 지도에 유용할 것임.

• 현장실습 슈퍼비전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

- 실습생 상황: 이름, 성별, 그동안의 봉사 및 실습경력, 현 실습업무, 지식, 기술, 능력, 성향, 욕구 등
- 슈퍼바이저 상황
- 슈퍼비전 구조: 일시, 기간, 장소 등
- 과정별 슈퍼비전 내용: 과정별 내용은 슈퍼비전의 진행 시기에 따라 초기, 중기, 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지도할 수 있고, 혹은 발달적 관점에서 자기 중심, 클라이언트 중심, 과정 중심, 맥락 과정 중심, 아니면 기술 학습 과정에 따라 관찰, 개념화, 모방, 정밀, 조정, 습관화, 교수/가르침, 스타일화로 구분하여 슈퍼바이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음.



[표 V-9] 과정별 슈퍼비전 계획서 예시

*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사회복지현장실습매뉴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 현장실습 슈퍼비전에서의 유형

● 참여 범위에 따른 유형

(1) 개별 슈퍼비전

- 개별 슈퍼비전은 개인의 전문적 발달을 돕는 핵심적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개별 슈퍼비전은 실습지도자와 실습생의 일대일 만남으로 이루어지며, 집단 슈퍼비전에서처럼 동시에 다른 실습생의 요구에 주의를 분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습생에게 주의를 좀 더 기울이고 초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2) 집단 슈퍼비전

- 집단 슈퍼비전은 그 구성 측면으로는 한 명의 실습지도자와 다수의 실습생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슈퍼비전 방법이며, 기능적 측면으로는 집단의 역동성을 활용하여 집단 자체의 통일된 목표를 갖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슈퍼비전을 주는 것임.

● 슈퍼비전 제공 시기에 따른 유형

(1) 사전 슈퍼비전

- 사전 슈퍼비전은 실제로 실습생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이전에 사전 교육적 성격을 가지게 됨.
- 상담이나 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습생의 준비 정도를 점검하거나 자기 인식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실제 개입과정에서의 오류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음.

(2) 현장 슈퍼비전

- 현장 슈퍼비전은 클라이언트와 만나는 현장에서, 혹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슈퍼비전을 주는 것을 의미함.
- 현장에서 슈퍼비전을 준다는 것은 실습생의 실행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직접적 실천이라 할 수 있음.

(3) 즉각 슈퍼비전

- 즉각 슈퍼비전은 실습생의 실행이 끝나자마자 이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임.
- 따라서 실습생이 자신의 수행 과정에 대해 깊이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므로써 실습생의 자기 학습보다는 실습지도자의 좀 더 강력한 피드백이나 리더십이 요청됨.
- 또한 즉각 슈퍼비전은 관찰이나 기록 등 실습생의 수행 내용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 영역에서의 슈퍼비전으로 적절함. 즉, 실습생의 기억과 자기 보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 좀 더 생생한 기억을 토대로 슈퍼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임.

(4) 지체 슈퍼비전

- 지체 슈퍼비전은 실습생의 업무 수행이 끝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제공되는 슈퍼비전임.
- 이는 실습생이 자신의 수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스스로 고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습생의 반성적 실천을 강조할 수 있음.
- 그러나 보완적 정보나 자료 없이 오로지 실습생이 보고하는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 지체 슈퍼비전은 기억의 왜곡 등으로 적절한 슈퍼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실습지도자가 충분하지 않거나 실습지도자와의 정규적이고, 잦은 접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슈퍼비전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접촉 방법에 따른 구분

(1) 대면접촉

- 대면접촉은 실습지도자와 실습생이 접촉하는 데 활용되는 도구나 매체가 전혀 없는 경우임. 따라서 직접 관찰이나 현장 슈퍼비전 방식을 통해서도 대면접촉을 하며, 즉각 혹은 지체 슈퍼비전 역시 대면접촉을 통해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음.

(2) 서면 접촉

- 서면 접촉의 대표적 방법은 실습일지 등에 대한 서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임.
- 실습지도자는 실습일지 등 기록물을 읽고 기록물에다가 직접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임.

6. 현장실습 슈퍼비전 원칙

(1) 정규화의 원칙

- 슈퍼비전은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실습생을 위한 슈퍼비전의 정기성은 학기 중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방학 중의 경우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슈퍼비전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함.

(2) 공식화의 원칙

- 슈퍼비전은 업무의 일부로 업무시간 중에 수행되어야 함.
- 실습생과 실습지도자의 업무량의 관리를 통해 공식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함.

(3) 상호 교류 중심화의 원칙

-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상호 계획하에 수행되어야 함.
- 실습은 목적적인 것이므로 실습계약을 통해 설정된 목표에 실습생과 실습지도자가 상호적으로 슈퍼비전의 전 과정에 함께해야 함.

(4) 개별화의 원칙

-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한 훈련, 개발, 더 나아가서 경력개발에 초점을 두고 개별화하여 진행되어야 함.

(5) 성장 중심화의 원칙

-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지의 업무 수행상 취약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가능성과 강점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함.

(6) 맥락화의 원칙

- 슈퍼비전은 조직의 내적 및 외적 환경, 슈퍼바이지가 속한 업무 환경 등 맥락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7) 욕구 중심화의 원칙

- 실습생의 욕구에 맞춰 실습 슈퍼비전을 계획하고 제공해야 함.
- 실습생이 실습지도자로부터 슈퍼비전을 통해 받고 싶은 것, 받을 필요가 있는 것 등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제공해야 함.

현장실습 슈퍼비전 Tip

1. 명확한 평가 기준 설정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 실습생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함. 기준은 실습생이 수행한 활동, 목표 달성도, 실무 적용 능력 등을 포함해야 함.
- 평가 기준의 사전 공유: 실습 시작 시 실습생과 평가 기준을 공유하여 실습생이 평가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함. 이를 통해 실습생이 실습 과정에서 평가 기준에 맞춰 자신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2. 다양한 평가방법 활용

- 다각적 평가: 실습 평가에서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실습생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예를 들어,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멘토 평가, 실습 일지 평가 등을 통해 실습생의 역량을 다각도로 분석함.
- 실제 상황 기반 평가: 실습생이 실제로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성과를 평가함. 실습생의 실무 적용 능력을 증점적으로 평가하여, 이론과 실제의 통합 능력을 확인함

3. 피드백의 즉각성과 구체성

- 즉각적 피드백 제공: 평가과정 중 실습생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 실습생이 실습 중 발생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드백: 피드백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포함해야 함. 실습생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피드백이 중요함.

4. 보고서 작성 지도

- 성찰의 중요성 강조: 실습생이 자신의 실습경험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도록 성찰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성찰 보고서는 실습생이 실습 과정에서 배운 점과 개선할 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도구임.
-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실습생에게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보고서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

5. 협력적 평가 환경 조성

- 지원적 평가 분위기: 실습평가 과정에서 실습생이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적 분위기를 조성함. 긍정적인 피드백과 개선점을 균형 있게 제공하여 실습생이 평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동료 평가의 활성화: 실습생 간의 동료 평가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함. 동료 평가는 실습생이 다양한 시각에서 자신의 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6. 지속적인 성장 계획 수립

- 성장 계획의 구체화: 실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습생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함. 실습생이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실습 후에도 자기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멘토링과의 연계: 평가 후에도 멘토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실습생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멘토링은 실습생이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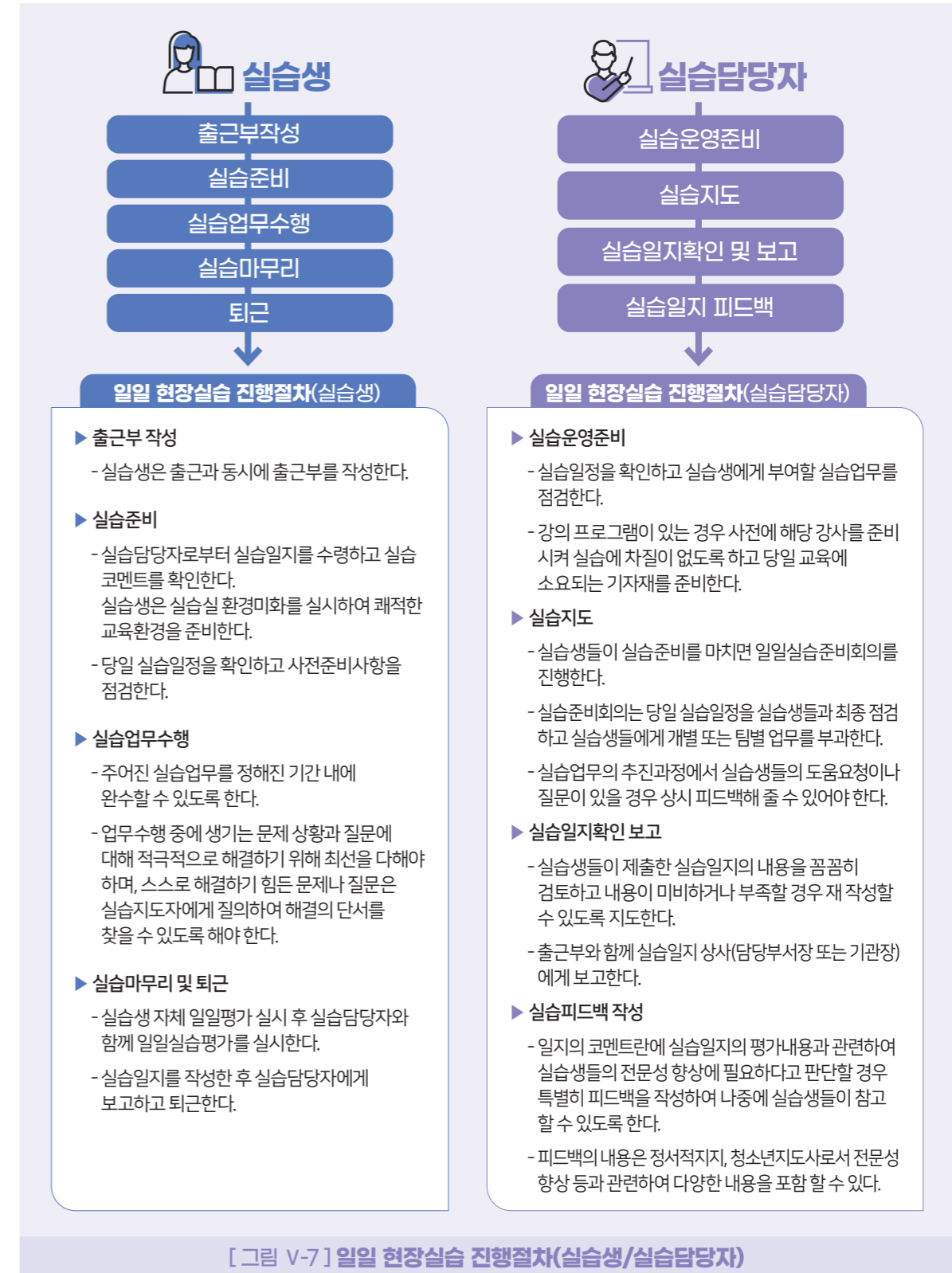
7. 평가자료의 체계적 관리

- 평가자료의 기록 및 보관: 실습 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실습 일지, 성찰 보고서, 피드백 기록 등)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함. 이는 실습생의 성과를 추후 평가하거나 발전 상황을 추적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개인화된 피드백 제공: 실습생 각각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한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하여 실습생의 개별적인 성장을 지원함. 실습생의 목표와 성취도에 맞춘 맞춤형 피드백은 실습생의 학습 동기를 더욱 높일 수 있음.



현장실습생 관리

1. 일일 현장실습 진행절차



[그림 V-7] 일일 현장실습 진행절차(실습생/실습담당자)

*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사회복지현장실습매뉴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재구성.

* 출처: 하중래 외 (2025).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정책분과 현장실습 매뉴얼분과 TF.



실습일지 및 보고서 작성 지침

● 실습기관 분석보고서

- 실습기관 분석보고서는 실습지 첫 방문 시 받게 되는 오리엔테이션 후, 실습기관에 대해 습득한 내용 분석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임.
- 실습 기관의 성격, 조직 구조, 주요 사업, 운영 방식, 청소년 활동 현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청소년지도사로서 발전적 제언을 제시함.
- 단순 나열보다 분석적 관점을 강조하고 기관 홍보자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관찰한 사실을 기록함.

● 실습일지

- 실습일지는 실습의 계획, 준비, 실시 등 실습일 하루 동안 일어난 일련의 상황에 대한 고찰 및 평가를 기입하는 것임.
- 매일의 실습 활동과 배운 점을 기록하여 자기 성찰 및 지도사로서 역량을 개발함.
- 일기나 수필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며 하루의 실습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함.
-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추어 실습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사실에 근거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실습생 의견란에는 배운 점, 의문점, 의견 등을 작성함.

● 기관방문보고서

- 기관을 방문하게 된 배경과 목적(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식 학습, 기관의 조직·시설 비교, 네트워크 파악 등)을 실습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관찰, 분석하여 작성함.
- 추후 실습이나 진로에 적용할 부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단순 나열보다는 비교, 분석, 느낀 점을 강조하여 작성함.

● 현장실습 중간평가서

- 중간보고서는 실습생 스스로가 실습 중반부에 실습 수행 정도가 중간만큼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해보고 슈퍼바이저의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남은 실습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목적이 있음.

● 실습종결보고서

- 실습종결보고서는 실습을 모두 마친 뒤 실습 개요, 주요 실습 활동, 실습 성과, 개인 성찰, 실습기관 평가 의견 등을 작성하여 실습에 대한 전체 과정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성찰하는 역할을 하며 양성기관의 실습담당교수와 실습기관 지도자가 실습생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자료임.
- 실습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역량을 진단함.
- 기관 분석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안함.

V-5 실습기관의 평가

1. 현장실습 평가 목적

- 현장실습 평가는 실습 종료 후 실습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임(오승근 외, 2025).

(1) 현장실습 운영의 질 관리 및 개선

- 실습기관 평가는 단순히 결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습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임.
- 실습지도자는 현장실습이 법령과 협약 사항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지도 과정에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평가 결과는 기관 내부의 강점과 보완점을 확인하고, 향후 실습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 실습생 권익 보호와 학습 성과 확인

- 실습기관은 청소년지도사 양성 과정에서 실습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하며, 평가 과정에서 안전·위생 관리, 권익 침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함.
- 실습지도자는 자기평가서, 만족도 조사 등 실습생의 학습 성취도 확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습 경험이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함.

(3) 청소년지도사 양성 과정의 교육적 목적 달성 보장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청소년지도사 양성 과정의 교육 목표에 맞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학점 인정 및 성적 부여를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이를 위해 실습지도자는 실습평가서를 성실히 작성·발송하고, 실습 이력 사항을 등록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 과정이 제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현장실습 평가 절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평가는 실습 종결 평가 → 실습최종평가회 → 실습 평가서(확인서) 작성 및 발송 → 실습 이력사항 등록 → 기관 내부 운영 평가순으로 진행 될 수 있음.

실습 종결 평가

(1) 실습생 자기 평가

- 실습생의 자기 평가는 현장실습 경험을 스스로 성찰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며, 실습지도자가 실습 운영의 효과성과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이 자기 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 목표 달성 여부, 학습 경험의 의미, 실습 중 직면한 어려움, 강점과 약점을 함께 검토함.
- 실습생 자기 평가 결과는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필요 시 성과 측정도구와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오승근 외(2025). 예비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성과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

(2) 실습지도자의 개별 평가

- 실습지도자는 실습일지, 과제물, 프로그램 참여 태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능력,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 능력, 협업 태도 등 다양한 항목을 근거로 실습생을 평가할 수 있음.
- 평가는 5점 척도와 같은 정량적 점수와, 강점·보완점을 제시하는 정성적 방식을 병행할 수 있음.
- 특히 청소년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태도, 성실성, 지도 능력, 소통 능력 등)을 평가 요소에 포함할 수 있음.

(3) 기관 자체 점검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과정이 교육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행정 지원과 지도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함.
- 자체 점검은 실습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강점과 한계를 확인하고, 이후 프로그램 개선 및 행정 지원 체계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4) 종합 평가 자료 준비

- 실습생 자기 평가와 실습지도자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실습최종평가회와 실습평가서 작성 단계로 연계함.
- 이 과정은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실습 종료 후 행정 절차(평가서 발송, 이력사항 등록 등)의 기초 자료가 됨.
- 실습기관은 종합 평가 자료를 통해 실습생 성취 수준뿐 아니라 기관의 운영 성과까지 점검할 수 있음.

실습최종평가회

(1) 참석 대상

- 실습기관은 실습담당교수(양성기관), 실습지도자(실습기관), 실습생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함.
- 실습담당교수(양성기관)는 참석할 수 있으나 필수 사항은 아니며, 가능할 경우 참여하여 실습 운영의 연계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필요시 기관 관계자(행정 담당자)를 참여시켜 운영상의 개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 실습생은 자기 평가서 및 과제 결과를 발표하여 실습 성과와 소감을 공유함.
- 실습지도자는 실습생 발표 내용을 근거로 강점과 보완점을 제시하고, 실습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성취와 한계를 피드백함.
- 실습담당교수는 전체 실습 운영 과정과 교육과정 연계를 점검하여 종합적인 평가 방향을 제시함.

(3) 실습최종평가회 진행 방식

- 개별 발표 → 지도자 평가 공유 → 종합 토론 및 피드백 → 개선방안 도출 → 총평의 순으로 진행할 수 있음.
-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후 실습평가서 작성 및 행정 절차(이력 등록)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4) 의의와 활용

- 실습최종평가회는 실습생이 자신의 실습 과정을 성찰하고 공유하는 동시에, 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이 현장실습의 교육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리이며, 실습기관은 이를 최소 1회 이상 운영해야 함.
-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의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습 중 촬영한 사진이나 기념품, 수료증 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경험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실습평가서 작성 및 발송

(1) 작성 주체

- 실습평가서는 실습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며, 기관 내부 검토절차를 거쳐 확정함.
- 실습지도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실습일지, 자기평가서, 실습 과제, 지도 기록, 최종평가회 결과 등)에 근거하여 작성함.

(2) 평가 항목 및 양식 활용

- 실습평가 항목과 서식은 우선적으로 실습 양성기관(대학 등)에서 제공한 양식을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작성함.
- 별도의 양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실습기관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평가 항목은 일반적으로 출석, 성실성, 참여 태도, 실무역량, 과제 수행,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성장 가능성 등을 포함하나, 이는 예시 자료로써 각 기관은 운영 상황과 목적에 따라 구성할 수 있음.

(3) 발송 및 공유 절차

- 확정된 실습평가서는 기한 내에 양성기관(실습담당 교수)으로 발송해야 함.
- 발송된 실습평가서는 학점 인정 및 성적 부여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실습생의 성취 이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됨.

(4) 의의와 활용

- 실습평가서는 실습생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실습기관의 교육적 책무 이행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임.
- 실습기관은 평가서를 통해 실습생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동시에 자체적인 운영 개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실습 이력사항 등록

(1) 등록 주체

- 등록 과정은 주로 실습지도자 또는 행정 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수행함.
-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확인서(별지)를 발급할 수 있음.

(2) 등록 항목

- 등록 항목은 실습생 인적 사항, 실습 기간, 실습 시간, 실습기관명, 실습지도자 정보, 최종 평가 결과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 필요 시 양성기관(대학 등)에서 요청하는 추가 자료(평가 요약, 성취 확인서 등)를 함께 반영할 수 있음.

(3) 등록 절차

- 실습기관은 평가서 작성 및 발송 이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력사항을 입력하고 현장실습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등록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내부 점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력 완료 후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함.

(4) 의의와 활용

- 실습 이력사항 등록은 실습생의 성취를 제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 학점 인정 및 자격 검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함.
- 실습기관은 이를 통해 실습생의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실습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등록된 자료는 추후 실습 관리 현황 점검, 제도 개선, 연구·통계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1) 평가 주체

- 기관 내부 운영평가는 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점검 절차임.
- 실습지도자와 기관 담당자(행정 담당자, 기관장 등)가 중심이 되어 평가를 진행하며, 필요 시 기관 내 회의를 통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2) 평가 항목

- 실습 운영 준비의 적절성: 협약 체결, 사전 안내, 실습생 선발 과정 등
- 실습 과정 관리: 일정 운영, 지도자 배치, 실습생 교육, 문제 상황 대응 등
- 실습생 지도 내용: 프로그램 개발·운영, 슈퍼비전 적절성, 학습 목표 달성 지원 등
- 행정적 지원: 평가서 작성·발송 절차, 실습 이력 등록, 서류 관리 등
- 전반적 성과와 한계: 기관 차원의 만족도, 개선 필요 영역 등

(3) 평가 방법

- 내부 회의, 설문, 간단한 점검표 활용 등을 활용하여 실시함.
- 정량적(점수)·정성적(서술형) 평가 방식을 병행하여 개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4) 의의와 활용

- 기관 내부 운영평가는 외부 평가가 아닌 기관의 성찰 과정으로, 실습 운영의 질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율적인 절차임.
- 평가 결과는 내부 보고서로 정리하여 차년도 실습 운영 지침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실습지도자 연수나 내부 교육 시 공유하여 지도 역량 강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기관의 안전·위생 매뉴얼, 실습생 관리 매뉴얼 등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 향후 실습생에게 더 나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기반이 됨.

3. 현장실습 평가 원칙

- 실습생 평가는 단순히 성적을 산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습생이 청소년지도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습기관의 교육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하중래 외, 2025).

(1) 명확한 평가 기준 설정

-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함.
- 평가 기준은 실습생이 수행한 활동, 목표 달성도, 실무 적용 능력 등이 포함되며, 실습 시작 전 실습생과 공유하여 학습 방향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야 함.

(2)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의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음.
 - 정량적 평가: 출석률, 과제 수행, 평가표 점수화 등
 - 정성적 평가: 지도자의 관찰 기록, 서술형 피드백, 면담 결과 등
- 자기평가, 동료평가, 실습지도자 평가 등을 병행하여 실습생이 스스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청소년과 상호작용, 프로그램 운영 참여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평가를 통해 현장 적응력과 문제해결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3) 피드백의 주기적 제공

- 평가는 단순히 결과 통보에 그치지 않고, 실습생 성장에 필요한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함.
- 실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나 개선 사항을 즉시 전달하여 실습생이 즉시 학습 방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실습 중간 단계에서 강점과 약점을 점검하여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종결 평가 시에는 전반적 성취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함.

(4) 현장실습 보고서 작성 지도

- 현장실습 보고서 작성은 실습 경험을 성찰하고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학습 과정임.
- 실습생이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지도하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함.
- 실습지도자는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실습생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5) 현장실습 평가 자료의 체계적 관리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과 관련된 평가 자료(실습일지, 자기평가서, 과제물, 지도기록, 평가서 등)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자료는 추후 학점 인정 및 자격검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운영기관이나 관계 부처에서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기간 보존 및 검증 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함.

4. 현장실습 평가 지표

- 현장실습 평가 지표는 실습생이 청소년지도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국립 중앙청소년수련원, 2016; 하중래 외, 2025), 실습 기관은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실습생의 관점과 태도(20점)
 -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적절한 태도를 보였는지 평가함.
 -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청소년 지도 관련 지식 수준, 업무 수행에 대한 이해와 적용 노력, 직업관 등이 포함됨.
- 실무 관련 지식과 태도(25점)
 -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함.
 - 책임성과 주도성, 자원 연계·활용 능력, 대인관계와 협업 능력, 상황 대처 및 문제 해결 능력, 청소년과의 소통 및 관계 형성 능력이 포함됨.
- 실무역량(25점)
 - 실제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적용 능력과 전문성을 평가함.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운영 능력, 컴퓨터 및 행정업무 활용 능력, 행정문서 작성 능력, 집단지도 능력, 실습일지 작성 성실성 등이 포함됨.
- 과제수행(20점)
 - 실습 과정 중 수행한 과제의 성실성과 완성도를 평가함.
 - 기관 분석, 평가보고서, 프로그램 계획서 등 보고서 작성 능력, 청소년 활동 지도 능력, 과제 발표(프레젠테이션 등) 수행 능력 등이 포함됨.
- 실습태도(10점)
 - 실습 전반에 보이는 기본 태도와 성실성을 평가함.
 - 출석·지각·조퇴 여부, 근면성과 성실성, 친절성, 적극성 등 기본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평가 기준이 됨.

V-6 실습기관 FAQ

FAQ

1. 현장실습의 기본 이해

Q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란 무엇입니까?

A1. 대학(양성기관)의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학생이 실제 청소년기관에서 일정 기간(130시간 이상) 근무·참여하면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행정 및 윤리의식을 체득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실습기관은 이 과정을 통해 차세대 청소년지도사 양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Q2. 실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2. 실습기관은 학생이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기관 내 실습지도자를 지정하여 실습을 지도·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실습기간 동안 학생의 활동계획·과업·출석·태도를 지도하고, 실습종료 후 평가점수 및 피드백을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실습기관 자격 및 지정

Q3. 우리 기관이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나요?

A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① 청소년 관련 법령상 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 ② 사회복지·교육 관련 기관: 사회복지법인·시설·관, 아동복지시설, 대안학교,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 또한, 반드시 자격 있는 실습지도자를 상근 배치해야 합니다(제8조·제9조).

Q4. 실습기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4.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활동·복지·보호사업 운영, 실습생의 안전·보건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실습지도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충족 등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Q5. 실습지도자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A5. 실습지도자는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청소년활동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취득 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6. 실습지도자는 몇 명의 학생을 동시에 지도할 수 있나요?

A6. 제9조 제2항에 따라, 동일 시간대에는 최대 10명 이하만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을 경우, 지도자를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3. 협약 및 행정절차

Q7.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협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A7. 네.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3조에 따라, 현장실습 시작 전 또는 시작일까지 협약체결이 필수입니다. 이 협약은 대학(양성기관)과 기관 간의 공식 문서이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실습기간 및 장소	예: 2025.7.1.~2025.8.31 / ○○청소년수련관
평가 관련 사항	지도자 평가방식, 성적 반영 절차
보건·위생·안전	산업재해 예방, 응급조치 절차
실습비 등 기타	실습비 지급 여부, 근무조건 등

Q8.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나요?

A8. 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대학과 기관이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이 성평등가족부 지정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예) 실습 취소, 일정 변경, 지도자 교체 등

4. 실습지도자의 역할과 자격

Q9. 실습기관에는 반드시 '실습지도자'를 두어야 하나요?

A9. 네. 반드시 기관 내 실습지도자(청소년지도사 또는 동등 자격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는 대학의 실습담당교수와 협력하여 실습 계획·운영·평가를 진행합니다.

Q10. 실습지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A10.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지도자는 학생이 청소년지도사의 가치와 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도자이자 평가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실습생 오리엔테이션 및 기관 소개
- 출석 및 실습시간 확인
- 일일·주간 업무 배정 및 현장 지도
- 중간·최종평가서 작성 및 대학 제출
- 청소년활동·행정·프로그램 참여 지도

5. 실습 운영 내용

Q11. 실습기관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A11. 제2조 제3항에 따라 실습에는 다음 4가지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에 대한 이해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의 실제
- 기관의 구조·역할에 대한 이해와 현장경험
- 청소년지도사의 윤리적 가치와 실천

따라서 기관은 실습생에게 이 네 영역이 모두 경험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과업을 제공해야 합니다.

Q12. 실습시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12. 실습생은 총 13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기관은 출석부(또는 근무일지)를 관리하여 확인 서명을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실제 실습시간만 포함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학점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아래 시간 운영에 관한 부분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구분	비고
최소기간	15일 이상, 총 130시간 이상
1일 실습시간	4~8시간(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초과 불가
1주 최대시간	40시간 이내, 필요시 5시간 추가 가능(학생 동의 필수)
휴게시간	1일 1시간 이상 반드시 보장
야간실습	불가(22시~익일 6시) 단, 교육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협의 가능

Q13. 야간청소년활동(예: 캠프, 축제)이 있을 경우 실습이 가능한가요?

A13.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이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학에도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Q14. 실습비를 받을 수 있나요?

A14. 네. 제10조에 따라 실습지도에 필요한 실습비를 학생 또는 대학으로부터 징수 가능합니다. 다만, 실습비(10만원 이내 권고)는 협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대학은 이를 성평등가족부 지정 운영기관에 통보합니다.

Q15. 실습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A15. 실습생의 지도·관리·교육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예: 프로그램 재료비, 교재 인쇄비, 안전보험료, 지도자 회의비 등

Q16. 대학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16. 네. 제6조 제3~4항에 따라 대학의 자료요구(프로그램·안전·시설 관련)에 협조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협약체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17. 실습생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7. 실습생은 학생이므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보건·위생·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안전교육 사전 실시
 - 출입·시설 점검
 - 보험(학교 또는 기관 단체보험) 확인
- 이 세 가지를 필수로 관리해야 합니다.

6. 실습생 관리와 의무

Q18. 실습생이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A18. 실습생은 고시와 학교 규정에 따라 기관의 안전관리규정 및 근무규칙을 준수하고 기관의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관은 이를 실습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Q19. 기관은 실습생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나요?

A19.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비상상황 대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습생 보호뿐 아니라 기관의 법적 책임을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Q20. 실습생의 평가를 자체 기준으로 징계나 불이익 조치로 활용할 수 있나요?

A20. 불가합니다. 제12조 제2항은 명확히 "실습기관은 평가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오직 교육적 목적이어야 하며, 징계·해고·불이익 조치는 대학 권한입니다.

Q21. 실습 중 부당업무나 기준 위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1. 기관은 즉시 대학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해야 합니다. 예시로는 실습시간 위반(야간근무, 초과노동), 비교육적 업무 지시(청소, 사무 보조 등 반복), 안전·성희롱·위생 관련 문제 발생 등이 있습니다. 대학이 시정 요청을 하거나 실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기관의 책임과 조치

Q22. 실습생이 문제를 신고했을 때 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2.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양성기관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고, 해당 양성기관은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23. 실습 중 사고나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기관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

A23. 예, 있습니다. 실습생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관 내에서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실습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보험·비상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8. 평가 및 보고

Q24. 실습생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24. 실습지도자는 실습 종료 시 평가표(양식은 대학 제공)에 따라 학생의 수행을 평가합니다. 이 점수는 대학 담당교수의 평가와 합산되어 최종 성적으로 반영됩니다. 평가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습태도 및 책임감
- 청소년이해 및 관계능력
- 프로그램 기획·참여도
- 성실성 및 보고서 작성
- 기관생활 적응력

Q25. 대학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5. 실습담당교수는 실습 전·중·후에 기관과 긴밀히 연락합니다.

- 사전: 실습계획서 및 협약서 전달
 - 중간: 학생 점검 및 지도자 피드백 수렴
 - 종료: 평가서 회수, 종합 평가 공유
- 필요 시 교수의 현장 방문이나 온라인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안전관리 및 행정유의사항

Q26. 실습생의 안전사고나 산업재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26. 협약서에 보건·위생 및 산업재해 예방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대학에 통보하고, 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학생은 대학의 상해보험 또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27. 기관의 실습운영에 대한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A27. 기관은 실습생이 교육적 목적에 맞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성실한 지도와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습생은 기관의 일원으로서 규정을 지켜야 하며, 기관은 이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부록

실습기관용 서식 모음



※ 양식은 예시용이며, 상황에 맞게 수정·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기관용 3-1] 현장실습생 모집 공문

○○○기관

수신자

(참조)

제목 ○○년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모집 안내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기관에서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규정(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라 ○○년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실습기간: 2000.00.00.~00.00. (총 130시간 이상, 15일 이상)

나. 장 소:

다. 인 원:

라. 실습내용:

마. 실습비:

바. 신청방법:

사. 실습담당:

- 붙임 1. 실습지도 계획서 1부
2. 실습지도자 프로필 1부. 끝.

○○○기관

시행 |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http://www.

전화

전송

공개 ()

실습지도자 프로파일

1. 인적사항

성명			
기관명/부서		직책	
담당업무		전화	
이메일		팩스	
전공		청소년지도사 자격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2. 실습지도 및 실습분야 관련 주요 교육이력

교육명	주관단체	기간	수료/자격여부

3. 청소년기관 근무 경력

기관명	기간	직책	담당업무

4. 실습지도자로서의 자신의 특성(강·약점)

○○ 기관

수신자

(참조)

제목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수락 회신

- 귀 기관의 현장실습 의뢰에 감사드립니다.
- 귀 기관에서 의뢰한 청소년지도학과 학생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과 같이 현장실습 수락 여부를 통보드립니다.

-아 래-

가. 학생명:

나. 실습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총 130시간 이상, 15일 이상)

다. 실습지도자: (연락처:)

라. 운영계획: 기관 내부 운영규정 및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

마. 실습비:

- 붙임 1. 실습지도 계획서 1부.
 2. 실습지도자 프로파일 1부.
 3.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끝.

○○기관

시행 |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http://www.

전화

전송

공개 ()

현장실습 협약서

○○대학교(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와 ○○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은 “양성기관” 소속 학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이하 “실습”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실습의 구분 및 기간)

- ① 실습은 시기에 따라 학기제(정규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최소 15일 13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제2조 (“양성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 ①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계획 및 일정 수립 후 “실습기관”과 실습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 ②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모집인원, 실습기간 등의 내용을 취합, 검토 후 실습생 지원 및 모집에 적극 활용한다.
- ③ “양성기관”은 “실습기관”의 실습생 선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을 교육한다.
- ④ “양성기관”은 선발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 ⑤ “양성기관”은 실습 중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⑥ “양성기관”은 “양성기관”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과 실습생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실습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실시한다.

제3조 (“실습기관”의 실습 운영)

- ①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전문지식 함양과 경험습득을 위하여 제1조에 따른 학기제 또는 계절제 현장실습 기간에 맞는 이론 및 실습교육 내용을 수립한다.
- ②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습생에 대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4조 (현장실습 시간 및 장소)

- ① 실습 시간은 “실습기관”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습시간의 연장은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 간 최대 5시간까지 가능하다. 실습기관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현장실습은 야간시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습 장소는 “실습기관”의 소재지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하고, 실습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고려한다.

제5조 (실습비)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실습비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실습 운영에 사용한다.

제6조 (지도교수 지정)

“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은 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실습생 지도를 위하여 실습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양성기관”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실습기관”은 “실습기관”의 필요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실습기관” 또는 “양성기관”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기타)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성기관”	“실습기관”
기관명:	기관명:
학과장: (인)	기관장: (인)

현장실습 계약서

제1조 (목적)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습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2000.00.00. ~ 2000.00.00.으로 한다. 현장실습은 갑의 청소년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조 (실습방법 및 내용) 실습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에 대한 이해
2.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관리의 실제
3.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제4조 (실습기관의 의무) 실습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를 제공한다.
3. 현장실습지도자의 자격과 지도능력을 갖춘 실습지도자를 배치한다.
4.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가 지도하는 실습생은 10명을 넘지 않도록 배치한다.
5.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 (현장실습생 권리) 현장실습생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3.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6조 (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현장실습의 교육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2. 업무 상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실습과정에서 사용하게 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1. 총 실습시간은 ___시간으로 한다.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시간의 연장은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까지 가능하다.
3.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4. 현장실습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

실습기관은 양성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양성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현장실습계약의 변경과 해지

현장실습 중단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있을 시 현장실습을 중단할 수 있고, 중단 시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중단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10조 (실습비용)

실습비용은 _____ 원으로 하며, 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이 협의 하에 실습 이전 또는 이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준용)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성평등가족부 지침,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대표자	①인
현장실습생		성명	①인
양성기관명	000대학 000학과	학과장	①인

현장실습 자기평가 계획서

학과		이름	
학번		연락처	
실습기관		실습기간	
지도교수		실습지도자 (연락처)	
개인적 목표		전문역량 목표	

현장실습 자기평가 중간보고서

학 과		이 름			
학 번		연락처			
실습기관		실습기간	~		
지도교수		실습지도자 (연락처)			
항 목		달성수준 (1-10점)	항 목		달성수준 (1-10점)
개인적 목표달성 정도	1. 청소년 이해 증진		전문역량 목표달성 정도	1. 청소년사업 기획	
	2. 청소년기관 이해			2.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3. 직업적 정체성			3. 청소년프로그램 실행	
	4. 의사소통 함양			4. 청소년생활지도	
	5. 전공 적합성			5.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신고	
합 계			합 계		
책임감/ 성실함	현재까지 실습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했는지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의 결석, 지각 등 • 실습기관 과제물 수행 및 참여도 정도 • 실습기관에서의 지적사항 등 				
어려움/ 문제점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정 중에 어려움과 문제점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담당 지도자 또는 실습동료와의 관계 어려움 • 실습내용 중 어려움 등 				
남은기간 집중영역	남은 실습기간 동안 무엇을 더 경험하고 싶은지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행정 및 회계 관련 내용 등 				
기관 요청사항	남은 실습기간 동안 기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간담회, 지역타 기관 방문 등 • 직무와 관련된 경험 등 				
총평	위의 내용을 토대로 총평을 작성				

현장실습 자기평가 최종보고서

학 과					이 름		
학 번					연 락 처		
실습기관					실습기간	~	
지도교수					실습지도자 (연락처)		
항 목		최종 (1-10점)	중간 점수	항 목		최종 (1-10점)	중간 점수
개인적 목표 달성 정도	1. 청소년 이해 증진			전문역량 목표 달성 정도	1. 청소년사업 기획		
	2. 청소년기관 이해				2.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3. 직업적 정체성				3. 청소년프로그램 실행		
	4. 의사소통 함양				4. 청소년생활지도		
	5. 전공 적합성				5.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신고		
합 계				합 계			
개인적 목표 달성 점검		- 중간 자기 평가와 비교하여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높은 영역은 무엇이며, 중간보다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높은 이유, 중간보다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 등을 작성하도록 함.					
전문역량 목표 달성 점검		- 중간 자기 평가와 비교하여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높은 영역은 무엇이며, 중간보다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높은 이유, 중간보다 최종 자기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 등을 작성하도록 함.					
최종 자기분석	청소년지도사로서 강점	- 개인적 목표와 전문역량 목표 중에서 자신의 강점 역량을 작성하고, 이 역량이 앞으로 청소년지도사로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 등을 기술					
	청소년지도사로서 약점	- 개인적 목표와 전문역량 목표 중에서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역량을 제시하고, 이러한 약점이 청소년지도사로서 어떤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인지를 기술					
역량개발 계획		- 강점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기술 -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기술					
현장실습 후 나의 변화		- 현장실습 후 청소년기관 및 시설에 대한 변화된 인식은 무엇인가? -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는가? - 현장실습 후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등을 기술					
진로계획		-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이 나에게 적합한가? - 청소년지도사가 된다면 어떤 시설에서 종사하고 싶은가? -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할 자격증은 무엇인가? - 향후 어떤 봉사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현장실습 평가서

실습기관명		실습지도자	
실습생 성명		학 교	
실습기간			
출석사항	결석()회, 지각()회, 조퇴()회		
평가일시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5점)
관점과 태도 (20점)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태도	
	청소년지도 관련 전문지식	
	업무수행평가 및 적용 노력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직업관	
실무관련 자질과 태도 (25점)	업무에 대한 책임성	
	업무에 대한 추진력(주도성)	
	업무 수행을 위한 협업 능력	
	상황대처 및 문제 해결 능력	
실무역량 (25점)	청소년 및 실습생과의 소통 능력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개발)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운영)	
	컴퓨터 활용 능력	
	문서작성 능력	
과제수행 (20점)	청소년 집단 지도 능력	
	실습일지 작성	
	보고서작성(기관분석, 평가보고서, 계획서 등)	
	활동지도(보조지도, 직접지도 등)	
실습태도 (10점)	과제발표(프리젠테이션 등)	
	출석, 결석, 지각, 조퇴 등	
총 점(100)	성실성, 근면성, 친절성, 적극성 등	

※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담당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담당교수가 부여한다.(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항)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과명	
실습기관명		기관관리번호	
실습지도자		자격번호	
실습기간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00일)		
실습시간			

실습기관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기관과 지도자에 의해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이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인) / 실습 기관: (직인)

교육기관명		기관관리번호	
학과명		실습교수	
오리엔테이션	총 00회	실습최종평가회	총 00회
실습 세미나 (대면)	총 00회	실습 세미나 (비대면)	총 00회

양성기관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담당교수에 의해 현장실습 과목을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이 위와 같이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 실습 담당교수: (인) / 학과장: (직인)



부록

- 참고문헌
- 별첨 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안
- 별첨 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용 현장교육훈련 및 내부평가 운영 가이드.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2016).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매뉴얼.
- 김선희, 조휘일 (2000). 사회복지실습. 양서원.
- 김영호, 이은경 (2001). 사회복지 현장실습이 이해. 경기도: 양서원.
- 김영희 (2006). 청소년관련학과의 현장실습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나 (2012). 사회복지현장실습 가이드북. 신정출판사
- 류성림 (2000). 수학수업에서의 자기평가 방법. 대구교육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뉴스레터 제9호.
- 맹영임, 전명기, 나상희, 김미선 (2009).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박승곤, 김수정 (2012). 예비청소년지도사의 현장실습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4(3), 29-46.
- 서울사이버대학교 (2025). 사회복지현장실습지침서
-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2005). 2025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 서희정 (2018). 청소년지도사의 활동역량모델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54, 125-153.
- 성평등가족부 (202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안.
- 성평등가족부 (2025).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호).
- 오승근, 이용진, 이진이, 이응택, 이정민 (2025). 예비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성과에 대한 인식. 미래청소년학회지, 22(1), 189-209.
- 청소년관련 5대 학회 (2005). 청소년 현장실습. 경기: 교육과학사.
- 청소년관련 5대 학회 (2023). 청소년 현장실습. 경기: 교육과학사.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50호(개정 23. 12. 시행 27. 1).
- 최주현, 박대권 (2020). 예비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 기관실습 성과측정 도구개발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1), 47-73.
- 평생교육진흥원 (2009). 평생교육 현장실습 매뉴얼.
- 하중래 외 (2025).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정책분과 현장실습 매뉴얼분과 TF.
- 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교육평가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5).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사회복지현장실습매뉴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8154>에서 2025년 9월26일 인출.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4834?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316290&isOgYn=Y&opYn=Y%25252525252526isOgYn&pageIndex=6>에서 2025년 9월26일 인출.



별첨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안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 2027. 1. 1.) [대통령령 제34050호, 2023. 12. 26., 일부개정] 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① 대학 등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
이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습의뢰서 발급 등 현장실습 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과의
업무연락을 지원한다.

② 현장실습 과목 담당교수(이하 "실습담당교수"라고 한다)는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지도자(이하 "실습지도자"라고
한다)와 협력하여 실습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한다.

③ 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지도에 대한 이해
2.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의 실제
3.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④ 현장실습 과목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운영한다.

1. 1회 이상의 실습오리엔테이션
2. 130시간 이상의 실습기관 현장실습
3. 1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의 실습내용을 교육·토론·연구하는 실습세미나(1주당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대면방식을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1회 이상의 실습최종평가회

⑤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담당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담당교수가 부여한다.

⑥ 그 밖에 현장실습의 수업방법, 운영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학칙 등 관련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습수업의 방법·절차 등 운영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실습기관 협약체결) ① 양성기관은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실습기관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의 전문성, 실습기관 실습환경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현장실습 실시기간 및 장소
2.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3.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실습비 등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은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각각의 사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양성기관은 실습기관과 현장실습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
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실습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1.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해당 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자.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의 교육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제5조(선수과목) 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자목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의
취지에 따라 별표의 과목을 미리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목명칭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교과목을 별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제1항에 따른 선수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 등은 실습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지부·지회를 말한다.)
2.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습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6.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7.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8.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9.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1.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 시설, 단체 등을 실습기관으로 선정하고 제3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2. 실습생의 보건·위생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실습생의 현장교육과 실습지도가 가능한 조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④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 시설, 단체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제3항에 따른 자료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현장실습 운영 시간) 제2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고,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식사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시간의 연장은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가능하다.
4.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5. 현장실습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한다) 이상인 사람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 ①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가 지도하는 실습생은 1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실습비의 징수)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성기관이나 실습생으로부터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운영기관에 실습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다.

제11조(실습생) ① 현장실습 대상 학년, 학기 및 요건 등은 학칙 등 관련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고시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③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3.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12조(학생 보호) ① 양성기관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은 제2조제5항에 따른 평가시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③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양성기관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고, 해당 양성기관은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13조(운영기관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현장실습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승인한 기관·단체

제14조(운영기관의 역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의 현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기관의 실습기관 협약 체결 결과에 대한 취합과 점검에 관한 사항
3. 실습기관의 실습비 징수에 대한 취합과 점검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데이터베이스(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실습생의 권익보호와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실습기관 모집계획 공고) 운영기관의 장은 양성기관 등이 실습과정 운영에 알맞은 실습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의 요건, 제출서류, 신청기한, 접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키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양성기관이 개설하였거나 개설 중인 현장실습관련

교과목의 명칭이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별표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의 검정과목란 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3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에서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적용한다.

별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선수과목

구분	선수과목(총 4과목)
1. 기본 과목(3과목)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 추가 과목(1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 보호 등 교과목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 비고: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선수과목"과 관련된 과목의 인정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11조제1항 별표 1과 같다.



별첨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과) 02-2100-6271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11. 18.]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23. 12. 26.]

[시행일: 2027. 1. 1.] 제19조

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5. 10. 1.>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2025. 10. 1.>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5. 1.>

④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 및 제3호와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 5.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8.]

[제목개정 2015. 5. 1.]

제20조 삭제 <2023. 12. 26.>

[시행일: 2027. 1. 1.] 제20조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5. 10. 1.>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8.]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5. 10. 1.>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8.]

[시행일: 2027. 1. 1.] 제21조



별표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5. 10.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19조 제2항 관련)

등급	응시자격 기준
1.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p> <p>다.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한다) 이상인 사람 2)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한 사람 <p>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의2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필수영역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2)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 <p>마.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의2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2)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 <p>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의2에 따른 전문대학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이수과목 중 1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거나 별표 2 제2호자목부터 아목까지의 검정과목 중 1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것 3)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

※비고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별표 1의2에 따른 이수과목 이수,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 이수 및 같은 표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이수는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 대학·전문대학의 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과 후의 이수를 모두 포함한다.

별표1-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3. 12. 26.>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 관련)

구분	영역	이수과목
1. 대학 또는 대학원	가. 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나. 선택영역	<p>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p> <p>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p>
2. 전문 대학	가. 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나. 선택영역	<p>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p>



별표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5. 10.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
(제19조제3항 관련)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1. 1급 청소년지도사	가. 청소년연구방법론 나. 청소년 인권과 참여 다. 청소년정책론 라. 청소년기관 운영 마. 청소년지도자론	객관식 필기시험
2. 2급 청소년지도사	가. 청소년육성제도론 나. 청소년지도방법론 다. 청소년심리 및 상담 라. 청소년문화 마. 청소년활동 바. 청소년복지 사.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아. 청소년문제와 보호 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서류 심사

※ 비고

1.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과 관련된 인정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이수하려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3학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2학점 이상을 각각 취득해야 한다.
3. 제2호자목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시간은 1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실습기관의 요건, 선정·취소의 기준 및 실습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기관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문의사항 | 041-620-7741~3 | 웹사이트 | <https://www.youth.go.kr/yworker/>

전국(17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서울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02)849-0404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1)852-3461~2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3)659-6210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833-8057~9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2)234-0755~6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2-488-0924~5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2)227-060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4)864-7935
경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1)232-9383~5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3)731-3704~4704
충북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3)256-4503~5
충남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1)562-9003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3)232-0479
전남	전라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1-280-9002
경북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4)850-1004
경남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5)711-135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4)751-5041~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인쇄 2025년 12월 24일

발행 2025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발행인 손연기

본 저작물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유이므로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